白頭大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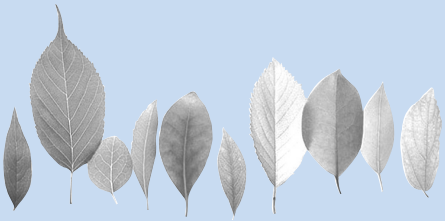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백두대간관련 주요사건 일지 ● 270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 273

3.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 마련 ● 434

4.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립원칙과 기준 마련 ● 446

5.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현황 ● 528

6. 백두대간보호위원회 ● 541

7. 언론보도자료 ● 579

8. 회고 ● 604

Ⅸ. 부 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1 백두대간 관련 주요사건 일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정 과정

일 자	주 요 내 용
1999년 09월 15일	15대 국회(1996~2000) 끝 무렵에 환경노동위원회 방용석의원 등 38인이 '백두대간보전법'을 제안 –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되다가 15대 국회가 끝나 자동으로 폐기됨
2001년 12월 21일	16대국회(2000~2004)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일의원 등 19인이 '백두대간보전법'을 제안 –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되다가 이정일 의원이 2002년 7월 24일에 법안철회
2002년 07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이정일의원 등 21인이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을 제안함
2002년 10월 0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환경부 연석회의로 백두대간 보전법안의 형태와 내용을 논의
2002년 10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상정 – 공청회를 거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재심사 결정
2003년 02월 14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특별법 공청회
2003년 02월 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3차 심의 – 환경부와 산림청이 주관부처 문제로 갈등
2003년 02월 1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03년 04월 04일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 박인상의원 등 26인이 '백두대간 보전법'을 제안 주관부처 문제로 환경부와 산림청의 갈등이 지속. 국무조정실 조정 사안

일 자	주 요 내 용
2003년 04월 1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
2003년 04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두대간보전특별법안'을 의결
2003년 04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체토론 – 4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이 올라와, 소위원회에서 재심사 결정
2003년 04월 29일	국무조정실회의 – 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관리법'을 공동운영 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
2003년 04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1차 법안심사 – 국무회의에 백두대간 보고결과를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함. 심사가 중단되고 법안이 계류. 국무회의 결과 국무총리실에서 환경부와 산림청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함
2003년 05월 29일	국무조정실 차관급회의 – 환경부장관은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산림청장과 협의 – 산림청장은 기본계획과 관리범위를 수립 · 지정하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
2003년 09월	정부의 인터넷신문인 국정브리핑(news.go.kr)에 "백두대간보전 어느 부처에서 해야?"를 주제로 쟁점토론을 부쳐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음
2003년 09월 24일	국무조정실 차관급회의 – 환경부와 산림청이 정부단일안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제출
2003년 11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백두대간보전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결정
2003년 1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백두대간보전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안 반려 결정
2003년 11월 19일	환경노동위위원장(송훈석의원)과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양희 의원)이 만나서 백두대간보전 특별법의 소관상임위를 농림해양 수산위원회로 정함. – 정부의합의안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백두대간 보전 · 관리법안'을 대체해서 법제사법 위원회에 다시 제안 하기로 합의
2003년 11월 2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부합의안 대로 '백두대간보전 · 관리 법안'을 제안하여 농해위 전체회에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번안동의 심의 · 의결
2003년 1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회부
2003년 12월 08일	농해위 수저안을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 법률" 심사 · 의결
2003년 12월 09일	16대국회 본희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상정, 통과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공포 제7038호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관련 주요 추진 일정

일 자	주 요 내 용
'04. 5. 12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안) 마련
5.13~6.24	• GIS작업을 통한 기초도면 컴퓨터 작업
6. 25	• 지자체에 백두대간 기초도면 배부(1/25,000 지형도)
7. 15	• 백두대간 심포지엄개최 무산(세종문화회관)
7. 22	• 지자체 등 간부급(과장) 설명회 개최
8. 4~20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관련 지역 실무협의회
8. 27	• 백두대간 쟁점지역(남원) 대표자와의 토론회
8. 31	• 전북지역 주민 궐기 대회(화형식 등을 가짐)
9. 1, 8	• 산림청장과 쟁점지역(전북, 강원) 대표자와의 면담
9. 14	• 강원도 백두대간 반대투쟁 궐기대회
9. 15	• 백두대간 TF팀 5명(지원) 구성 · 운영
9. 18	• 산림청장 지리산 노고단 및 노치마을 방문
9. 20	• 백두대간 홍보물 제작 · 배부(리플렛, 홍보자료, 만화)
10. 5	• 백두대간 현지토론(추풍령)
10. 14	• 지자체 조정도면 제출 완료
10. 7~16	• 쟁점지역 유형별 사례조사(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11. 2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관련 백두대간 협의체 회의
12. 7~12. 11	• 백두대간 TF팀 현지 의견 수렴
12. 15~21	• 쟁점지역 현지토론회(고성, 강릉, 태백, 거창)
'05. 1. 3	• 백두대간 정상(대관령)에서 산림청 시무식 거행
'05. 1. 7	•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자체 심의회 개최
'05. 1. 31	• 백두대간보호지역 1차 조정안 면적 확정 및 도면 배부
'05. 2. 17	• 보호지역 지정 실무자 교육 및 공동작업(임업연수부)
'05. 3. 5	• 백두대간 현장토론회(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05. 5. 4	•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최종 확정 청장보고
'05. 5. 9	• 중앙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 조회
5.7, 5.31 6.7	• NGO 설명회 개최(3회)
7. 14	• 중앙도시계획원회 심의 가결(건교부)
7. 19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가결(산림청)
8. 30	•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심의 가결(국무총리)
9. 9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고시(관보고시)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백두대간보전법안 (이정일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1. 12. 21

발 의 자 : 이정일의원외 19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규정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과 민족정기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모든 생명들의 근원이므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은 자연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길이 1,400㎞의 크고 긴 산줄기로 현대 산맥표기에 따르면 마천령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연결되는 지역을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 의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자연환경관리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시책에 협력하고 백두대간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계보호운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 자연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계획
3. 지방자치단체간 자연환경관리구역의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적정한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지역별 자연환경 관리계획
5. 백두대간 자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6. 자연경관보호 및 생태계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7. 백두대간 자연환경관리와 관련한 남북협력방안
8. 그 밖에 백두대간 자연환경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시장 · 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개발행위 금지원칙) 백두대간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산개발, 채석
2.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조성

3. 댐건설
4. 도로건설
5. 군사훈련장
6. 택지(공장용지 포함)
7. 송전탑 건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제10조(총괄관리의 원칙)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관리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부담금 부과 원칙) 환경부장관은 제9조 단서에 의한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12조(위탁관리) 국가는 백두대간 자연환경에 대한 과도한 행위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책으로 주민자치회에 백두대간의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3장 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등

제13조(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위원회) ①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과 용수배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위원회를 둔다.
②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된다.

④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자치회) ①백두대간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해서 자율적인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주민자치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주민자치회는 해당지역의 자연환경관리를 위해서 일정액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과 대상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주민자치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백두대간보전연구회) ①백두대간의 자연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백두대간보전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회의 회원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및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연구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자연환경관리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백두대간 생태계파괴 감시활동, 생태계 복원활동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의무) 관계행정기관은 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에 관한 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백두대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백두대간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환경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
2.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생태계보호구역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본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
3. 그 밖에 백두대간 자연환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이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37)

발의연월일 : 2002. 7. 22.

발 의 자 : 이정일 · 김원길 · 박양수 · 김영진 · 윤철상 · 강숙자 · 조배숙 · 전갑길
박주선 · 천정배 · 송석찬 · 김부겸 · 강운태 · 장영달 · 조재환 · 정동채
김화중 · 김영배 · 이강래 · 안동선 · 김성순 · 의원(21인)

제안이유

백두대간은 우리민족의 정기를 이어주는 결정체이며 한반도의 뼈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 가고 있어 보호대책을 통해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 보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백두대간 자연생태계보전을 이념으로 국가의 책무 및 국민의 권 리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생태계보호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내지 제7조).

나.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4조).

다. 국가는 매 10년마다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관리 및 보전 등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백두대간중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 관리하고,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 등에 필요한 훼손부담금을 납부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손실을 받게 되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당해 산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가의 백두대간보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조정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사. 백두대간보전연구회를 두어 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보전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중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2. "산지"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한 산림중 토지, 그 토지안의 암석지 · 소택지 및 임도를 말한다.
3. "훼손부담금"이라 함은 백두대간지역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의 조성 등 산림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 의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로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를 보전 · 관리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은 자연적 ·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고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계보호운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자연환경보전 ·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계획
3. 백두대간의 관리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보호 및 생태계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5.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와 관련한 남북협력방안
6.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시장 · 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총괄관리의 원칙)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중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이하 "백두대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금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석, 광산개발(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을 제외한다)
2.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조성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 댐의 건설, 군사훈련장의 설치, 택지(공장용지 포함)조성 등의 개발행위

제12조(백두대간보전지역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훼손부담금) ①산림청장은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의한 불가피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의 조성 등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산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 등의 수당 · 여비 등)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백두대간보전연구회) ①백두대간의 자연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백두대간보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회의 회원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및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⑤산림청장은 연구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백두대간 생태계파괴 감시활동, 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의무) 관계 행정기관은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백두대간보전법안 발의의원 현황

발의일자 : 2003. 4. 4.

발 의 자 : 민주당 박인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 26인

성 명	상임위원회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박 인 상	환 경 노 동	민 주 당	비례대표	1선(16대)
신 계 륜	〃	민 주 당	서울 성북구을	2선(14, 16대)
김 덕 규	〃	민 주 당	서울 중랑구을	4선(11, 13, 14, 16대)
감 락 기	〃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16대)
박 혁 규	〃	한나라당	경기 광주군	1선(16대)
서 병 수	〃	한나라당	부산 기장군갑	1선(16대)
오 세 훈	〃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	1선(16대)
전 재 희	〃	한나라당	경기 광명시	1선(16대)
김 태 홍	산 업 자 원	민 주 당	광주 북구을	1선(16대)
배 기 운	〃	민 주 당	전남 나주시	1선(16대)
유 용 태	〃	민 주 당	서울 동작구을	2선(15, 16대)
조 성 준	〃	민 주 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2선(15, 16대)
김 성 호	문 화 관 광	민 주 당	서울 강서구을	1선(16대)
정 범 구	〃	민 주 당	경기 고양기 일산구갑	1선(16대)
김 영 환	건 설 교 통	민 주 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	2선(15, 16대)
이 호 웅	〃	민 주 당	인천 남동구을	1선(16대)
이 미 경	교 육	민 주 당	비례대표	2선(15, 16대)
최 영 희	〃	민 주 당	비례대표	1선(16대)
천 용 택	국 방	민 주 당	전남 강진군 · 완도군	2선(15, 16대)
유 한 열	〃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10, 11, 12, 13, 16대)
유 재 건	통 일 외 교	민 주 당	서울 성북구갑	2선(15, 16대)
이 부 영	〃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	3선(14, 15, 16대)
박 상 희	과 학 기 술	민 주 당	비례대표	1선(16대)
송 용 길	재 정 경 제	민 주 당	인천 계양구	1선(16대)
김 무 성	행 정 자 치	한나라당	부산 남구	2선(15, 16대)
김 문 수	정 무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 소사구	2선(15, 16대)

백두대간보전법안 (박인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93)

발의연월일 : 2003. 4. 4

발 의 자 : 박인상 · 김덕규 · 김락기 · 박혁규 · 서병수 · 신계륜 · 오세훈
전재희 · 김무성 · 김문수 · 김성호 · 김영환 · 김태홍 · 박상희
배기운 · 송영길 · 유용태 · 유재건 · 유한열 · 이미경 · 이부영
이호웅 · 정범구 · 조성준 · 천용택 · 최영희의원(26인)

제안이유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삼신봉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서 한반도의 인문적, 지리적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자연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생태계가 단절되는 등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백두대간보전계획 수립, 백두대간보전지역 지 정, 보전지역 행위제한, 백두대간보전위원회 구성 등 백두대간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백두대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백두대간의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들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국가는 매 10년마다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시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또는 실천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마. 백두대간 중에서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한 구역을 핵심구역 · 완충구역 · 전이구

역으로 나누어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구역에 따라 불가피한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백두대간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백두대간 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백두대간보전위원회를 둠(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도록 백두대간보전협회를 두며,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조사 · 연구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백두대간보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 삼신봉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전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에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지역으로서 생태

적 · 지리적 · 경관적 특성에 따라 핵심구역 · 완충구역 · 전이구역으로 구분한다.

3. "핵심구역"이라 함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서 절대적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완충구역"이라 함은 핵심구역의 인접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개발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전이구역"이라 함은 완충구역의 외곽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되,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이용행위는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인문적, 지리적 근원인 동시에 한반도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를 적절하게 보전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백두대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백두대간의 보전을 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고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의 야생동 · 식물 및 서식지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의 보전과 관련된 남 · 북한 협력방안
7. 그 밖에 백두대간 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백두대간보전시행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백두대간보전실천계획) ①시 ·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백두대간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 ·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실천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 중에서 자연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우수정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과 구역별 관리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는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심구역에서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자연환경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3. 문화재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 · 관리를 위한 사업

4. 학술연구활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충구역에서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
2.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시설 설치
3. 도로 · 철도 건설사업 및 대체에너지개발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이구역에서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관광 · 숙박시설, 골프장 및 스키장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계획의 인 · 허가 및 승인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토지 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제13조(주민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백두대간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백두대간보전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전에 관한 국가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백두대간보전위원회를 둔다.

②백두대간보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연환경 및 산림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백두대간보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전위원회 소속하에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백두대간보전위원회등의 구성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백두대간보전위원회의 직무) 백두대간보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의 심의
2.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
3. 백두대간보전지역의 보전 등과 관련된 의견 조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6조(백두대간보전협회) ①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전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를 둔다.

1. 백두대간보전지역 주민 및 관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2. 백두대간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자연환경이 훼손된 백두대간 생태계의 복원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협회는 백두대간 보전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⑤국가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조사 · 연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백두대간 생태계파괴 감시활동, 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 칙

제19조(벌칙)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전이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비교

백두대간보전(농림해양수산위원회) · 관리법과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 제출일자 : 2002. 7. 22. • 대표발의 : 이정일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 · 진도) • 발의의원 : 김원길, 박양수, 김영진, 윤철상, 강숙자, 박인상, 전갑철, 박주선, 천정배, 송석찬, 김부겸, 강운태, 장영달, 조재환, 정동채, 김화중, 김영배, 이강래, 안동선, 김성순의원(21명)	• 제출일자 : 2003. 4. 4 • 대표발의 : 박인상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 발의의원 : 김덕규, 김락기, 박혁규, 서병수, 신계륜, 오세훈, 전재희, 김무성, 김문수, 김성호, 김영환, 김태홍, 박상희, 배기운, 송영길, 유용태, 유재건, 유한열, 이미경, 이부영, 이호웅, 정범구, 조성준, 천용택, 최영희의원(26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보전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중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전지역"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 ·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 삼신봉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전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에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지역으로서 생태적 · 지리적 · 경관적 특성에 따라 핵심구역 · 완충구역 · 전이구역으로 구분한다. 3. "핵심구역"이라 함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서 절대적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완충구역"이라 함은 핵심구역의 인접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개발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전이구역"이라 함은 완충구역의 외곽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되,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이용행위는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 제출일자 : 2002. 7. 22. • 대표발의 : 이정일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 · 진도) • 발의의원 : 김원길, 박양수, 김영진, 윤철상, 강숙자, 박인상, 전갑철, 박주선, 천정배, 송석찬, 김부겸, 강운태, 장영달, 조재환, 정동채, 김화중, 김영배, 이강래, 안동선, 김성순의원(21명)	• 제출일자 : 2003. 4. 4 • 대표발의 : 박인상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 발의의원 : 김덕규, 김락기, 박혁규, 서병수, 신계륜, 오세훈, 전재희, 김무성, 김문수, 김성호, 김영환, 김태홍, 박상희, 배기운, 송영길, 유용태, 유재건, 유한열, 이미경, 이부영, 이호웅, 정범구, 조성준, 천용택, 최영희의원(26명)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보전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중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2. "산지"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한 산림중 토지, 그 토지안의 암석지 · 소택지 및 임도를 말한다. 3. "훼손부담금"이라 함은 백두대간지역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의 조성 등 산림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 의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 삼신봉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전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에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지역으로서 생태적 · 지리적 · 경관적 특성에 따라 핵심구역 · 완충구역 · 전이구역으로 구분한다. 3. "핵심구역"이라 함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서 절대적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완충구역"이라 함은 핵심구역의 인접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개발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전이구역"이라 함은 완충구역의 외곽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되,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이용행위는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제3조(기본이념) ①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로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를 보전 · 관리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은 자연적 ·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이념)**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인문적, 지리적 근원인 동시에 한반도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를 적절하게 보전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백두대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고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백두대간의 보전을 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고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계보호운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제2장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자연환경보전 ·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계획 3. 백두대간의 관리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보호 및 생태계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5.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와 관련한 남북협력방안 6.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시장 · 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 보전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의 야생동 · 식물 및 서식지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의 보전과 관련된 남 · 북한 협력방안 7. 그 밖에 백두대간 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제8조(백두대간보전시행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총괄관리의 원칙)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백두대간보전실천계획)** ①시 ·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백두대간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 ·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실천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중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이하 "백두대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 중에서 자연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우수정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과 구역별 관리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제8조(백두대간보전시행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총괄관리의 원칙)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백두대간보전실천계획)** ①시 ·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백두대간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 ·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실천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이하 "백두대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 중에서 자연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우수정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과 구역별 관리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제11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금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석, 광산개발(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을 제외한다) 2.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조성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 댐의 건설, 군사훈련장의 설치, 택지(공장용지 포함) 조성 등의 개발행위	**제11조(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는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심구역에서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자연환경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3.문화재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 · 관리를 위한 사업 4.학술연구활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충구역에서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 2.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영농시설 설치 3. 도로 · 철도 건설사업 및 대체에너지개발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이구역에서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관광 · 숙박시설, 골프장 및 스키장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계획의 인 · 허가 및 승인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백두대간보전지역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지정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제13조(훼손부담금) ①산림청장은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의한 불가피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의 조성 등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토지 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제14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매수의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산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백두대간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백두대간보전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전에 관한 국가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위원회를 둔다. ②백두대간보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연환경 및 산림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제16조(위원 등의 수당 · 여비 등)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백두대간보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전위원회 소속하에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백두대간보전위원회등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백두대간보전위원회의 직무)** 백두대간보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의 심의 2.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 3. 백두대간보전지역의 보전 등과 관련된 의견 조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8조(백두대간보전연구회) ①백두대간의 자연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백두대간보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회의 회원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및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⑤산림청장은 연구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백두대간보전협회)** ①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전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를 둔다. 1. 백두대간보전지역 주민 및 관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2. 백두대간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자연환경이 훼손된 백두대간 생태계의 복원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협회는 백두대간 보전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에 따라 위탁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⑤국가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법(환경노동위원회)
제19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백두대간 생태계파괴 감시활동, 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 연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백두대간 생태계파괴 감시활동, 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의무) 관계 행정기관은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 칙
	제19조(벌칙)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전이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 제정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대체토론

제238회 국회(임시회) 2003. 4. 28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검토보고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

안 제9조에서는 산림청장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산림청장이 확정한다는 것은 지휘 · 감독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을 산림청장이 작성하되, 정부가 그 계획을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3쪽 · 25쪽 및 26쪽

안 제 2조제2호에서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을 백두대간중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 하였으나, 안 제10조에서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지정 후 고시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조제2호와 제10조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0쪽

부칙 제2항에서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 ·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2조에는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등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만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서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사방시설 · 하천 개발행위에 대한 인 · 허가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사방시설 · 하천개방행위에 대해서는 안 부칙 제2항의 규정만으로는 이 법에 의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 · 허가를 받은 사방시설 · 하천개발 등도 그 개발행위가 끝날 때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사방시설 · 하천개발에 대한 인 · 허가를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경우에 그 개발행위가 끝날 대까지는 그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과 유사한 백두대간보전법안이 박인상의원 대표 발의로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 두 법률안의 목적인 백두대간 보전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림청간에 소관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의 소관에 관하여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협의 · 조정이 필요하므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밖에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제안설명

제23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2003. 4. 28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 정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 기춘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 및 소관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인데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산림자원 및 국토가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제15대국회에서 '국회환경포럼'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두대간보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6대국회에서는 본의원 대표발의로 다시 제출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관위원회를 변경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부조직법상 환경부는 자연환경보호에 총괄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반면, 산림청은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과

본 의원도 처음에는 백두대간하면 자연환경보호측면에서 접근하여 환경부소관으로 인식했으나

백두대간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를 말하며, 보전예정지역중 산지가 94%이고 농지가 2%이며, 나머지 4%는 도로, 저수지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을 단순히 자연환경보호라는 이념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산림자원과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실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도 분명 한반도의 산줄기 중 일부이므로 이는 산림과 산지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되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는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백두대간보전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그리고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 주재로 산림청장과 환경부차관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한차례의 공청회와 네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한바 있고, 대한지리학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쳤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원안(안 제8조)에는 산림청장이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단순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본계획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수립시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백두대간 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원안(안 제10조)에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원안(안 제11조)에는 채석, 광산개발,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조성 등의 행위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발행위제한방식」이었으나, 이렇게 정할 경우 백두대간의 훼손 우려가 크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등 7가지 행위만을 허용하는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원안(안 제15조)에는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두며,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국무총리

소속하에로 승격시켜 국무총리를 위원장,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원안(안 제13조)에는 개발행위자에게 훼손부담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나,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개별법에 따라 부과키로 하면서 삭제하였고, 백두대간보전연구회(안 제18조)를 백두대간보전협회로 수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백두대간 보전 및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백두대간보전관리업무의 역할문제로 산림청과 환경부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부처간에 소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백두대간이 효율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법안 내용에 충분히 반영시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3. 4.

제안자 :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골자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하는 정의 규정을 안 제2조에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산림청장이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필요에 따라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는 열거된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어 그외의 개발행위는 허용되므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허용된 개발행위 이외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인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안 제12조를 신설하였음. 그리고 안 제1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손실을 받게 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백두대간보전 · 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조정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두던 것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상향 조정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민간단체인 백두대간보전협회를 두어 백두대간 보전 ·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되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하여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으며,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정비함.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대한 수정안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목적) 중 "자연생태계보전과 관리에 관하여"를 "보전과 관리에 관한"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토를"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로 한다.

안 제2조(정의)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전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 ·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안 제3조(기본이념)제1항 중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로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히 필요한"을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출기이며 산림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백두대간을 적정하게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안 제7조 제목 중 "생태계보호운동"을 민간단체의 보호활동"으로 하고, 내용 중 "백두대간지역"을 "백두대간"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총괄관리의 원칙) 백두대간보전지역의 관리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중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을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3.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전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와 관련한 남북협력방안
6.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 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제1항 중 "산지를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이하 "

백두대간보전지역"이라 한다)"를 "지역을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지정하는"을 "지정하고자 하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하며, "고시"를 "관보에 고시"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금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 철도 · 제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3.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5.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 채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 각호에 열거된 개발행위를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안 "제12조(백두대간보전지역지정의 해제)"를 "제13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해제)"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각호외의 부분 단서규정"을 "각호의 규정"으로,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을 해제"를 "백두대간보정지역을 지정해제"로 하며, 동조제2항 중 "백두대간보전지역지정의 해제"를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안 제13조를 삭제한다.

안 제14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매수)의 제목 중 "산지"를 "토지"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 "산지"를 "토지"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산지"를 "토지"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내용 중 "산지"를 "토지"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백두대간보전협회) ①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
2. 백두대간 보전 · 관리를 위한 홍보 및 보호활동
3.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중용한다.

안 제19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제2항 중 "생태계파괴 감시활동, 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환경보전"를 "보전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보전"으로 한다.

안 제20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 ·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관계 법률의 인 · 허가 등으로 이루어진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으하여 협의된 것으로 본다.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골자

원 안	수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보전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보전과 관리에 관한- - - - - - - -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중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원 안	수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자연 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백두대간을 적정하게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제7조(생태계보호운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의 보호활동) - 백두대간 - - - - - - - - - - - - - - - - - - -

원 안	수 정 안
6.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시장 · 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 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이하 "백두대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①- 지역을 백두대간보전지역 - - - - - - - - - - - - - - - - - - -

원 안	수 정 안
2.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조성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 댐의 건설, 군사 훈련장의 설치, 택지(공장용지 포함) 조성 등의 개발행위 〈신설〉	2. 도로 · 철도 · 제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 공공용 시설의 설치 3.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5.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 채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백두대간보전지역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백두대간 보전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중용한다.	제12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 각호에 열거된 개발행위를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훼손부담금) ①산림청장은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의한 불가피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의 조성 등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해제) ①- 각 호의 규정- - - - - - - - - - - - - - - - - - - -

원 안	수 정 안
제14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산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토지매수) ①- - - -

원 안	수 정 안
비는 회비 및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⑤산림청장은 연구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생략) ②국가 또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백두대간 생태계파괴 감시활동, 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원인과 같음) ②- - - -

第238回國會(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日時 2003年4月28日(月)

場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都市鐵道法中改正法律案
2.住宅建設促進法改正法律案(代案)
3.建築法中改正法律案
4.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5. 都市가스事業法中改正法律案
6.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7.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 · 普及促進法中改正法律案
8. 지하생활공간공기질환곤리법개정법률안(대안)
9. 水道法中改正法律案
10.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11. 廢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案
12. 環境管理公團法中改正法律案
13. 의료기기법안
14.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15.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16. 항만운송사업법중개정법률안
17.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8.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19.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20. 報勳基金法中改正法律案

2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
22. 體育施設의설치 · 이용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3. 圖書館및讀書振興法中改正法律案
24. 獨立紀念館法中改正法律案
25.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中改正法律案
26. 自然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
27. 屋外廣告物등管理法中개정법률안
28.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9.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안
30. 自動車交通管理會計法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31. 警察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32. 소방기본법안
33.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委員長 金淇春**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14. 농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이정일 · 김원길 · 박양수 · 김영진 · 윤철상 · 강숙자 · 조배숙 · 전갑길 · 박주선 · 천정배 · 송석찬 · 김부겸 · 강운태 · 장영달 · 조재환 · 정동채 · 김화중 · 김영배 · 이강래 · 안동선 · 김성순 의원 발의)

● **委員長 金淇春**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심사안건과 관련해서 출석해야 할 농림부장관께서는 부득이한 행사가 오래전에 예정되어 있어서 출석히 곤란하기 때문에 차관이 대리출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의사일정 제1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및 발의자를 대표하여 李正一 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李正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안의 제안경위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 대표발의, 의원 대표발의, 의원 대표발의, 이상 3건의 개방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중 · 장기 정책자금 및 연대 보증 피해자금의 금리 및 상환조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금년 6월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수산경영개선자금에 대하여 농어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상황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하는 것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법 집행의 소관문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인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산림자원 및 국토가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제15대국회에서 국회환경포럼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두대간보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6대국회에서는 본 의원 대표발의로 다시 제출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관 위원회를 변경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법의 실효적 측면을 심각히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백두대간 하면 자연환경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여 환경부 소관으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나 백두대간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를 말하며, 보전예정지역 중 산지가 94%이고, 농지가 2%이며, 나머지 4%는 도로, 저수지 등으로 되어 잇으며,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호에 총괄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반면,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와 육성 및 산지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바, 백두대간을 단순히 자연환경 보호라는 이념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산림자원과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해야 된다는 실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도 분명 한반도의 산줄기 중 일부이므로 이는 산림과 산지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되,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업무는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백두대간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그리고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 주재로 산림청장과 환경부 차관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한 차례의 공청회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대한지리학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쳤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원안에는 산림청장이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단순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수립 시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백두대간 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원안에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원안에는 채석, 광산개발,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조성 등의 행위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발행위제한방식이었으나 이렇게 정할 경우 백두대간의 훼손 우려가 크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용하는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원안에는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두며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있었으나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국무총리 소속하에로 승격시켜 국무총리를 위원장,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원안에 는 개발행위자에게 훼손부담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나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개별법에 따라 부과키로 하면서 삭제하였고 백두대간보전연구회를 백두대간보전협회로 수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백두대간 보전 및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백두대간보전관리업무의 역할문제로 산림청과 환경부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귀 위원회에서 잘 수용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淇春 李正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朴成得**먼저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단서에서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연기 대상 농어민을 정하는 기준을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의 주체와 객체를 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서 협의의 주체와 객체를 정하고 그 기준을 정할 자를 하나의 관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 법의 소관부처 장관이 협의의 주체가 되어 그 기분을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동 조, 동 항에서는 상환연기한 자금에 대한 거치 및 상환기간의 기산시점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 기산시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3항에서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등 농어가부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이자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제3항 단서에서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을 연기한 경우에 그 연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년 이내에 일부 자금이라도 조기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일부 자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조기상환한 자금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이 되어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을 연기한 경우에 그 약정을 변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산림청장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산림청장이 확정한다는 것이 지휘 · 감독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을 산림청장이 작성하되 정부가 그 계획을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3쪽 · 25쪽 · 26쪽은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을 백두대간 중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10조에서는 백두ㄷ간보전지역의 지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지정 후 고시절자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조제2호와 제10조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 ·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2조에는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등 제11조 각호에 규정한 산림개발사업만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법에서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사방시설 · 하천개발행위에 대한 인 · 허가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사방시설 · 하천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안 부칙 제2항의 규정만으로는 이 법에 의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 · 허가를 받은 사방시설 · 하천개발 등도 그 개발행위가 끝날 때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사방시설 · 하천개발에 대한 인 · 허가를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경우에 그 개발행위가 끝날 때까지는 그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법률안과 유사한 백두대간보전법안이 朴仁相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률안의 목적인 백두대간보전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림청 간에 소관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의 소관에 관하여 환경부와 산림청 간의 협의 · 조정이 필요하므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밖에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金淇春**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

●**崔鉛熙 委員** 전문위원, 아까 李正一 의원께서 제안설명할 때는 소관부처인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조정이 되었다는데 전문위원 보고는 조정이 안 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하는데 그것 왜 그래요?

●**專門委員 朴成得**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저희 원원장님 앞으로 조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공문을 하나 보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崔鉛熙 委員** 누가?

●**專門委員 朴成得** 환경부에서도 그런 의견 전달이 있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朴仁相 의원께서 직접 저희 위원장님 앞으로 그 법안에 같이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崔鉛熙 委員** 아까 李正一 의원께서 협의를 다 마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저희가 차관협의 정도가 아니고, 제가 작년에 환경부 입장에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갚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관회의, 국장 · 과장까지 해서 한 너덧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여기 전부 가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개발위원장을 맡아서 하게 된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격상해 가지고 총리로 하고 환경부장관, 농림부장관은 부위원장으로 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위원회에 따라서 법을 성안하는 것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것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노위다 농림수산위원회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崔鉛熙 委員**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거쳤습니다.

●**崔鉛熙 委員** 환노위에서 의견을 보냈다 해서, 합의가 되었다는데 뭔가 미흡한 점이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淇春 咸承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咸承熙 委員**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 이것이 제정법이지요?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예.

●**咸承熙 委員** 백두대간이라 하면... 만일 법이 통과되면 대충 어디가 이 법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예를 들어서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1480㎞ 산맥, 우리 인체로 말하자면 척추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산맥의 중심에서 양쪽의 700m씩은 근본적으로 개발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부분도 복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咸承熙 委員**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입니까, 지리학적인 용어입니까, 법률용어입니까, 풍수지리에 나오는 용어입니까?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백두대간은 저도 책에서 찾아 봤는데 북한에서는 지금도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咸承熙 委員**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식민지가 통치하면서 삭

맥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래서...

● **咸承熙 委員**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지요?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예.

● **咸承熙 委員** 그렇다면 그 개념의 명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1400㎞라고 하면 금강산으로 설악산으로, 소백산으로, 오대산으로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그렇지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1480㎞...

● **咸承熙 委員** 많은 사람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 같은 것을 했습니까?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저희가 국회 공청회를 한 번 거쳤고 위원회...

● **咸承熙 委員**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했느냐고요?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학자, 지역주민 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해가지고 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 **咸承熙 委員**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법 예컨대 설악산 같은 무슨 자연공원법이나 국립공원관리법 그런 것에 의한 규제 외에 이 법에 의한 규제를 또 받네요?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그렇지요.

● **咸承熙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나요? 아무 보상도 없나요?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민간인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수매할 때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 개발된 부분은 민간사업자면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보완을 해서...

● **咸承熙 委員** 법규제가 너무 한반도 전역을 상대로 하는 광범위한 규제법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가요? 나는 걱정이 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委員長 金淇春 咸錫宰** 위원님

● **咸錫宰 委員**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이것이 제정법이고, 처음 만드는 법이지요? 그리고 제11조에 백두대간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금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한다' 이랬는데 개발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하고 환경부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개발행위제한방식이었는데 이것을 허용행위, 제11조 처음에 보시면 무슨 스키장, 채석, 광산개발, 리조트, 골프장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이제는 국방시설이랄지 기타 우리 정부가 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넣어서 허용행위를 할 수 있다는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바뀐 것이지요.

● **咸錫宰 委員** 제11조의 1, 2, 3, 4, 5, 6, 7항 까지 나오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고 허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개발행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까?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그것이 산지 관리법에서 제한하는 법이 있는데 그 상세한 부분은 산림청장이 여기 임석해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咸錫宰 委員** 처벌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 **山林廳長 崔鍾秀** 아닙니다. 이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산지관리법이 10월 1일 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처벌토록 하고 현재는 산림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 **咸錫宰 委員** 기존에 산림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처벌하고 그 외 따로 개발제한행위 금지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는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 **山林廳長 崔鍾秀** 그렇습니다.

● **咸錫宰 委員** 그러면 법의 실효성이 담보됩니까?

● **山林廳長 崔鍾秀** 산지관리법에 포괄적으로 개발해서는 안 되는 행위하고, 처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때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 **咸錫宰 委員** 그렇다면 제한은 다른 법에서 하고 처벌은 또 다른 법으로 한다 이런 얘기네요?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국민들이 가서 쉬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산지를 개발하는 것 또 건설을 하게 되면 모래 내지는 하천 골재를 못쓰기 때문에 채석장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 **委員長 金淇春** 다음 金容鈞 위원님.

● **金容鈞 委員** 먼저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 법이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리산 천왕봉까지 가는데, 한라산까지는 못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한반도 보전 · 관리법안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이고 백두대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수복지구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으면서 제11조에 보면 국방 · 군사, 도로 · 철도 · 제방, 산림, 문화재, 에너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이 과연 산림청의 소관이 돌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상당한 논의가 거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우선 국방, 환경, 건설교통, 문화관광, 산업자원 등의 부서와 다시 법 체계상의 문제를 점검해서 법 상호간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깊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2소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淇春** 金學元 위원.

● **金學元 委員**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중에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이북에서는 사용되는데 남한 쪽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셨는데 내가 금방 사전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대간이라고 찾아봐도 큰 사전에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안이 가능한 대로 자꾸 풀어쓰고 알기 쉬운 용어로 써가고 있는 상황에 더군다나 우리가 상용, 쓰여지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이 옳은가 물론 용어를 줄여 쓰려고 그러는데 적절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했으리라는 추측은 가는데 쉬운 용어로 생각을 하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용어 같거든요.

●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正一** 백두대간의 정의가 그렇고 지금 중학교 지리교과서에는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 **金學元 委員** 그것을 나중에 심의할 때 적절한 용어가 있는지 산림청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난번 처음 1차 심의할 때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山林廳長 崔鍾秀 李正一** 의원님이 발의하고 난 후에 실무토론에서는 그 당시 환경부차관하고 산림청장하고 협의했을 때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기본계획이라든가 보전지역 지정 등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 **金學元 委員**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 **山林廳長 崔鍾秀** 예, 있습니다.

● **金學元 委員** 행정조정실의 업무는 각 행정부처 간의 이와 같은 서로 대립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차원에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다른 데는 몰라도 같은 행정부처 간에 어느 부처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조정실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으로 확고하게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委員長 金淇春** 이 문제는...

● **金學元 委員** 그래서 우리가 소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정부 측에서 행정조정실에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부 측에서 어떤 조정을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유의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 **山林廳長 崔鍾秀** 예.

● **委員長 金淇春 金學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소위원회에 가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합니다. 沈揆喆 위원님 그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沈揆喆 委員**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인 사항은 백두대간에 속한 산, 임야뿐 아니라 다른 임야는 어떻게 규율하십니까?

● **山林廳長 崔鍾秀**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에 대해서 문제된 것도 산림훼손, 산지의 훼손인데 산지의 훼손에 대해서는 제정법으로 산지관리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지전용 제한이라든가 별도로 보전지역을 지정해서 보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10월 1일에 발효가 됩니다. 지금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다 보전되고 훼손이나 이런 것이 방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만은 좀더 강화된 상태로 보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두대간 큰 줄기의 일부분을–저희로서는 10만㏊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능선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전하고자 해서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沈揆喆 委員**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조금 됩니다마는 과연 이런 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백두대간에 속하지않는 산도 우리나라 몇 정맥 이런 식으로 대동여지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정맥에 포함되어 있는 산도 백두대간에 속해 있는 산 못지않게 보전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따로 이렇게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전 · 관리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金學元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두대간이라는 말을 과연 법률용어로 쓸 필요가 있을까 싶고, 그 다음에 백두산 장군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병사봉이었습니다.

● **山林廳長 崔鍾秀** 그것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 **沈揆喆 委員** 병사봉인데 북한에서 장군봉으로 바꾸었다는 것인데 이런 용어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법안으로서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淇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에 회부되니까 그때...

● **趙舜衡 委員**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소관사항, 말하자면 정부부처 간에 관할권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원회에서의 심사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정부 측에서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결론을 지어서 법안을 제정해야지 법사위에서 법체계 심사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처 간의 관할권 분쟁까지 저희가 심사합니까?
과거에 이런 예가 몇 건 있어서 해결을 했는데 분쟁조정하기가 무척 어렵고, 우리 입법부 특히 법사위원회가 법체계 심사인데 이런 문제를 다룰 본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회부보다도 판례에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가만히 보니까 그냥 우선 입법해 가지고 빨리 법사위에 가서 하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판을 낸다고 하는데 법사위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국무총리고 대통령은 뭐하는 것입니까?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국무총

리가 조정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가지고 와서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양쪽 부처 다 부르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2소위원회에 법체계 관계로 해서 그동안 몇 건 회부되어서 이것을 심사하기에도 굉장히 쫓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말하자면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좀 생각을 하십시오.

- **金容鈞 委員** 존경하는 趙舜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가운영문제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법부에서 법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고, 법으로 해결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서 권한쟁의를 통해서 갈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국회의 권한으로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淇春 趙舜衡 위원님과 金容鈞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이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미리미리 정부 자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 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위 간의 협의 유무, 또 소관부처 간의 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국 무 조 정 실

우 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전화 3703-3959	/전송 734-9347~8
수질개선기획단 과장 임	담당자 김규근	

문서번호 수개67400-69

시행일자 2003.05.31 (5년)

공개여부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선람			지시			
접수	일자	2003.05.31				
	시간	10:46:37	결재·공람			
	번호	1277				
처리과		산림보호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백두대간보전관련 법안 조정결과 통보

'03.5.10(토) 및 '03.5.29(목) 개최된 백두대간보전관련 법안에 대한 최종 조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정안의 취지를 살려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백두대간보전관련 법안 조정결과 1부. 끝.

국 무 조 정 실 장

전결 부장 정도영

수신처 산업자원부,환경부,산림청

백두대간보전관련 법안 조정결과

('03.5.10, '03.5.29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기관 1급 및 차관급 회의)

- 법령은 농림부(산림청)와 환경부 공동소관으로 함

- 다음과 같은 원칙을 법안 입법과정에 반영키로 함
  - 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과 원칙은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수립
  - 백두대간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기준과 원칙은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보전지역은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지정
  - 석회석 광산과 관련, 일정한 조건(친환경적 개발 등)하에서 노천광산개발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보전위원회 운영과 관련,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간사를 맡도록 함

- 법안의 문구조정 등 입법과정에 산업자원부 · 환경부 · 산림청이 함께 참여함

백두대간보전대책 추진상황 보고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3. 6. 4 / 국무조정실

1. 경위

- **제19회 국무회의('03.4.29)에서 『백두대간 훼손실태 및 보전대책』에 대한 토론 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보전관련 정부입장을 조율토록 대통령 지시**
  -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환경부 · 산업자원부 · 산림청** 등 관계부처 1급회의(5.10) 및 차관급회의(5.29) 개최
  - 환경부 · 산림청이 합동 업무연찬회(5.27, 국립수목원)를 개최하여 **긴밀한 협력정신**으로 백두대간보전 등 당면 현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키로 함

2. 백두대간 업무체계의 정리

- 원 칙
  -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되, 정책방향은 환경부가, 이에 따른 정책의 수립은 산림청이 주관

- 역할분담 방안

	환 경 부	산 림 청
• 기본계획 수립	: 수립기준 및 원칙	기본계획 수립
• 보전지역 지정	: 지정기준 및 원칙	보전지역 지정

※ 이 경우 주관부처는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 제정 추진중인 백두대간보전특별법은 환경부 · 농림부(산림청) 공동소관으로 함
  ※ 환경 · 교통 ·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습지보전법 등 공동소관 예가 다수 있음

- 석회석 광산에 의한 백두대간 훼손 최소화 방안마련
  - 백두대간 지역에서의 노천개발은 입지, 복구대책, 활용방안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조건하에서만 허용
  - 개발된 지역의 복구면적에 따라 신규채광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 도입
    ※ 석회석의 51%가 백두대간지역에서 생산되며, 모두 노천광임

3. 향후 계획

- 국회에 2개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계류중임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입법절차가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
  -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농림해양수산위, 이정일 의원등)
  - 백두대간보전법안(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등)
-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환경영향평가 강화, 산림훼손허가 요건 엄격화 등 보전대책 추진

별 첨 : 백두대간의 석회석광산 분포현황

〈참고자료〉

백두대간의 석회석광산 분포현황

1. 국내 석회석광산 현황

- 석회석은 시멘트, 제철, 화학 등 130여종 산업원료로 사용되며, **물류비용**이 높아 대부분 국가가 **자급체제 유지**
  - 부존량이 풍부하고 품질이 우수하여 **99% 국내자급**
  -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노천채광방식** 채택
    ※ 광산개발시 **산림복구비**를 예치하고 개발에 착수

- 석회석의 국내 매장량은 **57억톤**으로 **강원도(91%), 충북(5%)**지역에 **96%가 집중**
  - '02년도 국내 석회석 생산량은 **86백만톤** 규모
  - **시멘트용(77%)**, 제철용(11%), 화학용(6%) 등

2. 백두대간의 석회석광산 현황

- 백두대간에 **13.2억톤**이 매장(국내 매장량의 23.2%)
- 현재 **17개 석회석광산**이 **가동중**(전국 250개)이며, '02년 생산량은 **44백만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51%**를 **점유**
- 백두대간에는 **고품위** 석회석이 대량 매장되어 있어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고, 수송 등 **입지조건**도 **양호**

백두대간 석회석광산 현황('02)

구 분	전국(A)	백두대간(B)	B/A(%)
개발광산(개)	250	17	6.8
매장량(억톤)	57	13.2	23.2
석회석생산량(백만톤)	86	44	51.1
시멘트생산량(백만톤)	50	25	50.0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수정의견(제2안)

농해위 수정안	제 2 안
제9조(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본전 ·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개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3.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와 관련한 남북협력방안 5.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와 관련한 남북협력방안 6.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 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며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한다. 〈신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기준과 원칙을 반영하여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에는 - - -

농해위 수정안	제 2 안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① (수정안과 같음) ②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며, 정한다. ②- - -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1 / 전화 02)788-2688 / 전송 02)788-336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창원 담당자 방상원

문서번호 9700029-2003-446
시행일자 2003. 4 . 22.
(경 유)
수신 환경노동위원장
참조

보존기간		위 원 장	
공개여부			
수석전문위원	吳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박창원		
기안자	방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백두대간보전법안에대한 의견제시

2003. 4. 4 박인상의원 등 26인으로부터 발의된 "백두대간보전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붙임 : 백두대간보전법안에 대한 의견제시 1부. 끝.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장

「백두대간보전법안」에 대한 의견제시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의 심사경과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02년 7월 22일 이 정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을 제234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02. 10. 24)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한편, 2002년 10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관련위원회 의견제시가 있었고,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02. 10. 25)를 열어 법안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정부와 발의자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관련부처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청회('03. 2. 14)를 개최한 바 있음.

- 또한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03. 2. 17)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백두대간보전법안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산림청과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 · 답변이 있었음.

- 그리고 제 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03. 2. 19)에서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당부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백두대간의 정의와 법안 제정에 관한 의견을 대한지리학회로부터 청취한 후 다시 심의키로 하였음.

-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03. 4. 17)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및 환경부 그리고 대잔지리학회에서 개진한 의견을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된 주요쟁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의를 한 후 수정안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음.

•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03. 4. 22)에 백두대간 보전 · 관리법안을 상정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축조심사를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음.

●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백두대간보전법안」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견

•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로서 백두대간보전예정지역 중 산지가 94%, 농지가 2%인 점을 감안할 때,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이 백두대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동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대표발의자이신 이 정일 의원 주재로 산림청장과 환경부차관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 및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그리고 대한지리학회에서 개진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 의결하였습니다.

1)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 당초 원안(안 제8조)에는 산림청장이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단순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수립시 환경부장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토록 수정하였음.

2)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에 대하여

– 당초 원안(안 제10조)에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환경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수정하였음.

3)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금지에 대하여

- 당초 원안(안 제11조)에는 채석, 광산개발,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조성 등의 행위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발행위제한방식」으로 정하였으나, 이런 경우 백두대간의 훼손우려가 크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등 7가지 행위만을 허용하는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수정하였음.

4) 백두대간보전관리우원회의 소속 및 구성에 대하여

- 당초 원안(안 제15조)에는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되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하여 수정하였음.

5) 기타 수정사항에 대하여

- 당초 원안(안 제13조)에는 개발행위자에게 훼손부담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나,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개별법에 따라 부과키로 하면서 삭제하였고, 백두대간보전연구회(안 제18조)를 백두대간보전협회로 수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 및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하였음. 그 외 일부사항에 대하여도 수정이 있었음.

• 이처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한차례의 공청회, 4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그리고 환경부와 대한지리학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는바, 동일 내용의 법안을 다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선례라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이 시행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귀 위원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3〉

이정일 의원 주재 차관급 합의내용

- 백두대간보전법 제정에 대한 간담회(이정일의원실 정리내용)
- 백두대간보전 관련 특별법 내용검토(환경부 정리내용)

〈이정일의원실 정리내용〉

백두대간보전법 제정에 대한 간담회

- 간담회 개요
  - 일시 : 2002. 10. 9. 07:30~08:30
  - 장소 : 팔레스호텔
  - 참석 : 6명
    - 국회 : 이정일 의원, 김병운 비서관
    - 환경부 : 이만의 차관, 김영화 국장
    - 산림청 : 김범일 청장, 조영환 국장
- 협의내용
  - 기본계 획수립에 대하여 :
    - 제1항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규정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 관리범위지정에 대하여 :
  - 제1항에 관리범위 지정기준과 원칙을 규정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범위를 지정
  - 산림청장이 관리범위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 위원회에 대하여 :
  - 백두대간위원회는 국무총리산하로 하기로 함

- 법형식에 관하여
  - 백두대간보전관리특별법'으로 하는 방안과
  - 산지관리법에 백두대간에 관한 을 신설하고 법률 명칭을 백두대간및산지보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환경부 정리내용〉

백두대간보전 관련 특별법 내용검토

- 배경
  -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지난 '02.10.9 이정일의원님, 환경부차관 및 산림청장과 간담회시 논의된 사항과 관련임

- 특별법 내용검토
  - 『백두대간보전특별법』 제정(양 부처 공동소관)으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산림청과 적극 협의하고자 함

    (1) 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 수립 관련
    - 제1항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규정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기본계획 수립

-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2) 백두대간의 관리범위 지정 관련

- 제1항에 관리범위 지정기준과 원칙을 규정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범위를 지정
- 산림청장이 관리범위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3) 백두대간보전위원회 관련

- "백두대간보전위원회"는 국리총리 소속하에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간사위원은 환경부장관으로 함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 · 검토 및 사전 조정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간사위원이 이를 관장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10.7 국무조정실 주재로 협의 작성한 정부단일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 ·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전 · 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 철도 · 하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 ·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제8조(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해제 및 구역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 국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인 · 허가 등을 받거나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합의서

환경부와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법률안의 내용(전문 16조 부칙 2항)을 붙임과 같이 합의한다.

2003년 10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손 희 만

산림청 국유림관리국장
김 남 균

※ 붙 임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전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 ·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전 · 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 철도 · 하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 ·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제8조(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해제 및 구역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 국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인 · 허가 등을 받거나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백두대간보호관련 법률제정에 관한 합의문

국무조정실 · 농림부 · 환경부 ·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관련 법률 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동 법은 농림부(산림청) · 환경부 공동소관으로 한다.

2.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의 선택은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환경부와 농림부(산림청)는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완전히 합의하고, 2003년도 정기국회 회기내에 동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003년 11월 8일

국무조정실장	**이 영 탁**
농림부 차관	**김 정 호**
환경부 차관	**곽 결 호**
산 림 청 장	**최 종 수**

국 회 의 원 이 정 일

국회의원회관 337호 / 전화:02)788-2252 / 팩스:02)788-3337 / 담당: 간병운

문서번호 : 의정031106
발 신 일 : 2003. 11. 14
수　　신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수석전문위원
제　　목 :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심사관련 의견**

---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 심의 계류중인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을 발의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심사와 관련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 보전과 관련한 법률안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으로, 박인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사위에 같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해당부처인 산림청과 환경부의 의견 조율로 정부 합의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백두대간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연내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며, 본 법안의 원활한 입법을 위하여 귀 위원회가 정부 합의의견을 토대로 심사할 경우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존중할 것임을 밝힙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두대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법안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 회 의 원 이 정 일

박인상 국회의원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210호 ☎(02)788-2929, 784-5715 Fax.788-3210

문서번호 : 국회23-1105 (총1매)
발신일 : 2003. 11. 14
수 신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수석전문위원
제 목 : 백두대간보전법안 심사관련 의견

1. 입법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귀 위원회에 계류중인 백두대간보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본 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백두대간보전·관리법안(이정일의원 대표발의)과 본 법안은 입법취지는 같으나 소관부처를 달리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와 산림청이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정부차원의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연내 입법을 요청하고 있고,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날로 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연내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 및 부처 소관문제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일의원 및 환경부·산림청과 협의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백두대간보전법안을 대표발의한 본의원은 귀 위원회가 정부 조정안을 토대로 심사할 경우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존중할 것임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법제정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번 정기국회에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이정환보좌관 ☎ 788-2929 F.788-3210

국회의원 박 인 상

受　信 : 農林海洋水産委員長

題　目 :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대한飜案動議

위의 動議를 國會法 第91條의 規定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書面發議합니다.

첨　부 : 書面動議書 1部.　끝.

發議者 : 이 정 일　議員

贊成者 : 정 철 기　議員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대한 飜案動議

발의연월일 : 2003. 11. 20.

발 의 자 : 이 정 일 의원

1. 飜案理由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세분하는 한편,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법률안의 제명을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함.

나.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있어 환경부장관은 그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마.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개발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개발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대한수정안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제명 중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안"로 한다.

안 제1조 앞의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안 제1조(목적) 중 "보전과 관리에 관한"을 "보전 및 관리에"로 한다.

안 제2조(정의)제1호 중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를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 ·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내용 중 "보전 · 관리"를 "보전 및 관리"로 "우선하여 적용한다"를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로 한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를 삭제한다.

안 제9조 앞의 "제2장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의수립 등"을 삭제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전 · 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 철도 · 하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 ·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해제 및 구역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14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토지매수)"를 "제10조(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보전"을 "보호"로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으로 한다.

안 제15조 앞의 "제3장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삭제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

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삭제한다.

안 "제19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12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 국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벌칙)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을 "①(시행일)"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인 · 허가 등을 받거나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보전 및 관리에 관한 - - - - - - - - - - - - -

원 안	수 정 안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고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7조(민간단체의 보호활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8조(총괄관리의 원칙) 백두대간보전지역의 관리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제2장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삭제〉
제9조(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 3.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전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보전·관리와 관련한 남북협력방안 6.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원 안	수 정 안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원 안	수 정 안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금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 철도 · 제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 공공용 시설의 설치 3.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5.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 체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 철도 · 하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원 안	수 정 안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 ·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제12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 각호에 열거된 개발행위를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13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해위로 인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해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해제 및 구역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④ (생 략)	제10조(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①- - - - 보호 - - -

원 안	수 정 안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삭제〉
제18조(백두대간보전협회) ①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전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둔다. 1.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2.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한 홍보 및 보호활동 3.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익금 등으	〈삭제〉

원 안	수 정 안
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생 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백두대간 보전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전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원안과 같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 국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제20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벌칙)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

원 안	수 정 안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 ·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전 · 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하여야 하며,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 철도 · 하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 ·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제8조(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 ·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해제 및 구역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 국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인 · 허가 등을 받거나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이 법안심사 소위원호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입법조사관이 앞서 보고드린 『백두대간 보전 · 관리법안』의 반려의 건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동 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 · 자구심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의 체계 · 자구심사를 지난 8월26일 의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2개 법안간 이견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처 합의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와 환경노동위로 제출하면서,

동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하여 고심하다가, 11월19일 정부특 합의안을 참고로 한 단일안 마련은 체계 · 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소관위원회에 각각 반려하기로 의결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한편 동 법안과 관련한 소관위원회 지정은, 본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장과 여러 차례 구수회의를 가진 결과,

백두대간이 산지와 산림 그리고 산줄기 차원에서 보전 · 관리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나라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산림청장에게 주어져 있다는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소관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 그리고 당초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일 위원님께서 국회법 제89조 및 제91조 제2항에 의거, 정부합의안을 골간으로 하는 번안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번안동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정부측 답 변)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번안동의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정일의원이 제출한 『백두대간 보전 · 관리법안』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면)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심사보고서

2003년 12월 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2년 7월 22일, 이 정일 의원등 21인

나. 회부일자 : 2002년 7월 24일

다. 상정일자 :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2년 10월 24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2년 10월 25일)상정 · 심의
- 제2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3년 2월 17일)상정 · 심의
- 제2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3년 2월 19일)상정 · 심의
-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3년 4월 17일)상정 · 심의 · 수정의결
-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3년 4월 22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의결(수정)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3년 11월 21일)
  번안동의 ·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 정 일 의원)

가. 제안이유

백두대간은 우리민족의 정기를 이어주는 결정체이며 한반도의 뼈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 가고 있어 보호대책을 통해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 보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백두대간 자연생태계보전을 이념으로 국가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생태계보호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내지 7조).

(2)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4조).

(3) 국가는 매 10년마다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관리 및 보전 등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8조).

(4) 백두대간중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 관리하고,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 등에 필요한 훼손부담금을 납부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손실을 받게 되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당해 산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6) 국가의 백두대간보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조정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둠(안 제15조).

(7) 백두대간보전연구회를 두어 백두대간자연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기영)

•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의 의의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단절없는 산계(山系)의 연속으로서 하나의 산맥으로서 일체를 이루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유역을 동서로 가르는 분수계의 역할을 하는 한편, 대륙에 생존하는 야생의 동 · 식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 있음. 또한 백두대간은 전통적으로 고유한 우량수종이 자생하는 산림자원의 비축기지임과 동시에 보고(寶庫)로서, 우리민족의 정기가 서려있는 성스러운 곳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신비와 외경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동안 환경보호론자와 산악인 그리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백두대간 보전운동이 전개되는 등 백두대간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범국민적으로 고조되고, 이를 위한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겠음. 한편 정부차원에서도 백두대간이 갖는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여 이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 국회에서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입법화 과정

백두대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운동과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차원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 바, 지난 제15대 국회시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연구와 '백두대간보전법안'이 발의('99. 9. 15)된 바 있으며(임기만료로 폐기),

제16대 국회에서는 이 정일 의원을 대표로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이 발의('01. 12. 21)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 동 의원에 의하여 철회되었고, 다시 동의원의 대표로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이 발의('02. 7. 22)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산지관리에 관한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환경보호에 관한 주무부처인 환경부간에 백두대간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그리고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앎.

•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백두대간』의 정의에 대하여(안 제2조)

안 제2조에서 「"백두대간"이라 함은 산지 중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의 구간은 설악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684㎞에 이르며, 여기에는 9개의 국 · 도립공원과 6개 도, 32개 시 ·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음. 아울러 백두대간은 비무장지대, 도서 · 연안지역과 함께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근본을 이루는 핵심축을 형성하고 있음.

백두대간이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민족정기를 담은 산줄기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고려 그 범위에 백두대간과 이어지는 전국의 모든 주요 산맥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따라서 백두대간의 범위를 한반도의 주요 산맥을 전부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규정해야 할지, 아니면 안 제2조에서 규정한 대로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

산 천왕봉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민족의 산줄기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산맥은 현행방식으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안 제8조)
안 제8조에서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보전 · 1관리를 위하여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광역시장 · 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행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으나, 백두대간보전지역은 전체 산림면적 642만ha중 24만 4천ha로서 약 4%를 차지하며, 또한 백두대간보전지역내에는 산림이 약 93%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는 전체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영역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바, 안 제8조와 같이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백두대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봄.

다만, 현행법상 백두대간지역내에서의 자연생태계보호 및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바, 산림청장이 백두대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산림청과 환경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봄.

셋째,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 해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안 제10조 내지 제13조)
안 제10조에서는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중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되, 지정절차는 기본계획수립절차와 마찬가지로 시 · 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음.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백두대간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개발행위로 인해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백두대간보전지역에서는 ①채석, 광산개발 ②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조성 ③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 댐의 건설, 군사훈련장의 설치, 택지조성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개발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음. 또한 안 제13조에서 불가피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의 조성 등 자연생태계복구에 필요한 훼손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안 제8조에서 산림청장에게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안 제10조에서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백두대간업무에 관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짐. 다만,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은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를 매우 엄격히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산림청장에게 불가피한 개발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의 위임에 해당하는 바,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개발행위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넷째, 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매수에 대하여(안 제14조)
안 제1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가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총 24만 4천ha의 산지 중 국유림은 12만 9천ha(57%)이고, 사유림은 8만 1천ha(36%)이며, 국가가 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사유림을 매수할 경우 산지매수의 절차 및 매수대상범위에 대해서만 이 법에 규정하고 있고, 매수가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물론 정부가 산지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준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법에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산림청이 백두대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지매수를 위한 세부계획도 병행하여 수립함으로써 산지매수를 위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안 제15조)
안 제15조에서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두며,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 그리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는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백두대간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이러한 역할 때문에 위원장은 때로 각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거나 관련 업무를 지휘해야 하므로 위원장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기보다는 국정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백두대간보전 · 관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부위원장은 산림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산림청장)과 자연생태계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맡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되 실무위원회를 양 부처간에 공동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위원은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으나, 백두대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에 적합한 위원은 환경뿐 아니라 산림에 관한 전문가도 해당되므로 위원의 자격을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여섯째, 백두대간보전연구회 등 민간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대하여(안 제18조 및 19조)
안 제18조에서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백두대간보전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토록 하였음.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백두대간의 관리 · 보전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일정한 영역에 있어 역할분담이 요구됨. 이를 위해 연구회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민간단체가 단순히 정부재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를 위한 연구단체를 설립할 소지가 있으므로 무분별하게 연구단체가 난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음.

4. 대체토론 요지

- 백두대간지역내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대책
-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 문제
- 백두대간 정의규정과 백두대간관리범위와의 차이점
- 백두대간개념의 발원 및 백두대간에 속하지 않는 주요산맥에 대한 보전 관리대책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장성원 의원)

첫째, 백두대간중 특별히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하는 정의규정을 안 제2조에 추가하였고,

둘째, 안 제10조에서는 산림청장이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필요에 따라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11조에서 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를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였고,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1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내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안 제15조에서는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두던 것

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상향 조정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8조에 민간단체인 백두대간보전협회를 두어 백두대간 보전 ·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법안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 보완하였음.

6. 심사결과

수정안 의결

7. 특이사항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번안동의가 있었음.

8.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심사내용

약간의 체계 · 자구정리가 있었음.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3.　11.　.
제 안 자 : 농림해양수산위원장

1. 수정이유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세분하는 한편,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가. 법률안의 제명을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함.

나.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있어 환경부장관은 그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마.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개발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개발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에대한 수정안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제명 중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안"로 한다.
안 제1조 앞의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 ·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앞의 "제2장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삭제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전 · 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 철도 · 하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 ·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

속 지정 ·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해제 및 구역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13조를 삭제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5조 앞의 "제3장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삭제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삭제한다.

안 "제19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12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 국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벌칙)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인 · 허가 등을 받거나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삭제〉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중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2. "산지"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한 산림중 토지, 그 토지안의 암석지 · 소택지 및 임도를 말한다. 3. "훼손부담금"이라 함은 백두대간지역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의 조성 등 산림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 의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전 ·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로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를 보전 · 관리하여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은 자연적 ·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삭제〉

원 안	수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백두대간의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고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7조(생태계보호운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2장 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삭제〉
제8조(백두대간관리기본계획)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자연환경보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백두대간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계획 3. 백두대간의 관리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보호 및 생태계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5. 백두대간의 보전·관리와 관련한 남북협력방안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

원 안	수 정 안
6.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광역시장·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총괄관리의 원칙)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삭제〉

원 안	수 정 안
〈신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중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백두대간보전관리지역(이하 "백두대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금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 안	수 정 안
1. 채석, 광산개발(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을 제외한다) 2.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조성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 댐의 건설, 군사훈련장의 설치, 택지(공장용지 포함)조성 등의 개발행위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 철도 · 하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 ·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원 안	수 정 안
〈신설〉	제8조(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백두대간보전지역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전지역지정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해제 및 구역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훼손부담금) ①산림청장은 제11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의한 불가피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의 조성 등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훼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삭제〉

원 안	수 정 안
제14조(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전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매수의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산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삭제〉
제15조(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

원 안	수 정 안
제16조(위원 등의 수당 · 여비 등)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삭제〉
제18조(백두대간보전연구회) ①백두대간의 자연환경관리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백두대간보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회의 회원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및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⑤산림청장은 연구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제19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생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백두대간 생태계파괴 감시활동, 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원안과 같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 국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원 안	수 정 안
	②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의무) 관계 행정기관은 백두대간의 보전·관리에 관한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벌칙)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인·허가 등을 받거나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하여야 하며, 그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 철도 · 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 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 ·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

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 ·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 · 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제8조(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 · 인가 ·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 · 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 ·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

속 지정 ·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해제 및 구역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 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인 · 허가 등을 받거나 얻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3

Ⅸ. 부 록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 마련

"백두대간 보호지역" 설정 원칙과 기준(안) 국립산림과학원

한반도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적 사상의 근간(根幹)으로서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국토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가 가능한 영역을 설정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체계를 구축한다.

• 설정방향

백두대간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실체계와 인식체계의 결합',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결합', 그리고 '산계와 수계의 결합'이라는 세 가지 결합된 요소들의 관계를 기본 틀로 하여 모든 요소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한다.

• 설정원칙

1.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산계와 수계의 위계적 보전 및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유역(watershed) 개념을 포함한다.
2.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백두대간의 마루금과 주변의 자연지형 및 경관(landscape)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며, 경관적 차원의 산림생태계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산림식생의 수직적·수평적 다양성, 희귀생물 서식처 및 야생동물 이동통로 보호·유지, 그리고 토양 등 물리적 환경이 보전되도록 한다.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는 엄격한 보호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고려한다.
5.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문적, 역사적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한다.
6.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인근 주민과의 조화와 공존이 가능하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되어야 한다.
7.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설정기준에 따라 모든 대상지역을 지정한다.
8.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허용행위를 차별화한다.

• 설정기준

1.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마루금을 기준으로 좌우(동서)로 뻗어있는 수계에 따라 설정한다.

2.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1차 계류 유역을 포함하는 지점을 1차 수계로 지정하고, 각 수계의 연결은 소능선 우선으로, 경우에 따라 소계류, 또는 등고선을 따라 연결하고, 1차 수계지역을 "핵심구역"으로 설정한다.

3. "완충구역"은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3차 계류 유역을 포함하는 지점을 3차 수계로 지정하고, 각 수계를 분수계(분수령)로 연결하여 그 범위를 설정한다.

4. "핵심구역" 중 기존 전답 및 가옥 등 인공 시설물 및 이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5. "완충구역"에는 전답 및 가옥 등 인공 시설물 및 이용 토지(비산림지 포함)를 포함하도록 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안) 환경부

1. 지정 원칙

-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므로 단절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능선 및 이로부터 직접 연결된 산세와 그 유역(watershed)을 포함한다.

-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연속성 및 연결성이 확보되고, 생태축으로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림식생의 다양성, 희귀식물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 보호 · 유지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의 지형 및 경관이 잘 보호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수계, 산지체계, 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그 경계를 정한다.

- 수계와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등),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등),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 등) 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범위를 설정한다.

● 취락지구 등 다른 법정보호구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및 자연마을과 특별법으로 개발을 위하여 승인 · 인가 · 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지역 등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지정 기준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범위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3차 계류유역을 포함하는 지역과 3차 계류유역 외부지역 중 물리적 여건, 생물적 여건, 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보호구역의 경계는 소능선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계류 또는 등고선을 따라 연결한다.

  ※ 1차, 3차 계류유역은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된 하천의 유역을 말한다.

  ※ 3차 계류유역의 외부지역이라함은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환경부)"의 관리구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그 경계로 한다.

● 핵심구역

- 1차 계류유역과 지표인자 중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마루금으로부터의 거리),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영급),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이 우수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한다.

● 완충구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중에서 핵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붙임 : 1. 백두대간보호지역 구분의 결정방법

  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여건

〈 붙임 1 〉

백두대간보호지역 구분의 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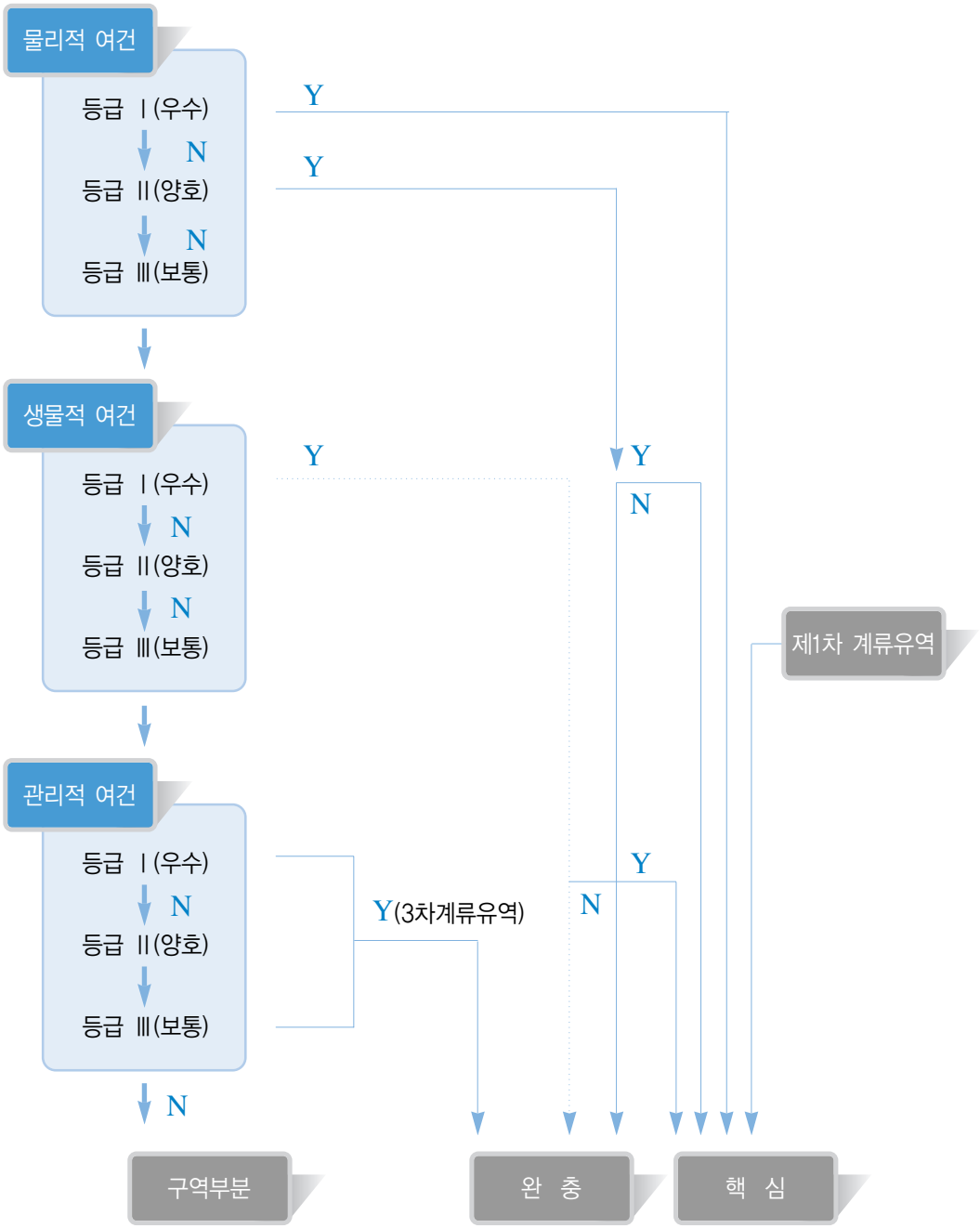

〈 붙임 2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여건

- 물리적 여건 : 표고, 경사, 마루금으로부터 거리
  - 각 지표항목을 중첩하여 3~4점은 우수, 5~7점은 양호, 8~9점은 보통

〈 지표항목 및 등급체계 〉

점 수	표 고	경 사	마루금으로부터 거리
1점	800m 이상	30˚이상	300m 이내
2점	800 ~ 500	30 ~ 15	300 ~ 700
3점	500m 이하	15˚이하	700m 이상

- 생물적 여건 : 생태자연도, 산림의 임상, 영급
  - 각 지표항목을 중첩하여 3~4점은 우수, 5~7점은 양호, 8~9점은 보통

〈 지표항목 및 등급체계 〉

점 수	생태자연도	임 상	영 급
1점	1등급	자연림	5, 6 영급
2점	2등급	인공림	3, 4 영급
3점	3등급 및 기타	무입목지 및 기타	1, 2 영급 및 기타

- 관리적 여건 : 지정된 법정보호구역의 성격에 따라 등급화

〈 지표항목 및 등급체계 〉

구 분	법 정 보 호 구 역
우 수	자연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요존 국유림
양 호	시험림, 채종림, 기타 공익용산지
보 통	임업진흥권역, 준보전산지, 기타 임업용산지, 산업용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안) 검토의견 산림청 검토 의견

● 지정원칙

환경부(안)	우리청 의견
1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므로 단절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능선 및 이로부터 직접 연결된 산세와 그 유역(watershed)을 포함한다. • 백두대간의 지형 및 경관이 잘 보호되어야 한다.	1 (좌 동)
2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연속성 및 연결성이 확보되고, 생태축으로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림식생의 다양성, 희귀식물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 보호 · 유지되어야 한다.	2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연속성 및 연결성이 확보되고, 생태축으로서 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사유〉 첫 번째 지정원칙의 용어와 중복됨으로 수정 • (좌 동)
3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수계, 산지체계, 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그 경계를 정한다. • 수계와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등),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등),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 등) 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범위를 설정한다.	3 (좌 동)
4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4 (좌 동)
5 취락지구 등 다른 법정보호구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및 도시화된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취락지구 등 다른 법률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및 도시화된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정사유〉 법정보호구역의 정의가 모호하므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함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안) 검토의견 산림청 검토 의견

● 지정기준

환경부(안)	우리청 의견
1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범위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3차 계류유역을 포함하는 지역과 3차 계류유역 외부지역 중 물리적 여건, 생물적 여건, 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좌 동)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3차 계류유역을 포함하는 지역과 3차 계류유역 외부지역 중 물리적 여건, 생물적 여건, 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수정사유〉 "마루금" 용어를 "능선"으로 통일
– 보호구역의 경계는 소능선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계류 또는 등고선을 따라 연결한다.	– (좌 동)
※ 1차, 3차 계류유역은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된 하천의 유역을 말한다.	※ (좌 동)
※ 3차 계류유역의 외부지역이라함은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환경부)"의 관리구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그 경계로 한다.	※ (삭 제) 〈수정사유〉 연구용역 결과는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지정기준에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핵심구역 • 1차 계류유역과 지표인자 중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마루금으로부터의 거리),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영급),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이 우수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한다.	2 (좌 동) • 1차 계류유역과 지표인자 중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능선으로부터의 거리),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영급),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이 우수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한다. 〈수정사유〉 "마루금" 용어를 "능선"으로 통일
3 완충구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중에서 핵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3 (좌 동)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안 최종안

1. 지정 원칙

①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므로 단절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능선 및 이로부터 직접 연결된 산세와 그 유역(watershed)을 포함한다.
- 백두대간의 지형 및 경관이 잘 보호되어야 한다.

②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연속성 및 연결성이 확보되고, 생태축으로서 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산림식생의 다양성, 희귀식물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 보호 ·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수계, 산지체계, 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그 경계를 정한다.

- 수계와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등),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등),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 등)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설정한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전(보호)지역 중 취락지구 등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또는 도시화된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지정 기준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범위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3차 계류유역을 포함하는 지역과 3차 계류유역의 외곽지역중 물리적 여건, 생물적 여건, 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보호구역의 경계는 소능선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계류 또는 등고선을 따라 연결한다.

    ※ 1차, 3차 계류유역은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된 하천의 유역을 말한다.

- 핵심구역
  - 1차 계류유역과 지표인자 중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능선으로부터의 거리),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영급),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이 우수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한다.

- 완충구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중에서 핵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붙임 : 1. 백두대간보호지역 구분의 결정방법
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여건

〈 붙임 1 〉

백두대간보호지역 구분의 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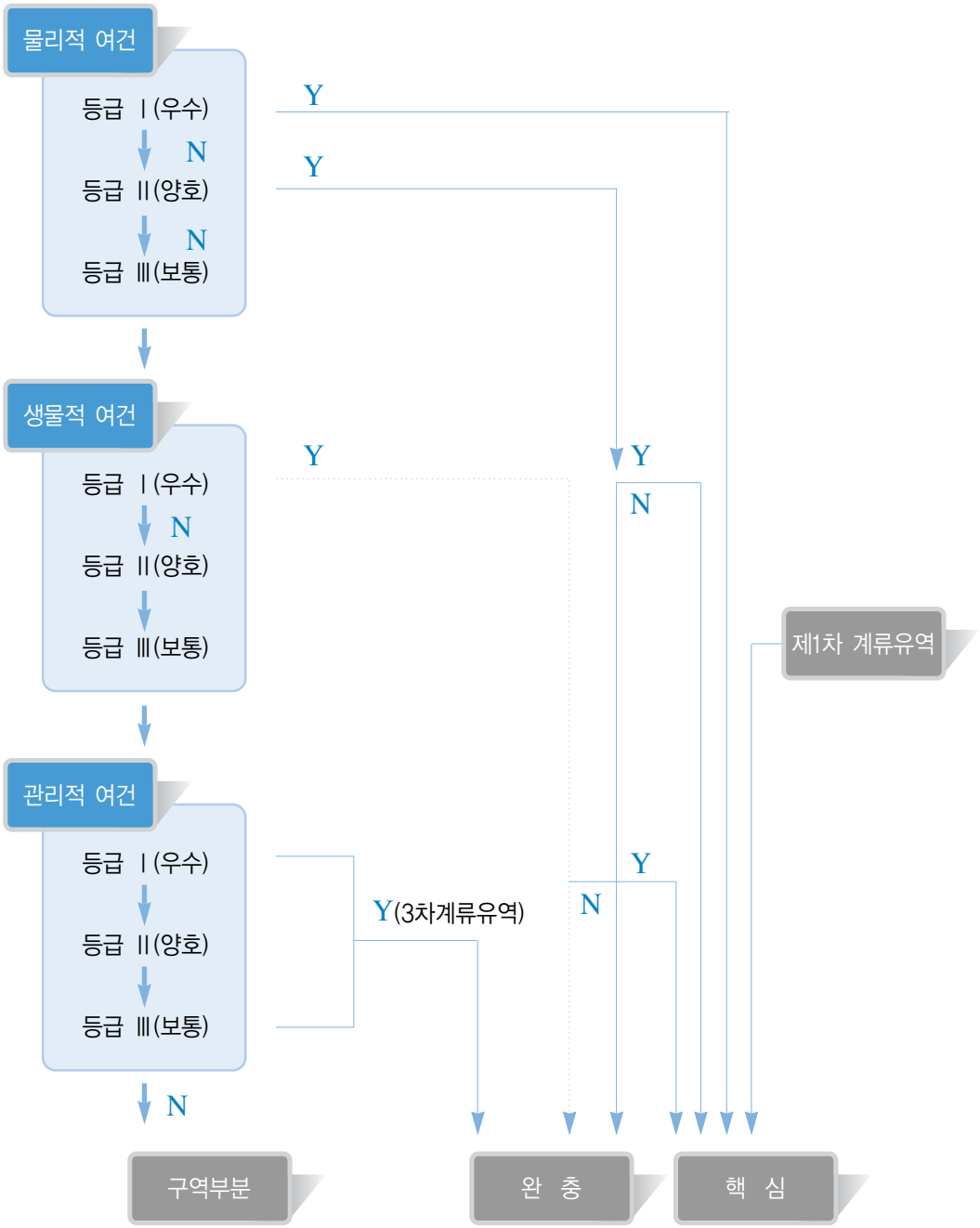

〈 붙임 2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여건

- 물리적 여건 : 표고, 경사, 마루금으로부터 거리
  - 각 지표항목을 중첩하여 3~4점은 우수, 5~7점은 양호, 8~9점은 보통

〈 지표항목 및 등급체계 〉

점 수	표 고	경 사	마루금으로부터 거리
1점	800m 이상	30˚이상	300m 이내
2점	800 ~ 500	30 ~ 15	300 ~ 700
3점	500m 이하	15˚이하	700m 이상

- 생물적 여건 : 생태자연도, 산림의 임상, 영급
  - 각 지표항목을 중첩하여 3~4점은 우수, 5~7점은 양호, 8~9점은 보통

〈 지표항목 및 등급체계 〉

점 수	생태자연도	임 상	영 급
1점	1등급	자연림	5, 6 영급
2점	2등급	인공림	3, 4 영급
3점	3등급 및 기타	무입목지 및 기타	1, 2 영급 및 기타

- 관리적 여건 : 지정된 법정보호구역의 성격에 따라 등급화

〈 지표항목 및 등급체계 〉

구 분	법 정 보 호 구 역
우 수	자연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요존 국유림
양 호	시험림, 채종림, 기타 공익용산지
보 통	임업진흥권역, 준보전산지, 기타 임업용산지, 산업용지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원칙과 기준 마련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안) 환경부 안

2004. 8. 27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가. 기본계획 수립 목적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림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요소,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함

나. 기본계획의 의의

-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보전, 이용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간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함

-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시행중인 각종 관련 계획을 포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통합하여 계획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

-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관련부처 및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어 그러한 계획 및 정책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의를 지님

- 기본계획은 궁극적으로 백두대간 본래의 개념을 유지하도록 하고 생태계구성요소의 건강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토생태망의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국토환경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2. 기본계획의 범위

가. 목표년도 설정

-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제2차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할때 목표연도는 2014년으로 함. 다만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계획년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목표년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계획수립대상

-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법 제4조4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수립 항목
  -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각 항목에서 다룰 내용의 연관성과 계획수립의 융통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특히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자료취득, 수립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원칙과 기준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3.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가. 기본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성격

-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보전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산림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므로 기본계획은 이러한 상위계획과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은 도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기본계획 등과 같은 지역계획이나 자연보호에 대한 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계획내용간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함. 다만, 기본계획 수립시 이미 수립된 각종 지역계획이나 공원기본계획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법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기본이 되므로(법 제 3조),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함

- 기본계획은 32개 시군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환경, 산림, 토지 등 자연 및 인문사회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이와 관련된 시군의 시군종합발전계획 및 시군환경보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지자체에서 수립되는 각종 계획에서 백두대간 이용,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보전, 이용,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상위계획이며, 또한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호에 관련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관련 계획내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함

4. 계획수립의 유의 사항

가. 작성방향

- 기본계획수립 원칙 및 기준 적용의 융통성 부여
  - 기본계획 수립기준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누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1차 기본계획수립시에는 계획수립기간, 기초정보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 원칙과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계획의 수정보완할 때에는 계획수립의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함

● 부문별 계획간 연관성 확보 및 객관적 자료의 사용
- 각 부문별 계획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도록 하며 계획내용의 논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함
- 계획작성시 사용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며, 가능한 사용한 자료에 대하여 자료출처 및 근거를 제시함

●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관성
- 연도별 시행계획은 장기계획인 기본계획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연차별 집행보고서의 성격이 되도록 함
-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백두대간의 큰 골격을 다루는 내용을 다루되, 가급적 계획내용을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은 수치 등으로 제시하도록 함

나. 성과물 작성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해당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가급적 쉽게 작성하도록 함

● 자료집
- 최종보고서에서 활용하거나 생산한 각종 자료를 정리함으로서 다음 번 계획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

- 관련도면
  - 작성하여야 할 도면종류는 조사결과도면, 종합분석도면, 기본계획도면 등이며 그 외에 지역별 특성이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도면은 보고서에 수록함
  - 조사결과도면 : 조사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도면에 기재하여 현황 및 여건분석 그리고 보전, 이용, 관리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함. 도면 규격은 1/50,000정도로 하되 가급적 지자체별로 작성되도록 함
  - 종합분석도면 : 현황분석, 문제점, 조사결과 보호가치가 있거나 훼손에 민감한 부분 또는 훼손된 지역 그리고 대상지 특성 등을 다양한 범례를 사용하여 작성함. 누구나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 및 특성 등을 알 수 있도록 함. 도면규격은 1/50,000으로 하되 가급적 지자체별로 작성되도록 함
  - 기본계획도면 :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내용을 총 정리하여 도면화한 것임. 보전, 이용, 관리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관리정책추진시 기본도면이 되도록 함. 도면규격은 1/50,000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작성하도록 함. 또한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도면규격을 축소하여 제시함. 이때 도면에는 중요한 계획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Ⅱ. 백두대간 기본계획 수립원칙

1.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토대로 함

- 백두대간의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그 주변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백두대간의 분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역권을 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함

2. 연계성 및 종합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제고

- 다른 법령에 의한 기존의 보호계획(자연공원기본계획 등)은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계획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두대간의 개념을 유지하고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을 보전, 이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성격을 갖도록 함

-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제시하며 계획내용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함

3. 지역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기본적 생활 배려

-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이용 및 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되, 백두대간의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이용을 원칙으로 함

-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활동(예를 들면 경작활동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 행위 등)은 최대한 보장하는 전제에서 백두대간 이용,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Ⅲ.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기준

1.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가. 백두대간의 현황 및 문제점

- 자연환경(예; 표고, 경사, 향, 토지피복, 식생, 동식물 서식처 및 생태계 요소에 대한 조사, 산림유형, 하천 등 수자원, 식생활력 등)과 인문사회여건(예; 인구, 토지이용, 토지소유현황, 문화자원, 산촌을 포함한 지역주민실태, 교통, 관광, 산림경영, 산림기능, 주요 등산로별 이용현황 등), 계획 및 제도적 여건(기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조수보호지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하여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정보를 구축함

- 지자체별 개발현황과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자연훼손, 오염 및 경관훼손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함

- 현황 및 개발현황을 지역별(지자체별)로 정리하여 지역적 여건을 분석하도록 함. 이때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에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자체별 백두대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 지정된 각종 보호지역별 현황(보호지역별 현황, 각 보호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방향, 각종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을 정리하여 전체 백두대간의 현황과 비교 검토하도록 함

- 현황파악은 가능한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여 백두대간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2차 기본계획부터는 현황파악 부문에서 기 계획내용 실행 실적도 함께 포함하도록 함

- 현황분석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여 백두대간의 생태, 산림, 토지, 문화 등에 대한 특성을 종합하고 분석도면을 작성함

나. 관련계획의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된 계획을 검토, 정리하여 기본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다만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계획과 관련된 주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함

- 상위계획 및 관련된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건변화를 종합하여 여건변화 전망시 고려하도록 함. 이때 백두대간 보전,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각종 계획내용을 정리하여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함. 다만 기본계획수립의 목표 및 전략 그리고 부문별 계획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의 조정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다. 여건변화 전망

- 여건변화에서는 각종 계획 및 사업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여건, 경제적 요인(예; 소득, 여가활동 등), 백두대간의 의미 및 환경 질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등에 대하여 국내의 여건변화 추이와 전망을 분석함

-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여건 그리고 제도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현재와 장래의 모습을 종합하여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함

-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상의 제약조건과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생태계, 산림 및 공간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함

2. 기본방향

가. 목표설정

- 기본계획의 목표는 상위계획의 목표을 수용하여 설정함. 다만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이 현실성이 미흡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계획 목표는 앞에서 분석한 현황 및 여건변화전망과 연관성을 가지도록 작성하며 또한 다음의 추진전략과 상호 연계되도록 함

나. 추진전략

- 추진전략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원환경, 이용, 관리, 사회여건 등 요소별 추진전략을 수립함
  - 여기에서는 보전, 이용 그리고 관리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추후 부문별 추진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부문별 추진방안에서 제시되는 계획내용이 당위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전전략
  - 백두대간 보호지역 전체에 대한 보전전략을 제시함
  - 핵심, 완충지역별 행위제한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함. 이때 이와 관련된 제도내용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이를 전제로 이용 및 관리전략과도 연관되도록 하여야 함. 특히 대규모 시설에 대하여 수용가능한/불가능한 사업유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보전전략은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 부분은 "훼손지 대책"과 상호 연관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하게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보전에 대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함. 예를 들면, 상태양호(현재 상태 유지 및 기능증진 방안 강구하기 위한

대상), 관찰요(인위적 행위 또는 자연적 교란에 의항 훼손 및 오염될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서 상황진척에 따라 보전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함), 복원요 등으로 구분하여 추후 훼손지 대책을 수립하는데에 토대가 되도록 함.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구역별 정리가 가능할 것임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전략
  - 현재의 이용실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 유형별 문제점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함. 특히 각 제도에 의하여 추진가능한 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보전전략에서 정리한 보전의 기본방향 및 행위제한 내용을 전제로 이용 및 개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 예를 들면, 사업유형, 개발에 따라 전망되는 환경여건변화 등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점을 분석함
  - 각종 개발사업추진 이후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 대상항목 등을 제시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 백두대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확보 및 경제성 있는 산림 차원에서 산림관리의 추진전략을 제시. 여기에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 사유림 관리, 조림, 육림 갱신등 임업경영, 임도건설, 각종 개발사업 이용에 따른 법사면 처리, 개발에 따른 산사태 등에 대한 방재 대책을 포함함
  - 백두대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백두대간보호와 관련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이때 토지이용변화가 대규모이거나 백두대간보호와 관련하여 불합

리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여기에서 불합리한 토지이용변화의 판단은 산림생태계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관광을 비롯한 문화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공간과 시설 그리고 탐방객 규모를 파악함. 특히 등산로 실태를 파악하여 환경훼손정도를 제시하도록 함. 또한 백두대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휴양경험(recreational opportunities)을 조사하여 적절한 휴향활동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이를 위해 탐방객 특성 및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형 및 정도를 정리하며, 탐방객 관리를 위한 개략적인 프로그램를 제시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시 감안하도록 함
- 기본계획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 및 주민생활 제약에 대한 대책 강구하며 특히 기본계획추진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제한에 따른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생활의 제약요소를 제시함. 이에 따라 해당지자체 또는 지역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3. 부문별 추진방안

가. 주요 과제 도출

-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과제 도출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보전,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계획기간동안 추진할 과제 선정
  - 선정된 과제 가운데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제시 : 주로 백두대간보호법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백두대간이 지닌 문제점을 감안하여 계획기간동안 해결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구체적인 추진방안 제시에서 제외된 과제들에 대하여 개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

나.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

-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에 대한 조사사업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실시된 지금까지의 각종 조사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기본계획수립시 최대한 이용하도록 함
  - 이때 조사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사목적과 대상 그리고 한계에 대하여 비교분석함
  - 조사내용은 가능하면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여건 등 현황분석의 항목과 가급적 일치하도록 함
  - 조사결과는 도면으로 작성하고 지자체별로 정리하여 계획수립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며 또한 조사하여야 할 대상 및 항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계획기간동안 실시할 조사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이때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계획을 파악하여 공동조사 또는 조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수립에서는 가능한 백두대간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및 생태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원칙

- 보호지역의 지정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하되, 여건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정 원칙 및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거나 주변 여건상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 지역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대상의 결정은 관련법에 의하되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해제 사유 등 상세한 사항을 제시하도록 함

- 백두대간 지정 · 변경 및 해제는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의 보호지역 등급이 변화되는 것을 포함함. 핵심지역이 완충지역이 되거나 그 반대로 조정되는 경우에도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합당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보호지역 지정 · 변경 및 해제시 필요한 자료
  - 지정 : 지정 (보호지역 포함)의 필요성, 보호지역 지정원칙 적용, 추가된 보호지역 내역 및 도면(신구 도면 제시), 해당지자체 협의 과정 및 결과
  - 변경 : 변경의 필요성, 변경사유, 변경구간에 대한 각종 정보, 관련도면, 해당지자체 의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내용
  - 해제 : 해제의 필요성, 보호지역 지정원칙 적용, 해제된 지역의 내역 및 도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결과
  - 지정 · 변경 및 해제 부분은 도면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여건을 정리하여 변경전후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함

라.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 훼손지 복원을 위한 기본방향 : 핵심 및 완충지역보전원칙
  - 핵심지역에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대상은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도면을 작성함. 이때 그 주변 상황도 함께 제시하여 추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 핵심지역에서 훼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평가항목을 제시하도록 함
  - 핵심지역에서 특별히 보전할 지역, 훼손 및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은 목록을 작성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함. 이때 대상지의 특성과 보전 또는 훼손우려가 있는 사항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함
  - 완충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 및 지역주민생활영위를 위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리하여 별도의 보전대책을 강구함

- 핵심 및 완충지역에서 특별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대상은 각 대상별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와 도면 그리고 각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
- 기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각각의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방안을 최대한 반영하며, 그 주변지역의 보전방안은 이러한 계획내용과 연관성을 지니도록 함

● 훼손지 복원방향

- 환경부(2003,-2004년)에서 조사한 내역(훼손실태조사) 및 산림청의 형질변경허가관련자료 및 산림형질변경복구기준 등을 고려하여 복원기준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복원대상의 특성, 위치적 여건, 자원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복원, 회복, 완화, 증진 등)하며, 또한 복원시행주체와 절차를 언급하도록 함
- 훼손지 복원에서는 훼손된 부분과 함께 주변 생태계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복원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복원 원칙, 기준 및 방법을 고려하여 복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확보가능한 예산을 감안하여 장단기별 추진방안을 강구함
- 기본계획에서는 훼손유형별 복원 방안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대상별 상세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수립 하도록 함

● 훼손에 대한 사전예방방안 : 시설 설치 및 이용시 고려사항

- 새로운 시설설치(개발사업, 형질변경)에 따른 기본방향을 제시함
-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을 구분하고 지자체별 개발사업을 취합하고 각 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추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함. 특히 허가된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에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함.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개발유형에 따라 사업실시 중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도록 함

- 시설설치가 아닌 이용유형(토지피복의 변형정도, 산림훼손정도, 산지형질변경정도, 등산규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변경과 훼손정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기본방침을 제시함
- 각종 개발사업 및 이용유형에 따른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에 따른 사전조치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도록 함

마.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방안

- 계획기간동안의 토지매수방안을 강구함. 이때 앞에서 제시한 보전, 이용 및 관리계획을 감안하여 대상지 선정원칙을 우선 제시하고, 투입가능한 예산 정도, 보상수준, 토지매수청구 기준설정 등을 감안하여 토지매수 규모를 제시함

- 계획실행 및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토지매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도록 함
- 토지매수에 따른 주민지원 또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검토하도록 함
- 그 외 사유지의 국유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바.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방안

- 백두대간보전,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과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 일반사항으로서 백두대간에 대한 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함
  -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협력사항을 제시함

-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
  - 백두대간에 포함하면서 비무장지대에 속한 해당지자체의 경우 인접한 북한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함
  - 남한에서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과 같이 북한에서도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이때 공동연구를 제안하도록 함

사. 백두대간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관리개선 및 투자방안

- 이해당사자 협력방안 및 역할을 정립
  - 관련부처의 협조 및 역할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 인접한 해당지자체간 협력방안을 강구함
  -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활동 방안을 강구함

- 주민 및 지역사회 관계 개선방안
  - 백두대간 보호지역 설정 및 향후 관리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정립 방안을 제시함

-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백두대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차별 투자계획
  -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내용 및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함. 사업별, 연도별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제시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참고하도록 함
  - 계획내용 및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함
  - 투자계획작성 및 연차별 투자우선순위 작성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장단기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과 연계되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함
  -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고 이때 중앙정부, 지방자체단체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재원계획 등 제3섹타 방식도 고려함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안)

산림청 검토

2004. 10.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가.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림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요소,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계획수립의 의의

(1)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보전, 이용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아 이해 당사자간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함

(2)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시행중인 각종 관련 계획을 포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통합하여 계획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

(3)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본래의 개념을 유지하도록 하고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의 건강성 증진과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도록 기여하는데 그 의의를 지님

2. 기본계획의 범위

가. 기본계획기간

(1)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2)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계획년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기본계획 수립대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보호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항목

(가)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나)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다)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마)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사)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각 항목은 내용의 연관성과 계획수립의 융통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및 성격

가. 기본계획수립의 법적근거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성격

(1) 기본계획은 6개도 32개 시 · 군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환경, 산림, 토지 등 자연 및 인문사회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상위계획임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하여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기본이 되므로(법 제3조),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함

(3)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호에 관련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관련 계획내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함

Ⅱ 기본계획 수립원칙

1.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토대로 한다.

가. 백두대간의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그 주변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백두대간의 분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역권을 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2. 연계성 및 종합성 :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제고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한 기존의 보호계획은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계획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두대간의 개념을 유지하고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을 보전, 이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다.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제시하며 계획내용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3. 지역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기본적 생활을 배려한다

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이용 및 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되, 백두대간의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활동(예를 들면 경작활동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 행위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백두대간 이용,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Ⅲ 기본계획 수립기준

1.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가. 백두대간의 현황

(1)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여건 및 제도적 여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정보를 구축한다.

(가) 자연환경 : 표고, 경사, 향, 토지피복, 식생, 동식물 서식처 및 생태계 요소에 대한 조사, 산림유형, 하천 등 수자원, 식생활력 등

(나) 인문사회여건 : 인구, 토지이용, 토지소유현황, 문화자원, 산촌을 포함한 지역주민실태, 교통, 관광, 산림경영, 산림기능, 주요 등산로별 이용현황 등

(다) 제도적 여건 : 기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 산지전용제한지역,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조수보호지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

(2) 지자체별 개발현황과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자연훼손, 오염 및 경관훼손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에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자체별 백두대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 지정된 각종 보호지역별 현황(보호지역별 현황, 각 보호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방향, 각종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을 정리하여 전체 백두대간의 현황과 비교 · 검토하도록 한다.

(4) 현황파악은 가능한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여 백두대간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

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부터는 현황파악 부문에서 기 계획내용 실행 실적도 함께 포함하도록 한다.

(5) 현황분석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백두대간의 생태, 산림, 토지, 문화 등에 대한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한 자료를 작성한다.

나. 관련 계획의 검토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건변화, 계획내용 등을 분석 · 검토하여 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2) 기본계획수립의 목표 및 전략 그리고 부문별 계획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의 조정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여건변화 전망

(1) 각종 계획 및 사업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연환경, 인문사회여건, 경제적 요인(예; 소득, 여가활동 등), 백두대간의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등에 대하여 국내의 여건변화 추이와 전망을 분석한다.

(2)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여건 그리고 제도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현재와 장래의 모습을 종합하여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상의 제약조건과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생태계, 산림 및 공간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한다.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가. 목표설정

(1) 기본계획의 목표는 분석된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추진전략

(1) 추진전략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연환경, 이용, 관리, 사회여건 등 요소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되, 백두대간 보전, 이용 및 관리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부문별 추진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부문별 추진방안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전략

1) 백두대간보호지역 전체에 대한 보호전략을 제시하고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 · 정리하고, 이를 전제로 이용 및 관리전략과도 연관되도록 하며,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유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전략

1)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이용실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호지역 보호전략에서 정리한 보호의 기본방향 내용을 전제로 이용 및 개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각종 개발사업추진 이후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 대상항목 등을 제시한다.

(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1) 백두대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경제성 있는 산림 확보차원에서 산림관리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산림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두대간보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 관광을 비롯한 문화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공간과 시설 그리고 탐방객 규모, 특성을 파악하고, 백두대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휴양경험(recreational opportunities)을 조사하여 적절한 휴양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탐방객 관리를 위한 개략적인 프로그램를 제시하여 시행계획수립시 반영한다.

4) 기본계획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 및 지역주민생활 제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기본계획기간중 실시할 조사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이때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계획을 파악하여 공동조사 또는 부분조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 및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조사내용 및 현황분석

조사내용은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여건 등으로 조사내용과 결과를 분석 · 검토 정리하여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백두대간지역의 자연환경 및 야생 동 · 식물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 · 중 ·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지정과정,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리하여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보호지역 변경 · 해제 사유제시 및 의견수렴

(1) 사회적 ·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정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과 환경부가 협의하여 변경할 경우와 지역주민생활의 편익, 국가공공사업에 의한 개발 등 불가피하게 보호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

(2) 보호지역 구역변경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등급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해제는 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 의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 방법 등을 제시한다.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 복구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백두대간중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복원 · 복구에 관한 모델 개발 및 방향을 제시한다.

나. 복원 · 복구 대책

(1) 환경부(2003-2004)에서 조사한 내역(훼손실태조사) 과 산림청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기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원 · 복구 기준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2) 핵심구역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 및 그 주변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핵심구역에서 훼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

(1) 복원 · 복구의 원칙,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복원 · 복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 · 단기별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현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리된 자료를 분석 · 검토하여 훼손유형별로 복원 · 복구사업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보호지역안의 모든 사유토지는 장기적으로 국유화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유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매수 대상지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확보, 토지이용현황 등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2) 토지매수에 따른 토지가격 산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7.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남 · 북 협력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백두대간 보호 ·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남 ·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백두대간에 대한 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해 남 · 북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2) 남 · 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사항을 제시한다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지역사회 및 주민지원 방안

(1) 관계개선

보호지역 범위설정 및 관리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참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2)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백두대간 관련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정책기능의 강화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3) 지원계

(가) 각종 계획내용 및 사업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장 · 단기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나) 지원계획 작성 및 연차별 지원 우선순위 작성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재원조달방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재원계획 등 제3섹타 방식 등을 고려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홍보

(1) 기본방향

(가)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산림생태계 복원 등 보호활동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2) 사업추진

(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NGO,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백두대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작성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대한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석 · 평가하고, 이를 발전 · 확산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보호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중요한 자연재산으로 미래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과 대책을 강구한다.

(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백두대간 보호의 필요성 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Ⅳ.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원칙 및 기준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원칙과 기준 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은 상호 연관성과 내용의 논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자료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활용하되, 자료출처 및 근거를 제시한다.

다.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기본계획 내용의 조정

기본계획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원칙과 기준(안)에 대한 환경부(안)과 산림청(안) 주요내용 비교

환 경 부 (안)	산 림 청 (안)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개요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가. 기본계획 수립목적	가.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나. 기본계획의 의의	나. 기본계획수립의 의의
2. 기본계획의 범위	2. 기본계획의 범위
가. 목표년도 설정	가. 기본계획기간
나. 기본계획 수립대상	나. 기본계획 수립대상
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3. 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및 성격	3. 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및 성격
가. 기본계획수립의 법적근거	가. 기본계획수립의 법적근거
나. 기본계획의 성격	나. 기본계획의 성격
4. 계획수립의 유의사항	〈 삭 제 〉
가. 작성방향	
나. 성과물 작성	
Ⅱ. 기본계획 수립원칙	**Ⅱ. 기본계획 수립원칙**
1. 지속가능성	1. 지속가능성
2. 연계성 및 종합성	2. 연계성 및 종합성
3. 지역성	3. 지역성
Ⅲ.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기준	**Ⅲ. 기본계획 수립기준**
1.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1.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가. 백두대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백두대간의 현황
나. 관련계획의 검토	나. 관련계획의 검토
다. 여건변화 전망	다. 여건변화 전망
2. 기본방향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가. 목표설정	가. 목표설정
나. 추진전략	나. 추진전략
3. 부문별 추진방향	〈 삭 제 〉
가. 주요과제 도출	〈 삭 제 〉
나.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나. 조사내용 및 현황
	다.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원 안	수 정 안
다. 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원칙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나. 보호지역 변경 · 해제 사유제시 및 의견수렴
라.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 복구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나. 복원 · 복구대책 다. 사업추진
마.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방안	6. 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
바.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 방안	7.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남 · 북 협력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나. 사업추진
사. 백두대간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관리개선 및 투자 방안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지역사회 및 주민지원방안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홍보
	Ⅳ.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2. 기본계획 내용의 조정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 환경부 최종 검토 안

2004. 10. 14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가.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림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요소,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계획수립의 의의

(1)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보전, 이용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아 이해 당사자간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함

(2)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시행중인 각종 관련 계획을 포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통합하여 계획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

(3)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본래의 개념을 유지하도록 하고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의 건강성 증진과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도록 기여하는데 그 의의를 지님

2. 기본계획의 범위

가. 기본계획기간

(1)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2)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계획년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기본계획 수립대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보호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항목

(가)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나)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다)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마)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사)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각 항목은 내용의 연관성과 계획수립의 융통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및 성격

가. 기본계획수립의 법적근거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성격

(1) 기본계획은 6개도 32개 시 · 군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환경, 산림, 토지 등 자연 및 인문사회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상위계획임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하여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기본이 되므로(법 제3조),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함

(3)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호에 관련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관련 계획내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함

Ⅱ. 기본계획 수립원칙

1.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토대로 한다.

가. 백두대간의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그 주변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백두대간의 분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역권을 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2. 연계성 및 종합성 :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제고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한 기존의 보호계획은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계획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두대간의 개념을 유지하고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을 보전, 이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다.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제시하며 계획내용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3. 지역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기본적 생활을 배려한다

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이용 및 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되, 백두대간의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활동(예를 들면 경작활동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 행위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백두대간 이용,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Ⅲ. 기본계획 수립기준

1.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가. 백두대간의 현황

(1)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여건 및 제도적 여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정보를 구축한다.

(가) 자연환경 : 표고, 경사, 향, 토지피복, 식생, 동식물 서식처 및 생태계 요소에 대한 조사, 산림유형, 하천 등 수자원, 식생활력 등

(나) 인문사회여건 : 인구, 토지이용, 토지소유현황, 문화자원, 산촌을 포함한 지역주민실태, 교통, 관광, 산림경영, 산림기능, 주요 등산로별 이용현황 등

(다) 제도적 여건 : 기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 산지전용제한지역,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조수보호지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

(2) 지자체별 개발현황과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자연훼손, 오염 및 경관훼손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에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자체별 백두대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 지정된 각종 보호지역별 현황(보호지역별 현황, 각 보호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방향, 각종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을 정리하여 전체 백두대간의 현황과 비교 · 검토하도록 한다.

(4) 현황파악은 가능한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여 백두대간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부터는 현황파악 부문에서 기 계획내용 실행 실적도 함께 포함하도록 한다.

(5) 현황분석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백두대간의 생태, 산림, 토지, 문화 등에 대한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한 자료를 작성한다.

나. 관련 계획의 검토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건변화, 계획내용 등을 분석 · 검토하여 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2) 기본계획수립의 목표 및 전략 그리고 부문별 계획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의 조정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여건변화 전망

(1) 각종 계획 및 사업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연환경, 인문사회여건, 경제적 요인(예; 소득, 여가활동 등), 백두대간의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등에 대하여 국내의 여건변화 추이와 전망을 분석한다.

(2)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여건 그리고 제도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현재와 장래의 모습을 종합하여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상의 제약조건과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생태계, 산림 및 공간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한다.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가. 목표설정

(1) 기본계획의 목표는 분석된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추진전략

(1) 추진전략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연환경, 이용, 관리, 사회여건 등 요소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되, 백두대간 보전, 이용 및 관리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부문별 추진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부문별 추진방안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전략

1) 백두대간보호지역 전체에 대한 보호전략을 제시하고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 · 정리하고, 이를 전제로 이용 및 관리전략과도 연관되도록 하며,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유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전략

1)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이용실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호지역 보호전략에서 정리한 보호의 기본방향 내용을 전제로 이용 및 개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각종 개발사업추진 이후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 대상항목 등을 제시한다.

(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1) 백두대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경제성 있는 산림 확보차원에서 산림관리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산림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두대간보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 관광을 비롯한 문화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공간과 시설 그리고 탐방객 규모, 특성을 파악하고, 백두대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휴양경험(recreational opportunities)을 조사하여 적절한 휴양활동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탐방객 관리를 위한 개략적인 프로그램를 제시하여 시행계획수립시 반영한다.
4) 기본계획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 및 지역주민생활 제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기본계획기간 중 실시할 조사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이때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계획을 파악하여 공동조사 또는 부분조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 및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조사내용 및 현황분석

조사내용은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여건 등으로 조사내용과 결과를 분석 · 검토 정리하여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백두대간지역의 자연환경 및 야생 동 · 식물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 · 중 ·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지정과정,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리하여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보호지역 변경 · 해제 사유제시 및 의견수렴

(1) 사회적 ·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정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과 환경부가 협의하여 변경할 경우와 지역주민생활의 편익, 국가공공사업에 의한 개발 등 불가피하게 보호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

(2) 보호지역 구역변경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등급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해제는 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 의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다. 지정, 변경 및 해제시 검토 필요사항

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지역주민,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지정 ·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토지이용 현황 등 해당 지역의 각종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한다.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 복구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백두대간중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복원 · 복구에 관한 모델 개발 및 방향을 제시한다.

나. 복원 · 복구 대책

(1) 환경부(2003-2004)에서 조사한 내역(훼손실태조사) 과 산림청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기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원 · 복구 기준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2) 핵심구역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 및 그 주변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핵심구역에서 훼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

(1) 복원 · 복구의 원칙,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복원 · 복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 · 단기별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현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리된 자료를 분석 · 검토하여 훼손유형별로 복원 · 복구사업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보호지역안의 모든 사유지는 장기적으로 국유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유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매수 대상지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확보, 토지이용현황 등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2) 토지매수에 따른 토지가격 산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7.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남 · 북 협력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백두대간 보호 ·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남 ·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백두대간에 대한 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해 남 · 북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2) 남 · 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사항을 제시한다.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지역사회 및 주민지원 방안

(1) 관계개선

보호지역 범위설정 및 관리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참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2)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기능의 강화 등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지원계획

(가) 주민지원에 대한 각종 계획내용 및 사업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장 · 단기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나) 지원계획 작성 및 연차별 지원 우선순위 작성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홍보

(1) 기본방향

(가)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산림생태계 복원 등 보호활동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2) 사업추진

(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NGO,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백두대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작성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대한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석 · 평가하고, 이를 발전 · 확산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보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중요한 자연재산으로 미래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과 대책을 강구한다.

(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백두대간 보호의 필요성 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

(1) 훼손지 복원 · 복구대책 등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수립 내용을 토대로 연차별 · 사업별 · 주체별(중앙정부 및 지자체)로 구분하여 장 · 단기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2) 투자계획 작성 및 연차별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며,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장 · 단기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다(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 등 제3섹타 방식도 고려).

Ⅳ.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원칙 및 기준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원칙과 기준 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은 상호 연관성과 내용의 논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자료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활용하되, 자료출처 및 근거를 제시한다.

다.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기본계획 관련 도면의 작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은 가급적 지자체별 도면으로 제시한다.

(1) 조사결과도면 : 현황 및 여건분석 그리고 보전, 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도면에 기재한다.

(2) 종합분석도면 : 현황분석, 문제점, 조사결과 보호가치가 있거나 훼손에 민감한 부분 또는 훼손된 지역 그리고 대상지 특성 등을 다양한 범례를 사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중요정보 및 특성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기본계획 구상도면 :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내용을 총 정리하여 도면화한 것으로 보전 · 이용 ·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기본계획 내용의 조정

기본계획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안) 산림청 최종 검토안

2004. 10.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가.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림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요소,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계획수립의 의의

(1)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보전, 이용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아 이해 당사자간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함

(2)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시행중인 각종 관련 계획을 포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통합하여 계획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

(3)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본래의 개념을 유지하도록 하고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의 건강성 증진과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도록 기여하는데 그 의의를 지님

2. 기본계획의 범위

가. 기본계획기간

(1)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2)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계획년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기본계획 수립대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보호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항목

(가)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나)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다)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마)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사)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각 항목은 내용의 연관성과 계획수립의 융통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및 성격

가. 기본계획수립의 법적근거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성격

(1) 기본계획은 6개도 32개 시 · 군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환경, 산림, 토지 등 자연 및 인문사회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상위계획임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하여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기본이 되므로(법 제3조),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함

(3)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호에 관련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관련 계획내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함

Ⅱ. 기본계획 수립원칙

1.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토대로 한다.

가. 백두대간의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그 주변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백두대간의 분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역권을 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2. 연계성 및 종합성 :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제고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한 기존의 보호계획은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계획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두대간의 개념을 유지하고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을 보전, 이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다.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제시하며 계획내용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3. 지역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기본적 생활을 배려한다

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이용 및 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되, 백두대간의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활동(예를 들면 경작활동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 행위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백두대간 이용,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Ⅲ. 기본계획 수립기준

1.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가. 백두대간의 현황

(1)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여건 및 제도적 여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정보를 구축한다.

(가) 자연환경 : 표고, 경사, 향, 토지피복, 식생, 동식물 서식처 및 생태계 요소에 대한 조사, 산림유형, 하천 등 수자원, 식생활력 등

(나) 인문사회여건 : 인구, 토지이용, 토지소유현황, 문화자원, 산촌을 포함한 지역주민실태, 교통, 관광, 산림경영, 산림기능, 주요 등산로별 이용현황 등

(다) 제도적 여건 : 기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 산지전용제한지역,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조수보호지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

(2) 지자체별 개발현황과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자연훼손, 오염 및 경관훼손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에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자체별 백두대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 지정된 각종 보호지역별 현황(보호지역별 현황, 각 보호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방향, 각종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을 정리하여 전체 백두대간의 현황과 비교 · 검토하도록 한다.

(4) 현황파악은 가능한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여 백두대간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부터는 현황파악 부문에서 기 계획내용 실행 실적도 함께 포함하도록 한다.

(5) 현황분석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백두대간의 생태, 산림, 토지, 문화 등에 대한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한 자료를 작성한다.

나. 관련 계획의 검토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건변화, 계획내용 등을 분석 · 검토하여 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2) 기본계획수립의 목표 및 전략 그리고 부문별 계획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의 조정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여건변화 전망

(1) 각종 계획 및 사업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연환경, 인문사회여건, 경제적 요인(예; 소득, 여가활동 등), 백두대간의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등에 대하여 국내의 여건변화 추이와 전망을 분석한다.

(2)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여건 그리고 제도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현재와 장래의 모습을 종합하여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상의 제약조건과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생태계, 산림 및 공간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한다.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가. 목표설정

(1) 기본계획의 목표는 분석된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추진전략

(1) 추진전략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연환경, 이용, 관리, 사회여건 등 요소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되, 백두대간 보전, 이용 및 관리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부문별 추진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부문별 추진방안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전략

1) 백두대간보호지역 전체에 대한 보호전략을 제시하고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 · 정리하고, 이를 전제로 이용 및 관리전략과도 연관되도록 하며,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유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전략

1)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이용실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호지역 보호전략에서 정리한 보호의 기본방향 내용을 전제로 이용 및 개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각종 개발사업추진 이후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 대상항목 등을 제시한다.

(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1) 백두대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경제성 있는 산림 확보차원에서 산림관리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산림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두대간보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 관광을 비롯한 문화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공간과 시설 그리고 탐방객 규모, 특성을 파악하고, 백두대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휴양경험(recreational opportunities)을 조사하여 적절한 휴양활동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탐방객 관리를 위한 개략적인 프로그램를 제시하여 시행계획수립시 반영한다.

4) 기본계획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 및 지역주민생활 제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기본계획기간 중 실시할 조사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이때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계획을 파악하여 공동조사 또는 부분조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 및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조사내용 및 현황분석

조사내용은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여건 등으로 조사내용과 결과를 분석 · 검토 정리하여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백두대간지역의 자연환경 및 야생 동 · 식물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 · 중 ·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지정과정,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리하여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보호지역 변경 · 해제 사유제시 및 의견수렴

(1) 사회적 ·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정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과 환경부가 협의하여 변경할 경우와 지역주민생활의 편익, 국가공공사업에 의한 개발 등 불가피하게 보호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

(2) 보호지역 구역변경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등급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해제는 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 의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다. 지정, 변경 및 해제시 검토 필요사항

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지역주민,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지정 ·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토지이용 현황 등 해당 지역의 각종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한다.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 복구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백두대간중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복원 · 복구에 관한 모델 개발 및 방향을 제시한다.

나. 복원 · 복구 대책

(1) 환경부(2003-2004)에서 조사한 내역(훼손실태조사) 과 산림청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기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원 · 복구 기준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2) 핵심구역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 및 그 주변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핵심구역에서 훼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

(1) 복원 · 복구의 원칙,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복

원 · 복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 · 단기별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현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리된 자료를 분석 · 검토하여 훼손유형별로 복원 · 복구사업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보호지역안의 모든 사유지는 장기적으로 국유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유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매수 대상지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확보, 토지이용현황 등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2) 토지매수에 따른 토지가격 산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7.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남 · 북 협력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백두대간 보호 ·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남 ·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백두대간에 대한 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해 남 · 북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2) 남 · 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사항을 제시한다.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지역사회 및 주민지원 방안

(1) 관계개선

보호지역 범위설정 및 관리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참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2)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기능의 강화 등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지원계획

(가) 주민지원에 대한 각종 계획내용 및 사업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장 · 단기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나) 지원계획 작성 및 연차별 지원 우선순위 작성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홍보

(1) 기본방향

(가)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산림생태계 복원 등 보호활동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2) 사업추진

(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NGO,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백두대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작성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대한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석 · 평가하고, 이를 발전 · 확산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보호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중

요한 자연재산으로 미래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과 대책을 강구한다.

(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백두대간 보호의 필요성 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

(1) 훼손지 복원 · 복구대책 등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수립 내용을 토대로 연차별 · 사업별 · 주체별(중앙정부 및 지자체)로 구분하여 장 · 단기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2) 투자계획 작성 및 연차별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며,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장 · 단기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다(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 등 제3섹타 방식도 고려).

Ⅳ.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원칙 및 기준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원칙과 기준 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은 상호 연관성과 내용의 논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자료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활용하되, 자료출처 및 근거를 제시한다.

다.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기본계획 관련 도면의 작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은 가급적 지자체별 도면으로 제시한다.

(1) 조사결과도면 : 현황 및 여건분석 그리고 보전, 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도면에 기재한다.

(2) 종합분석도면 : 현황분석, 문제점, 조사결과 보호가치가 있거나 훼손에 민감한 부분 또는 훼손된 지역 그리고 대상지 특성 등을 다양한 범례를 사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중요정보 및 특성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기본계획 구상도면 :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내용을 총 정리하여 도면화한 것으로 보전 · 이용 ·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기본계획 내용의 조정

기본계획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산림청 최종 검토 의견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수립 원칙과 기준 수정 대비표 산림청 최종 검토 의견

2005. 1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수립 원칙과 기준 수정(안)

협 의 안	수 정 안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개요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가.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림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요소,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계획수립의 의의 (1)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보전, 이용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아 이해 당사자간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함 (2)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시행중인 각종 관련 계획을 포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통합하여 계획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 (3)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본래의 개념을 유지하도록 하고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의 건강성 증진과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도록 기여하는데 그 의의를 지님	1.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의 범위 가. 기본계획기간 (1)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2)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계획년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기본계획 수립대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보호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2. 〈현행과 같음〉

협 의 안	수 정 안
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항목 (가)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나)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다)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마)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사)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각 항목은 내용의 연관성과 계획수립의 융통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및 성격 가. 기본계획수립의 법적근거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성격 (1) 기본계획은 6개도 32개 시·군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환경, 산림, 토지 등 자연 및 인문사회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상위계획임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하여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기본이 되므로(법 제3조),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함 (3)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호에 관련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관련 계획내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함	3. 〈현행과 같음〉

협 의 안	수 정 안
Ⅱ. 기본계획 수립원칙 1.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토대로 한다. 가. 백두대간의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그 주변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백두대간의 분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역권을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2. 연계성 및 종합성 :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제고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한 기존의 보호계획은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계획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두대간의 개념을 유지하고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을 보전, 이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다.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제시하며 계획내용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3. 지역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기본적 생활을 배려한다 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이용 및 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되, 백두대간의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활동(예를 들면 경작활동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 행위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백두대간 이용,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Ⅱ. 〈현행과 같음〉

협 의 안	수 정 안
Ⅲ. 기본계획 수립기준 1.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가. 백두대간의 현황 (1)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여건 및 제도적 여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정보를 구축한다. (가) 자연환경 : 표고, 경사, 향, 토지피복, 식생, 동식물 서식처 및 생태계 요소에 대한 조사, 산림유형, 하천 등 수자원, 식생활력 등 (나) 인문사회여건 : 인구, 토지이용, 토지소유현황, 문화자원, 산촌을 포함한 지역주민실태, 교통, 관광, 산림경영, 산림기능, 주요 등산로별 이용현황 등 (다) 제도적 여건 : 기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 산지전용제한지역,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조수보호지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 (2) 지자체별 개발현황과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자연훼손, 오염 및 경관훼손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에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자체별 백두대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 지정된 각종 보호지역별 현황(보호지역별 현황, 각 보호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방향, 각종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을 정리하여 전체 백두대간의 현황과 비교 · 검토하도록 한다. (4) 현황파악은 가능한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여 백두대간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부터는 현황파악 부문에서 기 계획내용 실행 실적도 함께 포함하도록 한다. (5) 현황분석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백두대간의 생태, 산림, 토지, 문화 등에 대한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한 자료를 작성한다.	**Ⅲ. 기본계획 수립기준** 1. 〈현행과 같음〉

협 의 안	수 정 안
나. 관련 계획의 검토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건변화, 계획내용 등을 분석·검토하여 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2) 기본계획수립의 목표 및 전략 그리고 부문별 계획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의 조정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여건변화 전망 (1) 각종 계획 및 사업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연환경, 인문사회여건, 경제적 요인(예; 소득, 여가활동 등), 백두대간의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등에 대하여 국내의 여건변화 추이와 전망을 분석한다. (2)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여건 그리고 제도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현재와 장래의 모습을 종합하여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상의 제약조건과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생태계, 산림 및 공간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한다.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가. 목표설정 (1) 기본계획의 목표는 분석된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추진전략 (1) 추진전략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연환경, 이용, 관리, 사회여건 등 요소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되, 백두대간 보전, 이용 및 관리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부문별 추진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부문별 추진방안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2. 〈현행과 같음〉

협 의 안	수 정 안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전략 1) 백두대간보호지역 전체에 대한 보호전략을 제시하고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정리하고, 이를 전제로 이용 및 관리전략과도 연관되도록 하며,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유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전략 1)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이용실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호지역 보호전략에서 정리한 보호의 기본방향 내용을 전제로 이용 및 개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각종 개발사업추진 이후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 대상항목 등을 제시한다. (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1) 백두대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경제성 있는 산림 확보차원에서 산림관리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산림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두대간보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 관광을 비롯한 문화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공간과 시설 그리고 탐방객 규모, 특성을 파악하고, 백두대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휴양경험(recreational opportunities)을 조사하여 적절한 휴양활동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탐방객 관리를 위한 개략적인 프로그램를 제시하여 시행계획수립시 반영한다. 4) 기본계획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 및 지역주민생활 제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협 의 안	수 정 안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기본계획기간 중 실시할 조사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이때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계획을 파악하여 공동조사 또는 부분조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 및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조사내용 및 현황분석 조사내용은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여건 등으로 조사내용과 결과를 분석 · 검토 정리하여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백두대간지역의 자연환경 및 야생 동 · 식물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 · 중 ·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3. 〈현행과 같음〉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지정과정,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리하여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보호지역 변경 · 해제 사유제시 및 의견수렴 (1) 사회적 ·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정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과 환경부가 협의하여 변경할 경우와 지역주민생활의 편익, 국가공공사업에 의한 개발 등 불가피하게 보호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 (2) 보호지역 구역변경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등급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해제는 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 의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다. 지정, 변경 및 해제시 검토 필요사항 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지역주민,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지정 ·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토지이용 현황 등 해당 지역의 각종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한다.	4. 〈현행과 같음〉

협 의 안	수 정 안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 복구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백두대간중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복원 · 복구에 관한 모델 개발 및 방향을 제시한다. 나. 복원 · 복구 대책 (1) 환경부(2003-2004)에서 조사한 내역(훼손실태조사) 과 산림청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기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원 · 복구 기준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2) 핵심구역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 및 그 주변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핵심구역에서 훼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 (1) 복원 · 복구의 원칙,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복원 · 복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 · 단기별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현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리된 자료를 분석 · 검토하여 훼손유형별로 복원 · 복구사업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6. 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보호지역안의 모든 사유지는 장기적으로 국유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유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매수 대상지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확보, 토지이용현황 등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2) 토지매수에 따른 토지가격 산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6. 〈현행과 같음〉
7.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남 · 북 협력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백두대간 보호 ·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남 ·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백두대간에 대한 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해 남 · 북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2) 남 · 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사항을 제시한다.	7. 〈현행과 같음〉

협 의 안	수 정 안
〈신 설〉	8.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1) 보호지역 범위설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참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2)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기능의 강화 등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계획내용 및 사업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장·단기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2) 지원계획 작성 및 연차별 지원 우선순위 작성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지역사회 및 주민지원 방안 (1) 관계개선 보호지역 범위설정 및 관리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참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2)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기능의 강화 등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지원계획 (가) 주민지원에 대한 각종 계획내용 및 사업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장·단기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나) 지원계획 작성 및 연차별 지원 우선순위 작성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 삭 제 〉

협 의 안	수 정 안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홍보 (1) 기본방향 (가)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산림생태계 복원 등 보호활동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2) 사업추진 (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NGO,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백두대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작성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대한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석 · 평가하고, 이를 발전 · 확산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보호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중요한 자연재산으로 미래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과 대책을 강구한다. (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백두대간 보호의 필요성 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가.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홍보 (1) ~ (2) 〈 현행과 같음 〉
다. 연차별 투자계획 (1) 훼손지 복원 · 복구대책 등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수립 내용을 토대로 연차별 · 사업별 · 주체별(중앙정부 및 지자체)로 구분하여 장 · 단기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2) 투자계획 작성 및 연차별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며,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장 · 단기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다(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 등 제3섹타 방식도 고려).	나. 연차별 투자계획 (1) ~ (3) 〈 현행과 같음 〉

협 의 안	수 정 안
Ⅳ.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원칙 및 기준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원칙과 기준 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은 상호 연관성과 내용의 논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자료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활용하되, 자료출처 및 근거를 제시한다. 다.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기본계획 관련 도면의 작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은 가급적 지자체별 도면으로 제시한다. (1) 조사결과도면 : 현황 및 여건분석 그리고 보전, 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도면에 기재한다. (2) 종합분석도면 : 현황분석, 문제점, 조사결과 보호가치가 있거나 훼손에 민감한 부분 또는 훼손된 지역 그리고 대상지 특성 등을 다양한 범례를 사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중요정보 및 특성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기본계획 구상도면 :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내용을 총 정리하여 도면화한 것으로 보전 · 이용 ·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기본계획 내용의 조정 기본계획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Ⅳ. 기타사항** 〈 현행과 같음 〉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 환경부 최종 안

2005. 2.

(제정 : 2004. 10. 14)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1] 수립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가.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림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요소,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계획수립의 의의

(1)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보전, 이용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아 이해 당사자간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함

(2)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시행중인 각종 관련 계획을 포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통합하여 계획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

(3)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본래의 개념을 유지하도록 하고 생태계, 자연경관 및 산림의 건강성 증진과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도록 기여하는데 그 의의를 지님

1)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2. 기본계획의 범위

가. 기본계획기간

(1)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2)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계획년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기본계획 수립대상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보호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음

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항목

(가)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나)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다)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마)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에 관한 사항

(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사)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아)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각 항목은 내용의 연관성과 계획수립의 융통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거나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및 성격

가. 기본계획수립의 법적근거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성격

(1) 기본계획은 6개도 32개 시 · 군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환경, 산림, 토지 등 자연 및 인문사회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상위계획임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하여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기본이 되므로(법 제3조),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함

(3)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보호에 관련한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관련 계획내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함

Ⅱ. 기본계획 수립원칙

1.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토대로 한다.

가. 백두대간의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그 주변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백두대간의 분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역권을 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2. 연계성 및 종합성 :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제고한다.

가. 다른 법령에 의한 기존의 보호계획은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계획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두대간의 개념을 유지하고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을 보전, 이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다.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제시하며 계획내용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3. 지역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기본적 생활을 배려한다

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이용 및 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되, 백두대간의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활동(예를 들면 경작활동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 행위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백두대간 이용, 보전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Ⅲ. 기본계획 수립기준

1.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가. 백두대간의 현황

(1)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여건 및 제도적 여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정보를 구축한다.

(가) 자연환경 : 표고, 경사, 향, 토지피복, 식생, 동식물 서식처 및 생태계 요소에 대한 조사, 산림유형, 하천 등 수자원, 식생활력 등

(나) 인문사회여건 : 인구, 토지이용, 토지소유현황, 문화자원, 산촌을 포함한 지역주민실태, 교통, 관광, 산림경영, 산림기능, 주요 등산로별 이용현황 등

(다) 제도적 여건 : 기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 산지전용제한지역,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조수보호지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

(2) 지자체별 개발현황과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자연훼손, 오염 및 경관훼손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지역에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지자체별 백두대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기 지정된 각종 보호지역별 현황(보호지역별 현황, 각 보호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방향, 각종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을 정리하여 전체 백두대간의 현황과 비교 · 검토하도록 한다.

(4) 현황파악은 가능한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여 백두대간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부터는 현황파악 부문에서 기 계획내용 실행 실적도 함께 포함하도록 한다.

(5) 현황분석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백두대간의 생태, 산림, 토지, 문화 등에 대한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한 자료를 작성한다.

나. 관련 계획의 검토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건변화, 계획내용 등을 분석 · 검토하여 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2) 기본계획수립의 목표 및 전략 그리고 부문별 계획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의 조정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여건변화 전망

(1) 각종 계획 및 사업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연환경, 인문사회여건, 경제적 요인(예; 소득, 여가활동 등), 백두대간의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변화 등에 대하여 국내의 여건변화 추이와 전망을 분석한다.

(2)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여건 그리고 제도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현재와 장래의 모습을 종합하여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이용 및 관리상의 제약조건과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생태계, 산림 및 공간구조상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한다.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가. 목표설정

(1) 기본계획의 목표는 분석된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추진전략

(1) 추진전략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연환경, 이용, 관리, 사회여건 등 요소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되, 백두대간 보전, 이용 및 관리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부문별 추진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부문별 추진방안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전략

1) 백두대간보호지역 전체에 대한 보호전략을 제시하고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 · 정리하고, 이를 전제로 이용 및 관리전략과도 연관되도록 하며, 특히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유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전략

1)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이용실태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호지역 보호전략에서 정리한 보호의 기본방향 내용을 전제로 이용 및 개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각종 개발사업추진 이후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 대상항목 등을 제시한다.

(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1) 백두대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경제성 있는 산림 확보차원에서 산림관리의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산림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여, 백두대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두대간보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 관광을 비롯한 문화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공간과 시설 그리고 탐방객 규모, 특성을 파악하고, 백두대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휴양경험(recreational opportunities)을 조사하여 적절한 휴양활동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탐방객 관리를 위한 개략적인 프로그램를 제시하여 시행계획수립시 반영한다.

4) 기본계획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 및 지역주민생활 제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기본계획기간 중 실시할 조사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이때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계획을 파악하여 공동조사 또는 부분조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 및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조사내용 및 현황분석

조사내용은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여건 등으로 조사내용과 결과를 분석 · 검토 정리하여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백두대간지역의 자연환경 및 야생 동 · 식물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 · 중 ·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백두대간보호지역[2]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지정과정,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리하여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보호지역 변경 · 해제 사유제시 및 의견수렴

(1) 사회적 ·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정 원칙과 기준을 산림청과 환경부가 협의하여 변경할 경우와 지역주민생활의 편익, 국가공공사업에 의한 개발 등 불가피하게 보호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

---

2) 이하 「보호지역」 이라 한다.

(2) 보호지역 구역변경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의 등급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해제는 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 의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다. 지정, 변경 및 해제시 검토 필요사항

보호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지역주민,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지정 · 변경 및 해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토지이용 현황 등 해당 지역의 각종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한다.

5.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 · 복구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백두대간중 단절되거나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복원 · 복구에 관한 모델 개발 및 방향을 제시한다.

나. 복원 · 복구 대책

(1) 환경부(2003-2004)에서 조사한 내역(훼손실태조사) 과 산림청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기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원 · 복구 기준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2) 핵심구역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 및 그 주변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핵심구역에서 훼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

(1) 복원 · 복구의 원칙,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복원 · 복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 · 단기별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현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리된 자료를 분석 · 검토하여 훼손유형별로 복원 · 복구사업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보호지역안의 모든 사유지는 장기적으로 국유화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유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매수 대상지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확보, 토지이용현황 등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2) 토지매수에 따른 토지가격 산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7.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남 · 북 협력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백두대간 보호 ·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남 ·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백두대간에 대한 조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해 남 · 북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2) 남 · 북한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사항을 제시한다.

8.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1) 보호지역 범위설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참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2)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기능의 강화 등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나. 사업추진

(1)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계획의 내용과 각 사업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장 · 단기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2) 지원계획 작성 및 연차별 지원 우선순위 작성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홍보

(1) 기본방향

(가)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산림생태계 복원 등 보호활동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2) 사업추진

(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NGO,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백두대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작성한다.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대한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석 · 평가하고, 이를 발전 · 확산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보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중요한 자연재산으로 미래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과 대책을 강구한다.

(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백두대간 보호의 필요성 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나. 연차별 투자계획

(1) 훼손지 복원 · 복구대책 등 부문별 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수립 내용을 토대로 연차별 · 사업별 · 주체별(중앙정부 및 지자체)로 구분하여 장 · 단기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2) 투자계획 작성 및 연차별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며,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장 · 단기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다(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자본 유치계획 등 제3섹타 방식도 고려).

Ⅳ.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원칙 및 기준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원칙과 기준 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은 상호 연관성과 내용의 논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자료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활용하되, 자료출처 및 근거를 제시한다.

다.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기본계획 관련 도면의 작성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은 가급적 지자체별 도면으로 제시한다.

(1) 조사결과도면 : 현황 및 여건분석 그리고 보전, 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도면에 기재한다.

(2) 종합분석도면 : 현황분석, 문제점, 조사결과 보호가치가 있거나 훼손에 민감한 부분 또는 훼손된 지역 그리고 대상지 특성 등을 다양한 범례를 사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중요정보 및 특성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기본계획 구상도면 :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내용을 총 정리하여 도면화한 것으로 보전 · 이용 ·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기본계획 내용의 조정

기본계획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붙임 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 변경 대비표

현 행	변 경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개요	**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가. ~ 나. (생략)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 가. ~ 나.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의 범위 가. ~ 나. (생략) 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항목 (가) ~ (사) (생략) (신설) (아)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생략)	2. 기본계획의 범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항목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현행과 같음)
3. 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및 성격 가. ~ 나. (생략)	3. 기본계획의 법적근거 및 성격 가. ~ 나. (현행과 같음)
Ⅱ. 기본계획 수립원칙 1. ~ 3. (생략)	**Ⅱ. 기본계획 수립원칙** 1. ~ 3. (생략)
Ⅲ. 기본계획 수립기준 1. ~ 7. (생략) (내용이동)	**Ⅲ. 기본계획 수립기준** 1. ~ 7. (현행과 같음) 8.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1) 보호지역 범위설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참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2)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기능의 강화 등 행정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 행	변 경
	나. 사업추진 (1) 백두대간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계획의 내용과 각 사업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장·단기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2) 지원계획 작성 및 연차별 지원 우선순위 작성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8.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지역사회 및 주민지원 방안 (1) 관계개선 보호지역 범위설정 및 관리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참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 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2)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기능의 강화 등 행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지원계획 (가) 주민지원에 대한 각종 계획내용 및 사업에 대한 사업별, 연도별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장·단기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계획을 제시한다. (나) 지원계획 작성 및 연차별 지원 우선순위 작성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내용이동)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홍보 (1) ~ (2) (생략)	가.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홍보 (1) ~ (2) (현행과 같음)
다. 연차별 투자계획 (1)~ (3) (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 (1) ~ (3) (현행과 같음)
Ⅳ. 기타사항 1. ~ 3. (생략)	**Ⅳ. 기타사항** 1. ~ 3. (현행과 같음)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현황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1. 지정 요지

-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로서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핵심 축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 중 생태계 ·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2. 추진 경과

일 자	주 요 내 용
'96. 3. 26	정부 최초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 발간
'96 ~ '04	백두대간 연구 수행(연구 논문 10여편)
'03. 12. 3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04. 5. 12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 확정
'04. 6. 25	백두대간보호지역 기초도면 배부
'05. 5월까지	지자체 · 지역주민 · NGO 등 의견 수렴(242회)
'05. 5. 7	백두대간보호지역(안) 마련
'05. 5. 3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05. 6. 15	13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6개 도지사 협의 완료
'05. 7. 1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05. 7. 19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완료

3.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현황

- 위치 및 범위
  - 위 치 :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고성군 향로봉 에서부터 시작하여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계(山系)의 연속성을 가진 백두대간 마루금 및 주변 지역(총길이 약 1,400㎞, 남한지역 684㎞)
  - 범 위 : 6개 도, 32개 시 · 군(12개 시, 20개 군), 108개 읍 · 면 · 동
  - 면 적 : 263,427ha(7,306필지)
    - 핵심구역 169,950ha(65%), 완충구역 93,477ha(35%)

구 분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면적					
	계	%	핵심	%	완충	%
계	263,427	100	169,950	65	93,477	35
강 원	133,908	100	94,143	70	39,765	30
충 북	35,616	100	12,001	34	23,615	66
전 북	17,887	100	14,329	80	3,558	20
전 남	5,223	100	3,420	65	1,803	35
경 북	47,841	100	31,961	67	15,880	33
경 남	22,952	100	14,096	61	8,856	39

- 보호지역 지정 근거법령
  - 법령명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①생략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 행정구역 현황

도	시 · 군	읍 · 면 · 동
6개 도	32개 시 · 군(12시 · 20군)	108개
강원도 (12)	강 릉 시	사천면, 성산면, 연곡면, 옥계면, 왕산면
	동 해 시	신흥동, 이기동, 삼화동, 달방동
	태 백 시	상사미동, 소도동, 적각동, 창죽동, 하사미동, 혈동, 화전동, 황지동
	속 초 시	설악동
	삼 척 시	도계읍, 미로면, 신기면, 하장면
	홍 천 군	내면
	영 월 군	상동읍, 하동면
	평 창 군	도암면, 진부면
	정 선 군	고한읍, 동면, 임계면
	인 제 군	기린면, 북면, 서화면, 인제읍
	고 성 군	간성읍, 수동면, 토성면
충청북도 (6)	양 양 군	강현면, 서면, 현북면
	충 주 시	수안보면
	제 천 시	덕산면, 한수면
	보 은 군	내속리면
	영 동 군	매곡면, 상촌면, 추풍령면
	괴 산 군	연풍면, 청천면, 철성면
	단 양 군	가곡면, 단양읍, 대강면, 영춘면
전라북도 (3)	남 원 시	산내면, 산동면, 아영면, 운봉읍, 이백면, 주천면
	무 주 군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장 수 군	장계면, 번암면, 계북면
전라남도(1)	구 례 군	산동면, 토지면, 광의면, 마산면
경상북도 (6)	영 주 시	풍기읍, 순흥면, 부석면, 봉현면, 단산면
	김 천 시	구성면, 대덕면, 대항면, 봉산면, 부항면, 어모면
	상 주 시	공성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외남면, 화남면, 화동면, 화북면, 화서면
	문 경 시	문경읍, 가은읍, 농암면, 동로면, 마성면
	예 천 군	상리면
	봉 화 군	물야면, 석포면, 소천면, 춘양면
경상남도 (4)	하 동 군	화개면
	산 청 군	삼장면, 시천면
	거 창 군	고제면, 북상면
	함 양 군	마천면, 백전면, 서상면

● 시 · 군별 지정 면적

구 분	시 · 군	보호지역 면적(ha)			필지수(필)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계	32개	263,427	169,950	93,477	7,306
강 원	소 계	133,908	94,143	39,765	1,927
	강 릉	29,383	17,996	11,387	429
	동 해	4,155	2,087	2,068	44
	태 백	5,116	3,813	1,303	493
	속 초	4,099	4,099	–	7
	삼 척	9,331	5,133	4,198	64
	홍 천	8,909	3,811	5,098	43
	영 월	4,210	3,280	930	88
	평 창	11,332	6,091	5,241	535
	정 선	6,047	3,855	2,192	53
	인 제	27,631	23,874	3,757	26
	고 성	9,476	8,398	1,078	91
	양 양	14,219	11,706	2,513	54
충 북	소 계	35,616	12,001	23,615	706
	충 주	1,608	653	955	7
	제 천	7,471	1,324	6,147	10
	보 은	2,428	793	1,635	26
	영 동	3,539	912	2,627	306
	괴 산	7,195	2,795	4,400	55
	단 양	13,375	5,524	7,851	302
전 북	소 계	17,887	14,329	3,558	1,188
	남 원	7,309	5,854	1,455	782
	무 주	6,900	6,158	742	160
	장 수	3,678	2,317	1,361	246
전 남	소 계	5,223	3,420	1,803	21
	구 례	5,223	3,420	1,803	21
경 북	소 계	47,841	31,961	15,880	2,807
	김 천	4,968	2,568	2,400	339
	영 주	10,018	7,706	2,312	524
	상 주	8,362	4,117	4,245	969
	문 경	14,475	9,745	4,730	643
	예 천	1,417	1,021	396	82
	봉 화	8,601	6,804	1,797	250
경 남	소 계	22,952	14,096	8,856	657
	하 동	3,464	1,599	1,865	233
	산 청	8,546	5,842	2,704	17
	함 양	7,065	4,879	2,186	273
	거 창	3,877	1,776	2,101	134

● 소유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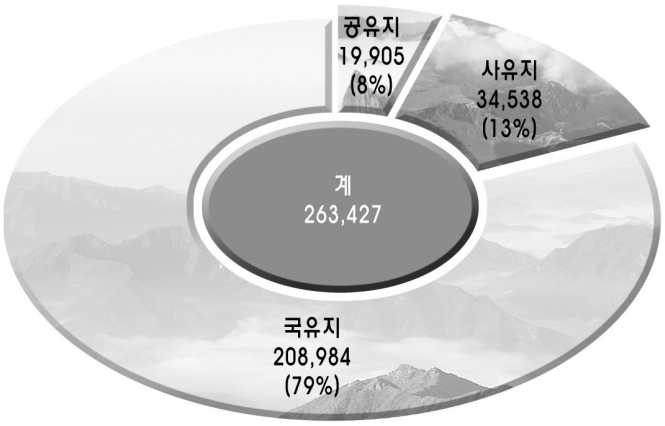

(단위 : ha)

구 분	소 유 별 현 황							
	계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면 적	263,427	100	208,984	79	19,905	8	34,538	13

● 산지구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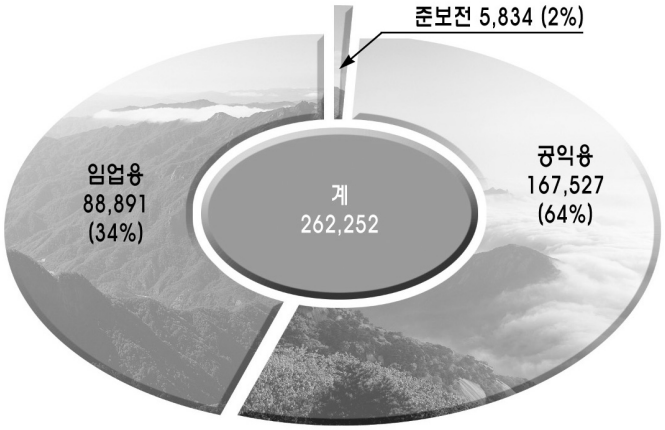

(단위 : ha)

구 분	소 유 별 현 황							
	계	%	공 익 용	%	임 업 용	%	준 보 전	%
면 적	262,252	100	167,527	64	88,891	34	5,834	2

● 지목별 현황

구 분	시 · 군	보호지역 면적(ha)			구성비 (%)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합 계	7,306	263,427	169,950	93,477	100
임 야	4,779	262,252	169,329	92,923	99.55
도 로	943	418	279	139	0.16
목장용지	86	355	120	235	0.13
전	934	208	131	77	0.08
구 거	234	86	51	35	0.03
하 천	69	47	19	28	0.02
잡 종 지	41	30	5	25	0.01
답	80	10	3	7	0.01
묘 지	15	8	3	5	0.01
대 지	97	4	3	1	0.00
종교용지	11	3	3		0.00
과 수 원	2	1		1	0.00
사 적 지	6	2	2		0.00
철도용지	6	3	2	1	0.00
학교용지	1				0.00
수도용지	1				0.00
유 지	1				0.00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기초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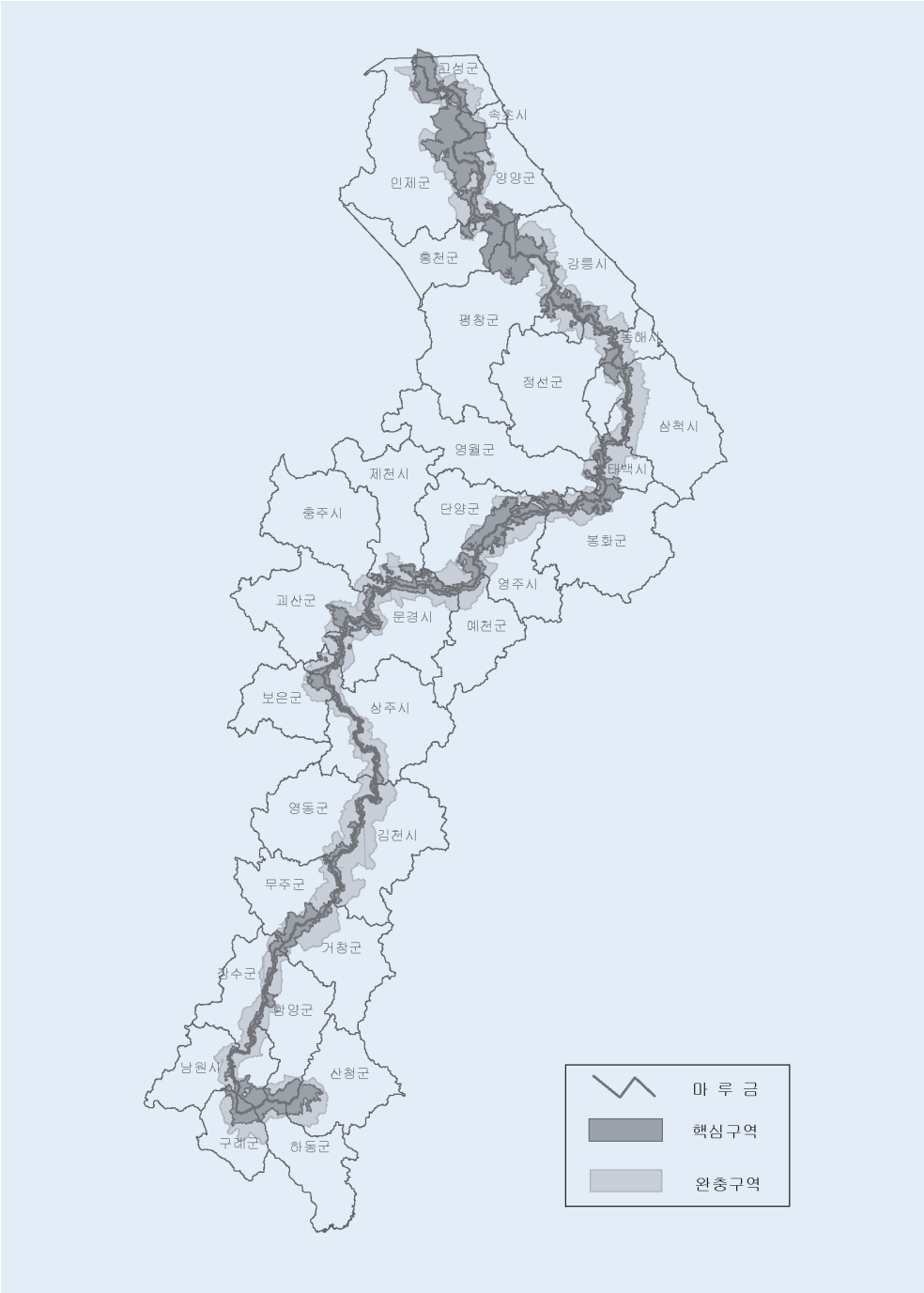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도면

전 체 구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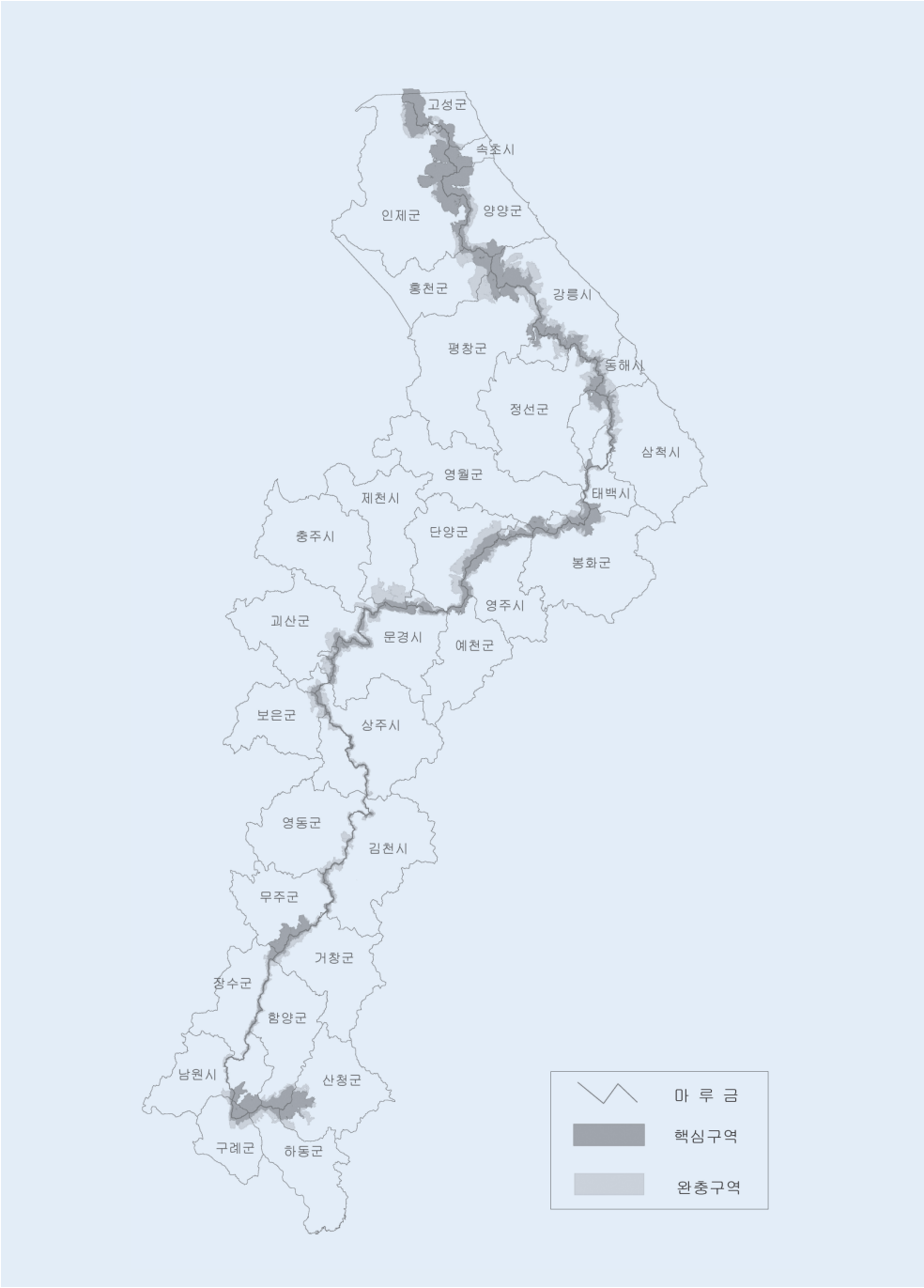

강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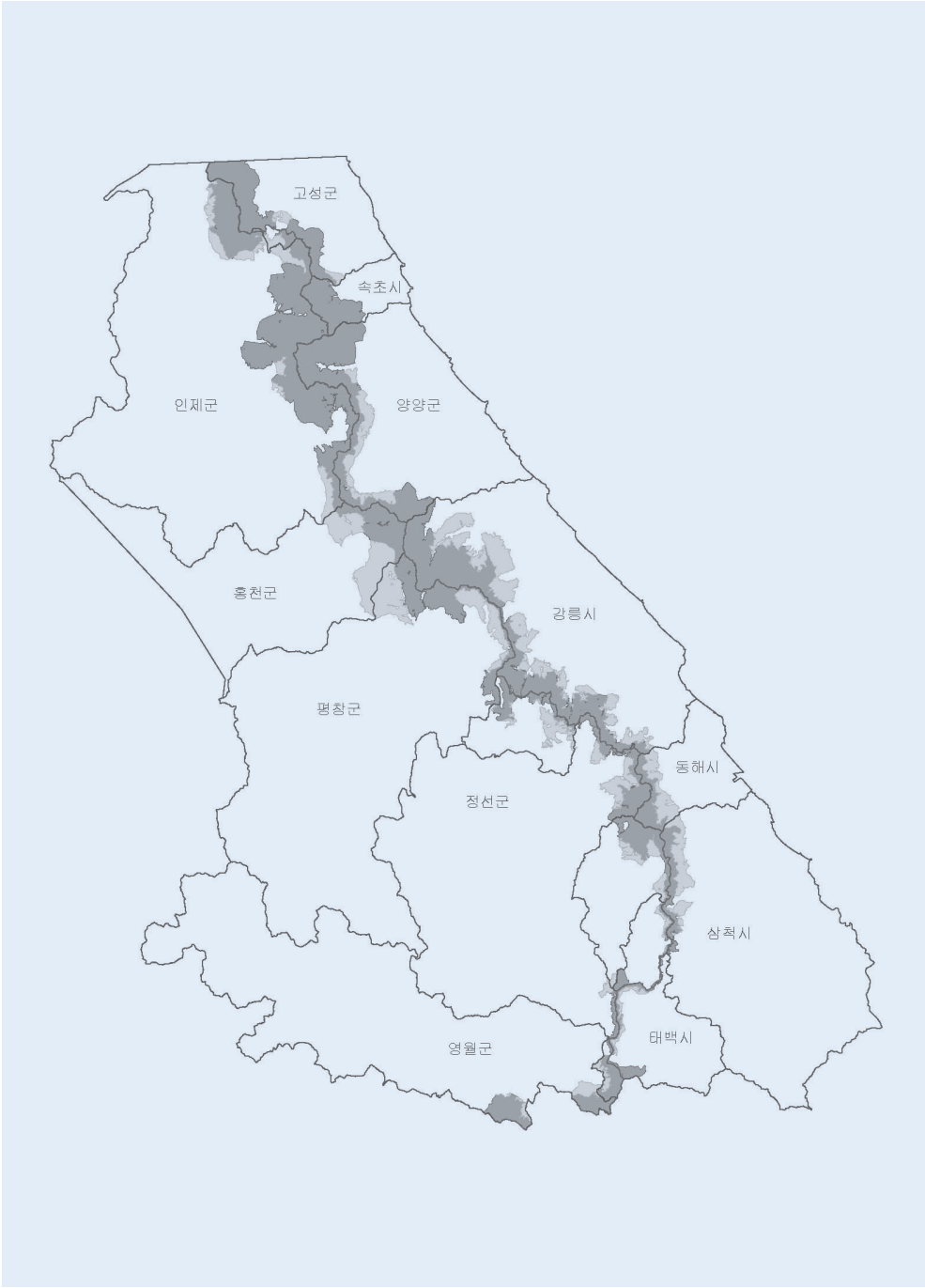

충북, 경북 지역

전남 · 북, 경남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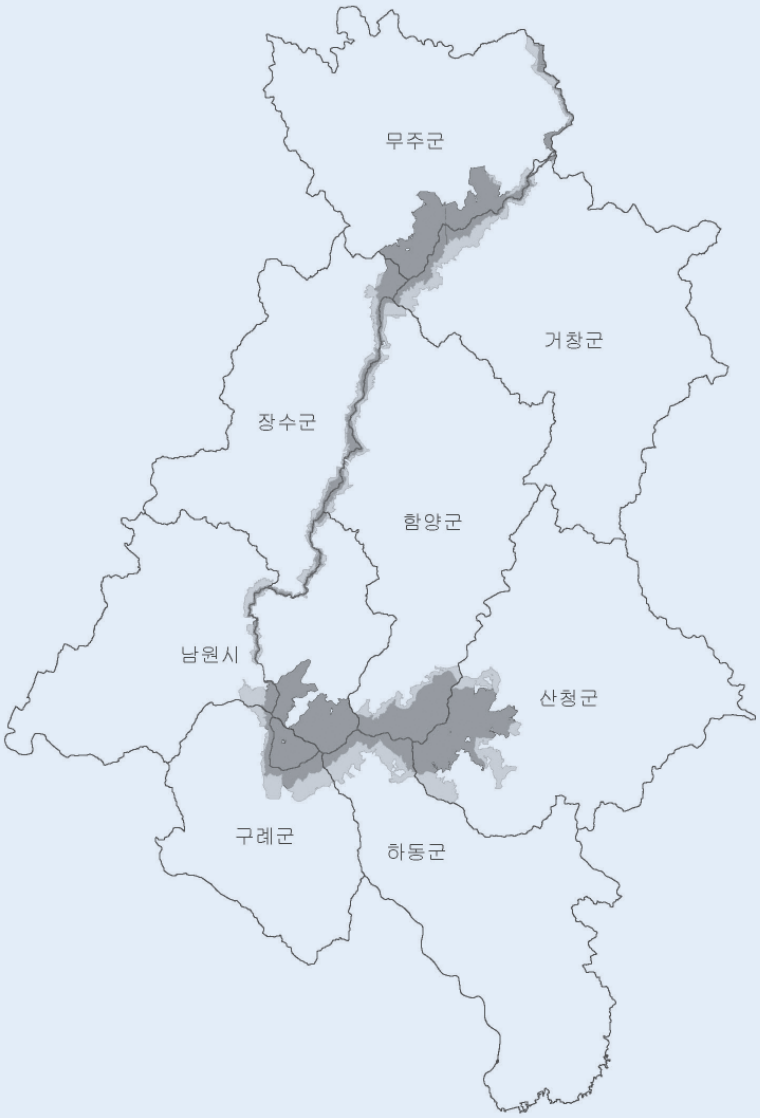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안) 비교

구분	시 군	기초(안)			지자체 조정(안)			보호지역 지정(안)		
		계	핵심	완충	계	핵심	완충	계	핵심	완충
계	계	535,918	242,477	293,441	249,965	171,311	78,654	263,427	169,950	93,477
강원	소 계	214,240	118,208	96,032	125,484	90,827	34,657	133,908	94,143	39,765
	강 릉	37,718	19,974	17,744	25,347	16,563	8,784	29,383	17,996	11,387
	동 해	5,971	2,079	3,892	4,123	2,053	2,070	4,155	2,087	2,068
	태 백	17,095	6,310	10,785	5,001	3,660	1,341	5,116	3,813	1,303
	속 초	5,140	4,173	967	4,185	4,102	83	4,099	4,099	
	삼 척	19,979	5,514	14,465	10,446	5,146	5,300	9,331	5,133	4,198
	홍 천	10,485	8,392	2,093	8,536	6,964	1,572	8,909	3,811	5,098
	영 월	7,549	4,102	3,447	4,850	3,541	1,309	4,210	3,280	930
	평 창	17,394	12,358	5,036	8,746	6,327	2,419	11,332	6,091	5,241
	정 선	11,544	5,047	6,497	6,016	3,705	2,311	6,047	3,855	2,192
	인 제	43,857	27,625	16,232	27,255	23,169	4,086	27,631	23,874	3,757
	고 성	16,581	8,816	7,765	6,764	3,888	2,876	9,476	8,398	1,078
	양 양	20,927	13,818	7,109	14,215	11,709	2,506	14,219	11,706	2,513
충북	소 계	74,394	30,896	43,498	40,739	19,894	20,845	35,616	12,001	23,615
	충 주	4,041	1,032	3,009	1,600	643	957	1,608	653	955
	제 천	9,411	3,674	5,737	7,774	3,410	4,364	7,471	1,324	6,147
	보 은	6,547	2,689	3,858	2,446	800	1,646	2,428	793	1,635
	영 동	15,176	3,977	11,199	3,470	795	2,675	3,539	912	2,627
	괴 산	14,898	6,563	8,335	7,348	2,260	5,088	7,195	2,795	4,400
	단 양	24,321	12,961	11,360	18,101	11,986	6,115	13,375	5,524	7,851
전북	소 계	47,403	19,996	27,407	15,629	13,632	1,997	17,887	14,329	3,558
	남 원	19,292	8,196	11,096	6,449	6,030	419	7,309	5,854	1,455
	무 주	15,395	7,466	7,929	6,685	5,930	755	6,900	6,158	742
	장 수	12,716	4,334	8,382	2,495	1,672	823	3,678	2,317	1,361
전남	소 계	14,866	6,313	8,553	3,544	3,544	–	5,223	3,420	1,803
	구 례	14,866	6,313	8,553	3,544	3,544	–	5,223	3,420	1,803
경북	소 계	134,811	45,214	89,597	44,187	30,252	13,935	47,841	31,961	15,880
	김 천	30,050	4,985	25,065	5,221	3,037	2,184	4,968	2,568	2,400
	영 주	22,209	10,277	11,932	8,974	8,031	943	10,018	7,706	2,312
	상 주	29,629	8,376	21,253	7,447	3,873	3,574	8,362	4,117	4,245
	문 경	31,171	11,967	19,204	13,096	7,616	5,480	14,475	9,745	4,730
	예 천	5,961	1,227	4,734	1,449	895	554	1,417	1,021	396
	봉 화	15,791	8,382	7,409	8,000	6,800	1,200	8,601	6,804	1,797
경남	소 계	50,204	21,850	28,354	20,382	13,162	7,220	22,952	14,096	8,856
	하 동	5,197	3,612	1,585	1,679	852	827	3,464	1,599	1,865
	산 청	14,060	5,758	8,302	8,596	5,849	2,747	8,546	5,842	2,704
	함양	16,751	8,032	8,719	6,592	4,774	1,818	7,065	4,879	2,186
	거창	14,196	4,448	9,748	3,515	1,687	1,828	3,877	1,776	2,101

백두대간보호위원회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안)

의안번호 : 제 2005 – 1 호

심의년월일 : 2005. 8. 30 제1차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제 안 자 : 산림청장 조연환

제출년월일 : 2005. 8. 30

1. 심의 · 의결주문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 · 의결 한다.

2. 제안사유

- 국토의 골격이며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산계(山系)의 연속성을 가진 백두대간 능선 및 주변지역(6개도 32개 시 · 군)
- 지정 면적 : 263,427ha(7,306필지)
  - 핵심구역 169,950ha(65%), 완충구역 93,477ha(35%)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
- 협　　의 : 13개 중앙행정기관 및 6개 도지사와 협의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05.7.14), 중앙산지관리위원회('05.7.19) 심의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보호국 백두대간보전과

연 락 처 (042) 481 - 4290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안)

2005. 8. 30(화)
산 림 청

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추진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03.12.31 제정)』에 따라 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전 · 관리대책 마련
  -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 684㎞의 국토 핵심 산줄기 보호
-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산림청장이 보호지역을 지정 · 고시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안)**
  - 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
    - 원칙 : 생태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단절없이 보호되어야함.
    - 기준 :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되, 핵심구역은 1차 수계, 완충구역은 3차 수계로 함
- **지정면적 : 263,427ha(핵심구역 169,950ha, 완충구역 93,477ha)**
  - 6개 도 32개 시 · 군(강원, 충북, 전남 · 북, 경남 · 북)
  - 소유별(ha) : 국 208,984(79%), 공 19,905(8%), 사 34,538(13%)
  - 지목별(ha) : 임야 262,252(99.6%), 도로 418(0.1%), 기타 757(0.3%)

구 분	보호지역 지정(안) 면적(ha)				
	계	핵심구역	%	완충구역	%
계	263,427	169,950	65	93,477	35
강 원 도	133,908	94,143	70	39,765	30
충청북도	35,616	12,001	34	23,615	66
전라북도	17,887	14,329	80	3,558	20
전라남도	5,223	3,420	65	1,803	35
경상북도	47,841	31,961	67	15,880	33
경상남도	22,952	14,096	61	8,856	39

※ 전 국토의 2.6%, 산림면적의 4%

- **그동안 추진 상황**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환경부 · 산림청 공동소관으로 제정 · 공포('03. 12. 31)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의 원칙과 기준」을 '04. 5월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 이에 따라 3차수계의 외곽경계선을 연결한 기초도면을 작성하여 지자체와 조정협의 착수('04. 6. 25)

    ※ 실제 보호지역 지정시 지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취락지역, 자연마을 등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은 지역주민 ·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 제외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안) 마련 과정에서 초기에는 사유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 정부가 지자체 · 지역주민 · NGO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 간담회 등을 242회 개최하여 갈등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 부처간 이견조정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책조정회의 개최

  -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백두대간법을 개정 보완('05. 5. 31)
    - 주민 지원사업 확대, 제한행위 완화, 토지매수청구제도 도입
  -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은 13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6개 도지사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05. 6. 15)
    - 기초도면 54만ha → 지자체 25만ha → 확정(안) 26만ha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05. 7월) 완료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은 주민 · 지자체 · NGO · 정부간의 상호 이해를 통한 갈등해소와 신뢰 회복 → 국토 보전 계기 마련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효과**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훼손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보호의 실효성 확보
    - 핵심구역 : 국방 · 군사시설, 도로 · 하천 · 철도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 공공용 시설 등 8개 사항만 허용
    -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허용행위와 교육 · 연구, 산림보호 · 경영 등 6개 사항만 허용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훼손된 지역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 · 복구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상징성 회복
  - 산림식생의 다양성, 희귀식물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역할 등 생태적 기능 회복 · 유지
  - 백두대간이 가진 전통문화와 역사성 회복과 함께 남 · 북한과 대륙을 잇는 생태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의 의미 〉

- 우리나라 전통 산줄기 체계를 회복 · 보전하는 계기 마련
- 생물종 다양성 보존 등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기능 확보
- 부처간, NGO, 지자체, 지역주민간 대화와 참여를 통한 갈등 해소 사례

2. 앞으로 추진계획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 : 별도 보고
- 보호지역 편입 사유토지 매수
  - 보호지역에 편입되는 사유지(34,538ha)는 5년내 국가에서 전량 매수할 계획
    - 사유토지 매수 예산 ('05) 662억원 → ('06) 758억원

- 앞으로 보호지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은 사유지 매수 등을 통하여 보호지역 추가 지정 추진

● 지역주민 지원사업 확대

-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소득사업 및 생활기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촌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소득사업 : 산채, 장뇌삼, 야생화, 표고 · 송이 생산 육성 등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 지원
  - 기반사업 : 수도시설 등 복지증진과 관련된 6개 사업 지원
  - 지원 예산 ('05) 72억원 → ('06) 115억원(국비 70%)

참 고 자 료

1. 백두대간의 개념과 가치
2. 보호지역 지정 근거 법령
3. 보호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4. 보호지역의 지정 기준과 원칙
5. 보호지역 지정 절차
6. 보호지역 지정 현황

참고자료

1. 백두대간의 개념과 가치

- **백두대간의 개념**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면서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큰 산줄기

  ※ 산줄기 체계는 1대간(大幹), 1정간(正幹), 13정맥(正脈)으로 구성
  - 산을 단절 · 고립된 봉우리로 보지 않고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聖山), 국토의 뿌리로 하여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 맥세(脈勢)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산지 인식 체계에 바탕(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 국토에 관한 포괄적 · 균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산들이 백두산으로부터 가지와 줄기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
    - 백두대간 · 정간 · 정맥 등의 용어는 18세기 이익의「성호사설」, 이중환의「택리지」등에 나타나기 시작하여「산경표」에서 정립

산맥체계 (교과서)

백두대간체계 (산경표)

- **백두대간의 가치**
  - 인문지리적 측면
    - 백두대간 · 정간 · 정맥 모두 산계(山系)의 연속으로 인식하여 우리 국토에 대해 지리적으로 일체감을 갖게 함
    - 유역을 가르는 분수계(分水界, watershed)로서 국토 공간구조의 골격이자 생활영역과 문화양식의 기반이 되는 민족의 인문적 바탕
  - 자연생태적 측면
    -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생태축으로 대륙의 야생 동、식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동통로이자 서식지
    - 주요 산들이 자리 잡은 한반도의 지붕이며, 한강、금강、낙동강 등 5대 강의 발원지로서 생명력이 시작되고 이어지는 중심지
  - 산업적 측면
    - 산림자원의 비축기지로서 천연림이 많이 분포하는 대표적인 산림지대
    - 입지와 자원의 특성에 기인한 농림업, 광업 및 휴양관광 등의 산업적 이용 기회 제공
  - 문화적 측면
    - 백두대간은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귀중한 문화유산의 터전
    - 국립공원 등이 입지하여 여가와 휴양、생태관광 및 교육장소로서 역할

백두대간은 지형, 기후, 토양, 수문 등 자연환경과 온갖 동 · 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 그리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복합적인 3차원의 공간으로 그 가치가 매우 다양함.

2. 보호지역 지정 근거 법령

- **법률명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6조 및 제11조**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①생략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구 분	주 요 내 용
핵 심 구 역	– 국방 · 군사시설, 도로 · 철도 · 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 공공용시설 –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시설 – 산림보호 ·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 기념탑 등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 이용 · 보급시설 – 광산의 시설기준 ·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일정조건하 에서의 광산개발 –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등
완 충 구 역	– 핵심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 임도 ·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교육 ·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석회석의 노천 채광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 · 개축 – 전력 · 석유 또는 가스공급 시설 등 –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홍보 · 교육시설 – 산지이외의 토지에서 개인 · 가족 · 납골묘의 설치

4. 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가. 지정 원칙

①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므로 단절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능선 및 이로부터 직접 연결된 산세와 그 유역(watershed)을 포함한다.
- 백두대간의 지형 및 경관이 잘 보호되어야 한다.

②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연속성 및 연결성이 확보되고, 생태축으로서 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산림식생의 다양성, 희귀식물의 서식처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 보호 ·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수계, 산지체계, 식생유형 등의 지표인자를 토대로 그 경계를 정한다.

- 수계와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등),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등),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 등)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설정한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전(보호)지역 중 취락지구 등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또는 도시화된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지정 기준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범위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3차 계류유역을 포함하는 지역과 3차 계류유역의 외곽지역중 물리적 여건, 생물적 여건, 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보호구역의 경계는 소능선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계류 또는 등고선을 따라 연결한다.

※ 1차, 3차 계류유역은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된 하천의 유역을 말한다.

- 핵심구역
  - 1차 계류유역과 지표인자 중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능선으로부터의 거리),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영급), 관리적 여건(법정보호구역)이 우수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한다.

- 완충구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중에서 핵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5. 보호지역 지정 절차

● 보호지역 지정 흐름도

●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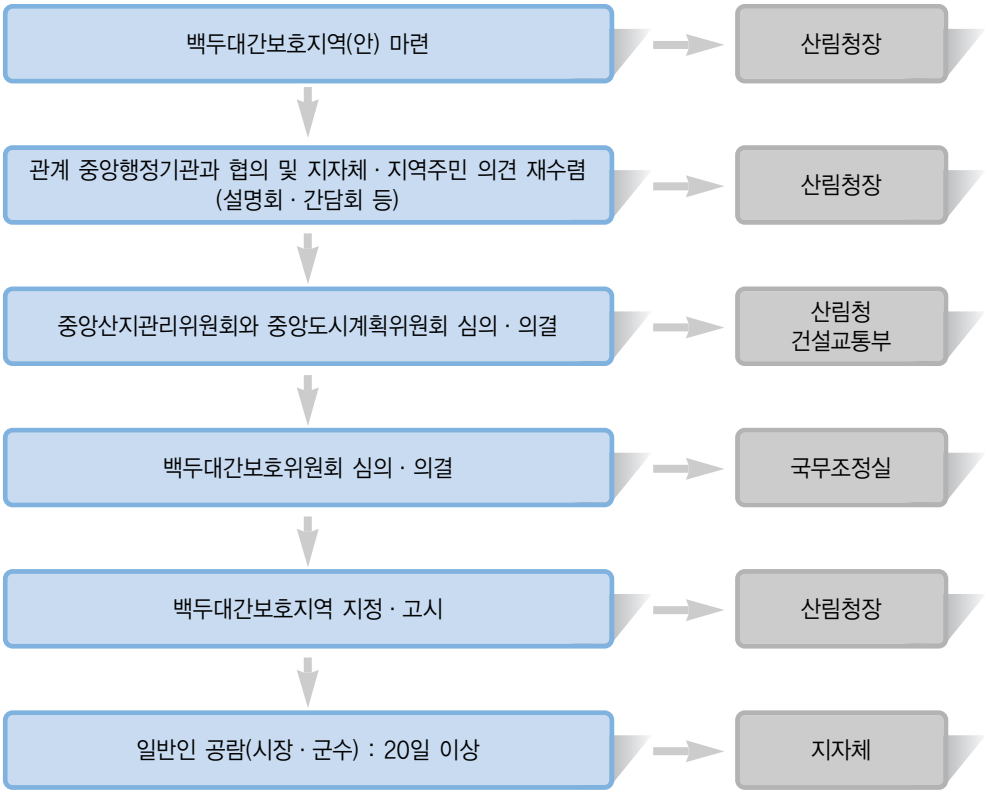

6. 백두대간보호지역 현황

● 보호지역 면적

구 분	보호지역 지정(안) 면적(ha)				
	계	핵심구역	%	완충구역	%
계	263,427	169,950	65	93,477	35
강 원 도	133,908	94,143	70	39,765	30
충청북도	35,616	12,001	34	23,615	66
전라북도	17,887	14,329	80	3,558	20
전라남도	5,223	3,420	65	1,803	35
경상북도	47,841	31,961	67	15,880	33
경상남도	22,952	14,096	61	8,856	39

※ 전 국토의 2.6%, 산림면적의 4.0%를 차지

● 토지소유 구분

구 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 고
면 적(ha)	263,427	208,984	19,905	34,538	개인 사유지는 11,744ha로 4%
비 율(%)	100	79	8	13	

※ 사유지는 국가에서 5년내 전량 매수 계획

● 지목별 구분

구 분	계(ha)	임 야	도 로	목장용지	전 · 답	기 타
계(%)	263,427(100)	262,252(99.56)	418(0.16)	355(0.13)	21(0.08)	184(0.07)
핵심구역	169,950	169,329	279	120	134	88
완충구역	93,477	92,923	139	235	84	96

※ 보호지역 지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자연마을, 도시화된 지역 등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방향

의안번호 제 2005 – 2 호

보고년월일 : 2005. 8. 30 제1차 백두대간보호위원회

보 고 자 : 산림청장 조연환

제출년월일 : 2005. 8. 30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

1. 기본계획의 개요

- **근 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원칙과 기준' 을 정함
  - 산림청장이 10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
    -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성 격**
  - 백두대간의 장기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10년간의 장기계획
  -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등 각종 계획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
  - 생태계, 산림, 토지, 훼손지 복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

- **주요내용**
  -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사업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
  -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 · 복구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한 지원사업
  -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

2. 기본계획 수립 방향

- **백두대간의 환경, 산림, 토지 등 자연과 인문사회 부문에 대한 장기 관리방향과 전략을 제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백두대간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기본지침

- **지속가능성, 연계성과 종합성, 지역성을 원칙으로 수립**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토대로 생태계의 건강성과 산림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며,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제고
  -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다양한 가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본래의 개념 및 생태축 기능 확보**
  - 자연생태, 인문지리, 산업, 역사 · 문화, 상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전통 산줄기 체계를 회복 · 보전하는 계기 마련
  -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제한, 사유토지 매수 및 보호지역의 확대 등 백두대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우리 민족의 공동자산인 백두대간을 남북한이 공동관리 하여 국토 및 생태계의 동질성 회복에 이바지**
  - 백두대간 실태조사, 평화생태공원(설악산 ~ DMZ ~ 금강산) 조성 등 공동사업 추진

- **'국가계획' 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제시**
  - 국민(지역주민), NGO,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

•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안)**

구 분	주 요 내 용
1.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1-1. 자연환경 및 자원의 조사 및 보호 1-2. 생태계 및 훼손지의 복원 · 복구
2.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2-1. 녹색생태체험 활성화 2-2. 전통 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
2.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2-1. 녹색생태체험 활성화 2-2. 전통 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 2-3.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 활성화
3. 백두대간보호기반 구축	3-1. 보호지역의 합리적 지정 · 관리 3-2. 개발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 3-3. 사유토지 매수 및 합리적인 이용
3. 백두대간보호기반 구축	3-1. 보호지역의 합리적 지정 · 관리 3-2. 개발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 3-3. 사유토지 매수 및 합리적인 이용 3-4.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4. 국민참여 및 교육 · 홍보 강화	4-1. 국민참여 활성화 4-2. 교육 · 홍보 강화
5. 남북협력 강화	5-1. 백두대간의 남북한 공동조사 5-2. 평화생태공원 등 공동사업 추진

3. 향후 추진계획

•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보호위원회 심의 · 확정(11월)**

– 2006년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과 함께 심의

〈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 〉

•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
• 지자체와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백두대간보호 체계 구축
• 자연환경 및 국토보전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

〈 붙 임 〉

기본계획(안)의 체계

제1장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 수립의 배경과 의의

제2절 계획 수립의 원칙

제2장 백두대간의 현황과 여건전망

제1절 백두대간의 개념과 가치

제2절 백두대간의 현황

제3절 백두대간의 여건변화와 전망

제3장 백두대간보호 기본방향

제1절 정책비전과 목표

제2절 추진전략

제3절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제4절 단계별 추진계획

제4장 전략별 추진계획

제1절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제2절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3절 백두대간 보호기반 구축

제4절 국민참여 활성화 및 교육 · 홍보 강화

제5절 남북협력 강화

제5장 계획의 실행 및 관리

제1절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제2절 평가체계 확립

제6장 백두대간의 미래상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보호국 백두대간보전과, 연 락 처 : (042) 481 – 4290

제1차 백두대간보호위원회 회의록

(2005. 8. 30. 14:00, 국무총리실 대회의실)

- **위원장(국무총리님)**

제1회 백두대간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에 이르는 이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생태계의 축인데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존하고 이용하는 입장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꾸준한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앞으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이해가 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면서 아주 좋은 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아보시고 유익한 토론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새로 위촉되신 네분의 민간위원님을 산림청장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연환 위원(산림청장)**

백두대간 보호위원회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무님을 위원장으로 정부 당연직 위원 열분과 도지사 여섯분과 함께 네분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원은 산림과 자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위원장께서 위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위촉되신 네분의 민간위원께서는 환경과 종교 시민단체, 산림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환경분야 전문가이신 김귀곤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면서, 국무총리실에 환경사업 평가단위원, 환경부의 생태 네트워크 구축 포럼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지속가능 발전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계 대표로 참석하신 법안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을 보존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하면서 불교계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법안스님께서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 기획실장 일을 맡고 계시면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요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는 북한산 금선사 주지스님으로 계십니다.
다음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오구균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녹색연합에서 백두대간 보존 위원으로 백두대간에 대한 남다를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생태 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에 전문가이신 전영우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영우 위원님께서는 현재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지난 92년부터 숲과 문화연구회를조직해서 우리 숲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고 다수의 저서를 통해서 산림문화 창달에 애쓰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민간위원 네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그러면 심의 안건 1건과 보고 안건 1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안건은 심의 안건이고,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립방향은 보고안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이 일괄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의안번호 제2005 – 1호인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이번 보호지역지정 안에 대한 사유부터는 별도책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안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 지역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개최되는 백두대간 보호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곧 바로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은 법률 제6조에 의해 2004년 5월에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지정 원칙은 향로봉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 마루금 684km에 이르는 자연 생태계가 단절되는 것이 없이 연속성을 유지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핵심구역은 1차 수계 완충구역은 3차 수계를 중심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6개도 32개 시 · 군에 대하여 보호지역 지정 안을 마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구역이 16만9천ha, 완충구역이 9만3천ha, 총 26만3천ha이며 이는 전 국토의 2.6% 산림면적의 4%에 해당됩니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79% 민유림이 21%를 차지하고, 도별로는 강원도가 13만3천ha로 가장 많이 포함되었고, 그밖에 경북, 충북, 경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호지역지정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은 당초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환경부와 산림청 공동소관 법률로 2003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한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림청은 학계 연구계들의 전문가그룹과 지자체 NGO 등 단체와 협의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2004년 5월 12일 마련하였습니다.
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GIS 기법으로 작성한 3차 수계 외각을 연결한 보호지역 지정 기초도면을 2004년 6월 25일 작성하여 지자체에 배부하였습니다.
이 기초도면에 포함된 도시지역과 자연마을 등 생태가치가 낮은 지역은 원칙의 4항과 5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련하여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초기에는 기초도면에 포함된 지역이 광대하고 지역경제개발 침체 등을 이유로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 · 연구계 · 지자체 · NGO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240여회 개최하여 의견을 수렵하였고, 520여회의 이르는 언론 대담과 홍보 등으로 보호지역의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상호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차례의 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지역주민 · NGO · 국가 · 지자체 · 국가 모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호지역 지정 방안을 물색하였습니다.

이런 조정작업의 결과 2005년 5월 31일자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을 신속히 개정하여 지역주민 지원사업 확대 영농과 관련되는 행위제한 완화, 토지매수청구권 제도의 도입 등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6월 15일에는 13개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6개 도시사와의 협의를 거쳐 백두대간 보호지역 최종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이에 대한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오늘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의 오랜 추진 과정은 지역주민 · 지자체 · NGO · 정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상호 이해 존중을 통해 갈등 해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 회복으로 국토의 중심 생태계를 보존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훼손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백두대간 생태계를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과거에 각종 개발로 훼손된 지역이 431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복원 · 복구를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33%에 해당하는 1326종과 1806종의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연생태계 핵심적인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녹아있는 산줄기 체계인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 축으로써 기능을 확실히 하는 제도적인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렵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편입되는 사유토지가 3만4천ha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매수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66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번 보호지역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써 생태계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과 산줄기의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지역 등도 산림토지를 매수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호지역을 추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지역의 주민의 소득증진과 환경개선 사업, 복지 향상사업,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등을 위한 사업을 점차 확대해서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둘째 안건인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렵방향에 대해서 다른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수렵에 관한 보고입니다.
백두대간 기본계획은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 10년 마다 장기 기본계획을 수렵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백두대간 보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성격을 말씀드리면 백두대간의 장기적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써 매년 추진하는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의 기본계획적 성격과 백두대간 보호 관련 사업을 총 망라한 종합계획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백두대간의 산림자원 등의 조사 관련사업, 백두대간의 생태계 보호 보건 복구 사업,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토지 매수, 주민 지원 사업,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 협력 관련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수렵하게 될 기본계획의 수렵방향의 주요 성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백두대간의 산림 토지 등 자연과 인문사회 부분에 관한 장기 관리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계획의 기본지침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계획의 내용은 지속 발전 가능한 건강성과 산업 기능증진을 함은 물론 기존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면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우리 전통 산줄기 체계를 자연 생태 사회문화 및 경제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회복 보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한 산림 토지의 매수 및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등으로 보호 관련 기관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민족의 공동 자산인 백두대간의 자연 생태계를 남북한의 공동관리하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백두대간 자연 인문 환경 및 공동실태 조사와 설악산 금강산을 연결하는 평화생태공원 조성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정책안입니다. 추진 전략 과제로는 백두대간의 자원의 생태적 관리, 백두대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백두대간의 보호기반 구축, 국민참여 및 교육홍보 및 강화 남북 협력 강화 등 5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13개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은 산림청에서 본 계획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백두대간의 기본계획과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NGO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백두대간 보호 위원회 심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토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위워님들 책상 위에 백두대간 보호 지정 필지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를 위한 사진첩이 있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심의안건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서 매듭을 짓고, 보고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안에 대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구균 위원**

지난 10년간 노력으로 먼저 환경부와 산림청의 노력을 통해서 보호지역이 확정되고 오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기쁘게 생각하고,

시민단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처음에 산림청에서 만든 안이 54만ha에서 지자체에서 제출한 안은 약 25만ha 그리고 최종결정은 26만ha로 줄어 들면서 백두대간 마루금에 잇는 중요한 지역 일부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26만ha에서도 자연공원 소위 말하는 국립공원과 도립국립공원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부가 백두대간보호법을 만들어서 지난 10년간 노력을 하던 지역이 약 13만ha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 54만ha에서 국 · 도립공원이 약 40만ha이고 정부안은 약 1/4선으로 축소됨으로써 백두대간보호법에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재 보호지역 지정이 되어있

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일부 국민들이 볼 때는 백두대간 마루금 최소한 일부 지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왜 빠지게 되었나 설명해 주시구요. 향후 이 빠진 지역을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자연공원의 절반 정도가 중복됩니다. 근데 백두대간보호법에서 정하는 제한 사항이 자연공원법보다 훨씬 완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백두대간에서 절반이 자연공원구역 즉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은 현 자연공원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백두대간 보호에 하기 좋은데, 현재 백두대간보호법 제3조에서는 모든 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백두대간보호법과 자연보호법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하위법인 자연공원법은 현재 완화시켜야 한다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연공원을 전부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오늘 조건부로 백두대간 보호법 제3조에서 자연공원 구역은 자연공원법으로 관리한다는 이론을 다음 법 개정에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지금 일부 누락된 지역하고 자연공원과의 중복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 말씀하십시오.

- **조연환 위원(산림청장)**

면적 조정 문제는 여러 차례 합의가 있었고 1차적으로 54만ha였을 때에는 3차 수계까지를 전부 긋다 보니까 태백시에 경우는 시 전체가 완충구역에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해서 기초도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준이라고 생

각하였지 54만ha가 백두대간을 보전하는 최저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건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봅니다.

이 부분은 NGO 쪽에서 충분히 그동안 협의과정을 통해서 저희 생각에도 54만에서 상당히 더 많은 면적이 지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태 축을 잇는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5군데 정도가 생태 축의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원의 노치마을에 경우에는 마을 한복판으로 마루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잇으려고 하면 주택을 매수하여 복원을 해야 하는데 현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지역이 강원도의 알프스스키장이 있는 고성지역인데 그 곳의 마루금이 콘도 한 중간 중앙지역으로 마루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개 마을의 경우는 마루금을 생태 축으로 잇지는 못했지만 마루금 주변지역을 핵심지역의 축이 이어지게 핵심지역을 이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단지 경북의 상주지역 같이 농경지 한복판으로 마루금이 지나가는 곳이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농경지 역시 합의를 가지고 숲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절돼 있는 그 외의 지역은 약간의 폭의 좁고 넓은 차이가 있지만 생태 축은 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저희가 약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부터 매수를 해서 복호를 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연공원법 하고 백두대간보호에관한특별법 관계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텐데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행위 제한 때문에 자연공원에서 훼손행위가 손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결론은 아직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일 그렇다 한다면 저희가 보호지역을 정한 실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뒤에 정비할 때 그런 걸 검토해서 우리 백두대간 때문에 국립공원이 손쉽게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지금 일부 훼손된 지역이 있고 일부는 훼손됐는데 이번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복원하도록 협정이 맺어져서 국무조정실 직원들이 현장에 다시 가보니 다시 조성이 잘 되고 있는 걸 보고와서 저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유지화 되어 있는 일부 지역들은 앞으로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데로 일부를 사들여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나 이런 지역들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이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두대간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이 제한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리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안건은 채택을 하겠습니다. 보호지역 지정 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 계획에 관련된 안에 수립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연환 위원(산림청장)**

오늘 보고 안건은 방향에 관한 보고여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들께서 혹시 저희가 잡은 초안에 누락되어 있거나 수정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보셔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방향을 잡으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계획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귀곤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접지역에 있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완충구역이 없이 핵심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고 유역 중에 한쪽만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수계가 되어 있으면 양측을 같이 해서 유역의 통합관리가 자원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근접된 것입니다. 수계가 있으면 수계의 한쪽만 백두대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렵을 하게 되면 유역전체의 통합적인 관리보다는 한쪽은 다른 관리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한쪽은 백두대간법에 의해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록 산림청과 환경부가 이 법을 관리를 해 나아가지만 수자원관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자원관리에 적절한 접근과 수단이 무었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반영된 계획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백두대간의 의미라고 하면 역시 연결성이라 봅니다. 비무장지대에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결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불 때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멧돼지, 고라니, 노루 이런 것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도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남북회담에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환경협력에 대한 의제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엔 백두대간에 보호지역의 지정을 계기로 하여서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린다고 하는 뜻에서 어떻게 하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연결성이 백두대간에서 담보될수 있겠느냐? 남북환경협력에 대해 남북회담이 있을 때 의제로 올릴 수 있도록 있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오늘 두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지역과 유역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DMZ에 관한 환경협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유역관리는 산림청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산림보호국장)**

기본계획의 원칙 중에서 연계성, 연결성을 충분히 고려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이 수자원을 함양하는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마루금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오른쪽으로 확보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나무를 심고 복원을 해서 수자원 함량이 제대로 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다른 것과의 연관성 습지보전지역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귀곤 위원**

제 말씀은 비록 포함은 단기적으로 어렵더라고 관리 만큼은 통합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현재 지정 안을 토대로 하더라도 기본계획 만큼은 통합적인 접근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구길본 산림보호국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두 번째 DMZ 내부의 남북 협력에 관해서는 통일부 차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통일부 차관**

DMZ는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의 현재 고려가 우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로서 이 DMZ를 정말 말 그대로의 DMZ. DMZ가 지금은 사실상 MZ로 되어있습니다.

D를 살리는 문제인데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나아가서 평화적 이용 문제, 이것은 지난 십여년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군사적 문제로 북측과 논의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협력 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북한이 환경문제에 대

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얼만큼 우선순위를 차지할지 하는 문제가 또 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노력과 함께 환경협력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것은 계속 염두해 두면서 적절한 시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그 지역이 DMZ 동해안 지역이 나무가 벌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 능선만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나무는 벌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이 GP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여름에도 풀이 무성하면 없애고 있고 거기가 민둥산으로 되어 있어서 능선은 보호를 잘 하고 있지만 조림은 아직은 풀어져야 조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귀곤위원**

UN사라든가 북측하고 상당한 길이와 구간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남북철도, 도로, 환경생태 공동조사단에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미 북측이라든가 UN사 한국 정부가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철도나 도로가 이미 복원되거나 건설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판별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금강산과 설악산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하는 것은 이미 공사도 했고 관리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출발을 해 볼 수 있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산악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회담을 해보면 북측 사람들은 환경순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야를 남북 협력을 하는데 환경문제는 본인들이 아직 덜 절박하게 느끼고 있고 경계교류 협력부분 이쪽이 그래서, 통일부가 그런 문제도 북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죠.

- **통일부 차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선 철도 도로라는 것이 철도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일정 구역을 개방하였습니다. 길이는 DMZ의 폭만큼 개방을 하고 UN사에서는 양쪽으로 400m를 폭을 열어놨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남북한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역으로 유엔사 관리 구역을 특정지역만 남북한 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전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이라든지 위치가 지금 백두대간 연결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키려면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이 상당한 관심을 갖도록 설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관심도는 여전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번 제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영우 위원**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다시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에서 조사한 자료로 내놓은 이 자료에는 핵심구역과 완충구역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임상도, 산림이용도 이런 산림 이용에 대한 지리정보를 갖추었지만 산림자산 기본도 라든지 또는 현황도 이런 것에는 구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행정구역이 들어설 지역을 비롯해서 몇몇 곳에 올해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들로 알고 있는데, 10년 계획에 이런 사업을 넣어야 앞으로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0년 계획에는 이런 부분을 산림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만, 독일의 산림 기본자산도 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전체 산림은 아니

지만 백두대간 구역에 걸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먼저 구축이 되어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보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진선 위원(강원도지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산림청에서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등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 보호지역 편입 사유 토지 매수 정부 제도를 만들었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충분히 가격 책정이라든지 지원조치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좀 더 용의하게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기본방향에 대해서 두분이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산림청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간사(구길본 산림보호국장)**

전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자원 기본도면이라든지 현재 나와있는 임상도라든지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종합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 부분 항상 유념해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연환 위원(산림청장)**

사실 6개 도지사님들께서 안팎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 요구사항하

고 정부입장을 절충하시면서, 저희 산림청에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맙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토지매수 청구권제도 및 단가 문제가 걸리는데 도와주셔야 저희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아직 반도 못쓰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짜피 감정가로 사야되는데 지역주민들의 현실가와 차이가 나니까 매수할 때 한번 더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그러나, 요즘에는 감정가와 시가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 **조연환 위원(산림청장)**

고랭지채소밭의 경우에는 소득을 상당히 올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오구균 위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현장에서 여러가지를 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데로 관리계획에서 백두대간보호법의 제한사항과 자연공원법 제한사항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절반이 자연공원입니다. 근데 자연공원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백두대간보호법 제13조에서는 제반 행위사항을 시도지사나 지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엄정하게 보호된 지역이 자원공원구역 즉 국립공원 구역인데 몇 개 부서가 와서 가치 사업을 중복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법에 의해서 관리 방향이 틀린 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 관리 권고 사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공원구역과 자연공원 관리를 가능한 이론화 하고 산림청과 환경부가 관리를 분담도 하면서 협력할 사항들을 명확히 해놓는 것이 앞으로 백두대간 보호와 자연공원

구역의 보호를 위해서 한 예를 들면 소백산국립공원의 비로봉 쪽에 여기서 문화재청에서는 천염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서는 생물유전자보호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가장 생태적으로 손대지 않고 보호하는 법은 자연공원법입니다.

그러나 산림법은 아무래도 특정 식물 종 중심으로 보호합니다.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수목별로 외과수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일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서 볼 경우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자원조사든가 복구 지속 가능한 이용 등이 함께하기 때문에 관리 범위와 분담을 명확하지 않으면 일선에서 상당한 혼란이 오고 보호의 실효를 걷을 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연환 위원(산림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조금 관련이 되는데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령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백두대간보호법에서 자연공원법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고 백두대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와 산림청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자연공원이 백두대간 지역에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 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소지가 있다면 다음에 법을 정비 할 때 분명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연공원을 절대적으로 백두대간에 포함시켜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근데 그럼 자연공원을 뺄꺼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두대간의 큰 상징성, 역사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보호지역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자연공원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들어오면서 자연공원법이 해제가 되고 백두대간 보호법에 의해서 좀더 개발이 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는 바도 아니고

되서도 안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법을 정비할 때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오구균위원**

처음 말씀은 산림청 의도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나 예산과 시행 관계에서 중복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법체계에서 상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의 일원화와 분담협력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어 주는 것이 현장에서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우리나라 법 체계 상 지금 자연공원법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백두대간법은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뒤에 만들어진 법이 기존법 이걸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항을 법문에 넣지 않으면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걸 만든 취지가 이걸 보호하자고 만드는데 오히려 자연공원법에 보호되고 있는 것을 훼손할 이유는 없다. 걱정 안해도될 것 같습니다.

- **강현욱 위원(전라북도지사)**

보통 국민들이 볼 때는 쉽게 될 것이냐 우려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이 출발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에 농림부 장관님 환경부 장관님 특히, 산림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가장 많은 지역을 포함 시킨 강원도 지사님이 대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본계획에 넣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자랑을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을 앞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모든 자료 홍보자료를 모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홍보관을 외국인들을 포함에서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설치를 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대외적으로 자랑을 하고, 보전에 힘을 모으는 장소를 건립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지금 이게 백두산부터 시작하면 지리산까지 1,400km 되는 모양이던데 그걸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걸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3조 부분은 자연공원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이 다 적용이 되고 백두대간보호에서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된 부분이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화된 부분이 다른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중첩된 부분까지 강화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자연환경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재 부분과 자연환경 부분 관련해서 멸종 희귀종 이런 것들이 있고, 멸종 희귀종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환경부가 거의 대부분의 수행하는 것으로 조종을 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재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 달라든지 부처간의 다수 중복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해 낳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국무총리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좀 더 보안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안건인 기본계획수립 방향에 관한 보고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7

Ⅸ. 부 록

언론보도 자료

● 연합뉴스 2004년 7월 16일 금요일

태백시 백두대간 보호지역 대응책 강구

태백시 백두대간 보호지역 대응책 강구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도 태백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이상이 내년부터 시행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돼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태백시는 삼림청 자료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면적이 태백시 전체면적 303.53㎢의 56.7%인 172.3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당초 환경부 용역자료에 따른 태백시 보호지역 지정 예상면적 144.5㎢보다 오히려 20% 가까이 늘어난 면적이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산지보전협회 주최 '백두대간 관리실태와 향후보전전략' 설명회에 참석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태백을 말살시킬 것"이라는 태백시 입장을 전달했다.

태백시는 또 오는 16일에는 태백시청 상황실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련 강원도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범시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백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17개 개발사업 가운데 14개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yh@yna.co.kr

● 강원도민일보 2면 2004년 7월 16일 금요일

백두대간보호구역 "입법예고 늦추겠다"

산림청, 공청회 통해 주민 피해 보상문제등 의견 적극 수렴

"태백 전체면적 절반이상 지정시 타격" 반발

태백·남원 주민 항의로 첫 주민공청회 무산

[서울]조인환산림청차장은 15일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 태백시 주민등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청회를 통한 주민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입법예고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안에 지역내에서 주민들과 현지 공청회를 갖고 백두대간보호법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문제가 법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조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회의장에 태백시 현안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이 항의방문하자 대표단을 별도로 만나 이같이 밝혔다.

태백시의회 정용화의장 김영수부의장 등 주민대표들은 이날 "백두대간 보호법에 따라 태백시내는 물론 전지역의 57%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게된다"며 조정을 촉구했다.

이어 "폐광지역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지역을 개발하라고 해놓고 백두대간보호법으로 다시 개발을 묶는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태백은 폐광으로 12만명이었던 인구가 5만5,000명으로 줄었고 가행탄광까지 문을 닫게되면 생존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차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태백시의 안이 제출되면 조정을 하고 공청회를 통해 또다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첫 공식 공청회는 태백시 및 남원시 주민들의 항의로 회의 자체가 중단돼 무산됐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림청 녹색연합 등의 후원을 받아 이날 '백두대간 관리 실태와 향후 보전전략'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지역주민들이 회의장에 입장해 피켓과 현수막등을 설치하며 항의를 하자 서둘러 회의를 중단시켰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청 강원도 태백시 지역주민 대표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림청과 녹색연합의 후원을 받아 1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첫 공식 공청회가 태백및 남원지역 주민들의 항의방문으로 무산됐다. <宋周炫기자>

● 강원도민일보 19면

2004년 7월 16일 금요일

평창도 '백두대간 보호법' 반발

횡계 2, 3, 5리동 1만7,270㏊ 보호구역 예정

"개발 제한… 재산권 침해·지역 발전 잠해"

(주요)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작업에 나선 가운데 평창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평창군의회 우감호의원과 김영해의원은 도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번 백두대간 보호법 해당지역 이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긴급 주민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배후 시설 조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데다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법제정과 군내 도암·진부면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기관인 평창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대처가 늦어졌다"며 일일한 행정추진에 불만을 토로했다.

평창군의 경우 도암면 횡계2, 3, 5리를 비롯 수하리 병내리 차항리, 진부면 동산리 일원 1만7,270㏊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 등의 제한될 전망이다.

더욱이 도암면 병내리 등의 경우 지난해 10월27일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주택신축 등의 기반을 겨우 마련했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보호구역으로 묶일 형편에 놓여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시군에는 2~3일전에 알려줘 미처 주민에게 홍보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며 "주민반대여론을 감안, 현장에서의 주민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평창군이 토지개발공사와 추진중인 오대산 종합개발지역을 비롯 강원도가 추진하는 피스밸리 조성사업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지 등 대형 프로젝트 지역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金英石기자·stone@kwnews.co.kr>

● 국정브리핑

2004년 7월 29일 목요일

백두대간 지역 지정안 설명회 개최 – 내년부터 백두대간 보호 법률 시행

산림청은 내년 1월 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22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시·군 및 지방산림관리청 간부급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안 작성 및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은 설명회에서 내년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사전준비 단계로 합리적인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안 마련을 위해 일선 시·군 간부급들에게 도면초안 작성요령과 동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주능선(마루금)을 중심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게 되는데 산림청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락지구 등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또는 도시화된 지역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산림청에서는 지역주민 소득원 개발을 위해 백두대간지역의 농·산림소득사업, 산림사업 및 농·산촌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지역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호지역 시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 1일 이후 동법이 시행되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는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산림보호과 원상호 사무관 042-481-4241

등록 2004.07.23 15:26:00

● 연합뉴스 2004년 8월 3일 화요일

전북도, 산림청 약속에 안도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계획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던 전북도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산림청의 약속을 받고 한숨을 돌렸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이형규 행정부지사가 산림청을 방문, 조연환 청장으로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지정면적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3일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으로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유치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조 청장은 '다소 시행이 지연되더라도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호지역 지정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다고 전북도는 말했다.

또 조 청장은 가급적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개최지가 확정된 이후에 보호구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주가 지정고시지역에 포함되더라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올림픽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겠다.

내년 1월 1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은 현재 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조정중인데 전북은 동계올림픽 유치 지역인 무주를 비롯한 남원, 장수 등 3개 시.군에서 핵심구역 1만9천996ha, 완충구역 2만7천407ha 등 총 47만403ha가 보호지역 지정안에 포함돼 있다.

● 경향신문 8면 2004년 8월 4일 수요일

야영하며 백두대간 탐방

중·고생 300여명이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을 통해 훈련지가의 국립사찰 찾아 신을 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봉사에서 백두대간을 탐험하고 있는 학생들. / 산림청 제공

야영하며 백두대간 탐방

산림청·한국산악회 중·고생 대상 매년 실시

전국의 중·고교생 300여명이 5박6일 일정으로 백두대간 탐방에 나섰다. 나라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의 생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다.

산림청과 한국산악회가 주최하는 제4회 백두대간 산림생태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들은 지난 1일 7개 팀으로 나뉘어 지리·덕유·속리·소백·태백·오대·설악 등 백두대간을 이루는 7개 산에서 훈련식을 갖고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6일까지 지리산에서부터 설악산까지의 백두대간 주능선(마루금) 374㎞구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생태탐방을 한다.

전문등산가이드의 지도 아래 야영을 하고 있는 이들은 텐트로 비좁은 숙영장가에 등 등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백두대간을 따라으로 삼아가고 있는 동·식물을 공부한다.

중·고교생들은 또 산골 마을에 직접 들어가 산촌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백두대간의 훼손상태를 파악하는 작업도 벌인다.

대전 / 문희일기자
yh@kyunghyang.com

● 경향신문 10면 2004년 8월 5일 목요일

'백두대간보호 이해는 하지만…'

'백두대간 보호' 이해는 하지만…

지역주민들 "지금도 각종규제 시달려" 보호구역 지정 반발

민족정기를 잇는다는 취지에서 추진중인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이 산악권 주민의 생존권 사수 반발에 직면해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백두대간 보호구역 시안은 마루금으로부터 1~3차 수계로 나눠 1차 수계는 핵심구역, 2·3차 수계는 완충구역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684㎞의 백두대간에 53만5천ha가 보호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선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 보호법은 지난해 12월 공포돼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현재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끝났다. 하지만 산악지대가 많은 전북과 강원을 비롯, 충북·전남·경남 등 해당지역 주민은 '생존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긴 봉화산~만복대까지 총 440.5㎞인 지리산권의 경우 4만7천ha가 포함될 예정인데 남원시 산간부 주민 4,000여명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배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마친 상태다.

남원시 운봉지역의 경우 33개 행정마을 대부분이 3차수계 이내권인 해발 470~650m 사이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동쪽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상태고 주위 야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서쪽지역 전체가 백두대간으로 묶이면 단 한곳도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북 장수군도 군 전체면적의 40%인 1만4천ha가 보호구역에 편입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번암면의 경우 60% 이상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고지대 임야를 제외한다면 주민이 생존 및 영농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고작 10%에 불과하다.

전북 무주군 주민 100여명은 지난달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반대 집회를 열고 "무주군 전체면적의 29%가 국립공원으로, 3.6%는 금강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백두대간보호법을 들이대는 것은 너무 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19%인 21만4천ha가 보호 핵심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강원도와 12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72개 개발사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52개 사업이 불가능해 진다.

태백과 속초지역의 경우 각각 전체 면적의 56%와 49%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될 전망이지만 보상대책은 전혀 없다.

강원 시·군 번영회장단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 발송한 건의문에서 "국민생활 여건과 점서를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7만4천ha가 포함될 예정인 충북도 역시 괴산군 연풍면 전체가 규제대상으로 묶여 개발제한을 받게 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시안)면적

(단위:ha)

지 역	합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강 원	214,240	118,208	96,032
충 북	74,394	30,896	43,498
전 북	47,403	19,996	27,407
전 남	14,866	6,313	8,553
경 북	134,811	45,214	89,597
경 남	50,204	21,850	28,354
총 계	535,918	242,477	293,441

(제공: 산림청)

충북도는 이미 개발된 괴산 조령산 휴양림과 단양 소백산 목장 등도 규제에 들어가는 등 '사람과 산림의 공생관계를 해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며 보호범위를 능선 밑 300m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재영 전남 장수군수는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산악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미 터를 닦고 살아온 오지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 백두대간 보전팀 관계자는 "현지조사 결과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상지역은 시·군 의견수렴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 박용근기자

● 조선일보 A10면 2004년 8월 5일 목요일

백대대간보호법에 강원도 '울상'

白頭大幹보호법에 강원도 '울상'

"52개 개발사업 차질… 낙후지역에 희생강요"

환경단체 "法개정은 곤란… 친환경 개발을"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태백 등 12개 시·군에서는 과다한 규제가 부과되는 '제2의 그린벨트', '광역 그린벨트'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에 이르는 국토의 등줄기이면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대간을 보전한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지역 지정해 개발 막아

백두대간법은 의원입법으로 제정돼 작년 12월 31일 공표됐으며 준비기간 1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백두대간의 마루금(능선을 따라 지도에 그은 선) 주변을 핵심·완충구역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 훼손·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로봉~지리산 산줄기 684㎞ 주변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거대한 녹색띠를 형성하게 된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시·도, 32개 시·군의 일부가 보호지역에 포함된다.

보호지역에서는 군사·공공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주택도 신축할 수 없으며, 증·개축도 극히 제한된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5월 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일선 시·군에 계획 도면을 내려보내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 개발 불가능"

남한 백두대간 길이의 절반에 가까운데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 전체 면적의 19%가 보호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72개 주요 사업 가운데 52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이에 따라 해당 시·군들은 낙후한 지역에 또다시 희생만 강요한다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차질 예상되는 강원도 지역 주요 사업

지역	사업 내용
고성	마산봉지구 종합개발, 홍리고원 스포츠 휴양지
양양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인제	진부~미시령 관광휴양지, 원래온천지구 개발, 아침가리지구 생태공원 조성
강릉	현라석회광산, 제2 감자 원종장
평창	대관령 문화방문 사업, 국제 한방 요양휴양촌 건립, 서울대 축산대학 건립
정선	감자 원종장, 고토실 복합리조트, 두문 레저타운
동해	무릉계곡 관광지 개발
삼척	스카이라인 특구, 동굴 특구, 고원 건강산업 특구, 신재 시설재배, 화훼단지
영월	강동 골프장, 장산 스키장
태백	한우사육단지, 태백관광레저, 특화작물 재배단지, 화장장 신축, 감광소 생태공원 조성, 소도 개발마늘 온욕센터, 버섯 재배단지, 청소년 수련단지, 삼수령 관광림 조성, 서학재자리온, 복합실버타운, 관광협의회

자료: 강원도

특히 태백시의 경우 중심 시가지까지 전체 면적의 56%가 포함되면서 불만이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38개 가운데 17개 사업이 차질을 빚어 도시가 존립기반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산림청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융도지역이나 자연마을, 도시화된 지역 등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 "입법취지 살려야"

환경단체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일리는 있으나 백두대간법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백두대간보전회 김정호 정책실장은 "당초 보호법을 만든 취지는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이나 생계를 막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정부가 국책사업을 통해 백두대간을 주로 훼손했지만 부담은 주민에게 지우기 때문에 반발이 생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도 훼손을 통한 개발이 아니라 친환경적 개발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법률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폐지할 수는 없으며, 남은 준비기간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시행령에 융통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삼은기자 sekwon@chosun.com

● 내일신문 18면 2004년 8월 4일 수요일

산림청장 '백두대간 지정면적 최소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계획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던 전북도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산림청의 약속을 받고 한숨을 돌렸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이형규 행정부지사가 산림청을 방문, 조연환 청장으로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지정면적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으로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유치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조 청장은 '다소 시행이 지연되더라도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호지역 지정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북도는 말했다.

또 가급적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개최지가 확정된 이후에 보호구역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주가 지정 고시지역에 포함되더라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올림픽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한겨레 8면 2004년 8월 7일 토요일

'백두대간 보호법'에 강원도 의견 관철

김진선 지사 견해 밝혀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6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되는 강원도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듣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도면 작업에서 불합리하게 포함된 취락지구, 자연마을 등을 모두 제외하고 이미 계획돼 있는 필수 사업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런 협의절차 과정에서 강원도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전부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기준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수도권 분산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전략이기 때문에 규제완화 움직임은 명분이 없는데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최시하지 않고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들과 공조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춘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 조선일보 A13면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축소

산림청 "주민피해 최소화 하겠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이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최종 지정과정에서 축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9일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시·군에 배부된 보호지역 시안은 기초도면 성격이므로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정작업을 거쳐 보호지역 대상 지역의 경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지역 제외 기준은 자연마을, 취락지구 등 도시화된 지역과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구상중인 개발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시안으로 발표된 보호구역 53만5918ha(핵심구역 24만2000여ha, 완충구역 29만3000여ha) 중 상당 부분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백두대간의 파괴와 훼손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심재율기자 jysim@chosun.com

● 문화일보 3면 2004년 8월 9일 월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크게 줄듯

'백두대간 보호지역' 크게 줄듯

강원등 해당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 반발

■ 한반도의 등줄기로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백두대간을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제한하는 '보호지역' 지정면적이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상당폭 축소될 전망이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백두대간 능선으로부터 300m까지는 핵심구역, 700m까지는 완충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월말 1차 시안면적으로 53만5918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수립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광산과 골프장·스키장·레저설 등이 금지되는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강원과 전북 등에 지역주민과 자치단체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보호지역이 지정될 경우 제2의 그린벨트'로 작용해 지역개발사업과 동계올림픽 유치가 어려워짐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지정면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림지역이 많은 강원 평창·양양·삼척지역 주민들은 생존권보장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취락지구 등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및 도시화된 지역 등은 보호지역에서 제외키로 하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타당할 경우 이를 수용할 계획이어서 백두대간 지정면적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을 유지·보전하는데 필요한 산림지역만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광일기자 kik@

● 국민일보 9면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기초도면보다 축소될듯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 기초도면보다 축소될듯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이 지난 6월 32개 시·군에 제시된 도면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9일 정부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부된 도면은 1차 기초도면 성격으로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다"며 "지역주민 공청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보호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기자

● 조선일보 A13면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축소

산림청 "주민피해 최소화 하겠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이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최종 지정과정에서 축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9일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시·군에 배부된 보호지역 시안은 기초도면 성격이므로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정작업을 거쳐 보호지역 대상 지역의 경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지역 제외 기준은 자연마을, 취락지구 등 도시화된 지역과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구상중인 개발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시안으로 발표된 보호구역 53만5918ha(핵심구역 24만2000여ha, 완충구역 29만3000여ha) 중 상당 부분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백두대간의 파괴와 훼손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심재율기자 jysim@chosun.com

● 조선일보 A12면 2004년 8월 7일 토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정 신중해야"

김진선 강원지사 "납득 안되면 전면거부"

김진선(金振鮮) 강원도지사가 6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과 수도권규제완화, 공공기관이전 등 강원도에 불어닥친 3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강원도민들의 안녕과 생존권이 침해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김지사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 "현재 시·군에 배포된 도면은 환경부와 산림청의 합의한 지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정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1차적인 기초자료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그대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또 "취락지구와 자연마을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제외시킬 것"이라면서 "해당지역내의 필요사업은 대안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사는 이어 납득 수용할 수 없는 지정이 진행되면 전면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아직은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확정되거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법개정 추진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며 "규제완화는 명분이 없을 뿐 더러 수도권 분산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돼 조기에 추진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나 원칙없이 진행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비수도권 자치단체들과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계획적으로 이전기관을 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규모의 기관이 지역별로 배분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더 많이 도내로 이전되도록 부지관련 문제와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우기자

● 서울신문 5면 |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보호지역 범위지정 난항

백두대간 보호구역 범위지정 난항

이달말 2차안 공개… 주민 반발 불보듯

보호지역 지정(안) 시·군별 면적

(단위 : ha)

구 분	시·군	핵심구역	완충구역
강 원 (12개 시·군)	강 릉 시	19.974	17,744
	동 해 시	2.079	3,892
	태 백 시	6,310	10.785
	속 초 시	4,173	967
	삼 척 시	5,514	14.465
	홍 천 군	8.392	2,093
	영 월 군	4.102	3,447
	평 창 군	12.358	5.036
	정 선 군	5,047	6,497
	인 제 군	27,625	16,232
	고 성 군	8.816	7,765
	양 양 군	13.818	7,109
충 북 (6개 시·군)	충 주 시	1.032	3.009
	제 천 시	3.674	5,737
	보 은 군	2.689	3.858
	영 동 군	3,977	11,199
	괴 산 군	6.563	8.335
	단 양 군	12.961	11,360
전 북 (3개 시·군)	남 원 시	8.195	11,096
	무 주 군	7,465	7.929
	장 수 군	4,334	8.382
전남(1개군)	구 례 군	6.313	8.553
경 북 (6개 시·군)	김 천 시	4.985	25.065
	영 주 시	10.277	11.932
	상 주 시	8.376	21.253
	문 경 시	11.967	19.204
	예 천 군	1.227	4.734
	봉 화 군	8.382	7.409
경 남 (4개 시·군)	하 동 군	3.612	1.585
	산 청 군	5.758	8.302
	함 양 군	8.032	8.719
	거 창 군	4.448	9.748

〈자료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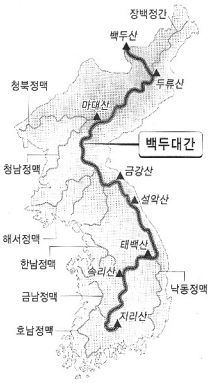

백두대간보호법의 핵심인 보호지역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고 있으나 지역이 광범위하고 규제가 심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이중삼중 규제'로 재산권 행사 및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환경부가 내년 초 지정고시할 1차 보호지역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5월 전국 684㎢(53만 5000여ha)에 달하는 보호지역 기초도면을 제작, 1차 시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와 조정을 거쳐 8월 말 2차 시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면에는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광역도와 32개 시·군이 포함됐다.

보호구역 가운데 생태·물리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핵심구역은 45.2%인 24만 2000여ha이고, 핵심구역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은 29만 3000여ha다. 당초 핵심구역은 백두대간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완충구역은 700m 이내 지역으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백지화하기로 했다.

◎30여곳 개발제한 우려

12개 시·군에 걸쳐 전체 보호지역 면적의 13%가 포함된 강원도는 정부의 1차 시안대로 확정되면 52건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지정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고성군은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낙후가 심한데, 또 규제를 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2008년 세계건강체험엑스포 유치계획인 동해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 전북도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무주권 주민들은 국립공원과 금강수변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까지 포함된다며 반발하고 있고, 남원시민들도 배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마쳤다.

충북 괴산군 연동면은 면 전체가 포함됐다.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지역만 강원 19곳을 포함해 30여곳에 달한다.

산림청 구길본 산림보호국장은 "기초도면(1차 시안)이 그대로 지정되는 게 아니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출 방침"이라며 "다만 핵심구역은 유지하되 완충구역은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론수렴 과정 난항 예상

더욱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에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또는 도시화된 지역을 보호지역에서 제외하고,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녹색연합 정용미 간사는 "외국은 전이구역이 있으나 백두대간보호지역에는 없고, 국책사업과 달리 지자체 사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됐다."며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고 탄력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법 발효… 개발 규제

지난해 제정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 시행되며, 보호지역은 주민·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보호지역 가운데 핵심구역은 국방·군사와 도로·철도 등 9개 목적외에 개발 행위가 불허된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 및 수목원·휴양림 등 7개 시설만 가능하다.

특히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등 개별 법에 따른 개발의 인·허가와 승인시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토록 해 환경훼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사유재산 침해가 일어날 경우 사유림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1만ha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영농활동이 가능하며, 등산로도 지금처럼 개방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 세계일보 7면 |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 보호 면적 상당부분 축소될듯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이 지난 6월 32개 시·군에 제시된 도면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9일 정부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부된 도면은 1차 기초도면 성격으로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다"며 "지역주민 공청회,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보호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지역 제외 기준은 자연마을과 취락지구 등 도시화된 지역과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구상중인 개발계획중 타당성이 있는 경우 등이며,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중인 곳은 강원 19곳, 경북 4곳, 충북 3곳, 전북 3곳, 경남 1곳 등 모두 30곳이다.

이와 관련, 조연환 산림청장은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끝난 지역은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실시계획 인가전 단계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도면에 포함된 보호구역 53만5918ha(핵심구역 24만2000여ha, 완충구역 29만3000여ha)중 일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네이버뉴스(인터넷)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폐광지역 개발 막는 '백두대간 보호법'

기고

정용화
태백시의회 의장

작년 12월 31일 공포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685㎞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루금(산 정상 줄기)으로부터 양 옆 300m까지는 핵심구역, 700m까지는 완충구역으로 지정해 일야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전국적으로 6개 도, 32개 시·군이 법률 적용 지역이 되기 때문에 '광역 그린벨트'라고도 칭한다.

핵심·완충구역 등 보호지역에서는 군사 및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관광레저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주택을 신축할 수 없으며 증개축도 극히 제한된다. 32개 시·군 중에서 가장 폭 넓게 제약을 받는 지역은 강원 태백시로 시가지는 물론 시 청사까지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다.

태백시는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45개 탄광 중 42개가 문을 닫으며 경제가 황폐화됐다. 이후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등 폐광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눈물겨운 투쟁으로 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제정돼 카지노 등으로 경제 회생의 단초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백두대간법이라는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으로 태백시는 시 면적의 56.7%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33개 시 사업 중 26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강원도는 폐광 지역 개발사업 72개 가운데 52개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법 시행 6개 월을 앞두고 현지 실사를 하는가 하면 보상책도 없이 재산권을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댐 건설법, 낙동강 관련 법, 발전소 관련 법은 모두 구체적인 주민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2년 12월 차관회의에서 관리구역 지정시 태백시와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태백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지정했다. 환경보호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백두대간 인근 다수 주민의 행복권, 재산권을 무참히 말살해도 되는 것인지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의 백두대간법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배제한 일방적인 규제성 법률이다.

백두대간법은 폐특법과 상충되는 등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규제와 보전, 주민생존권과 지역 균형발전 간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폐특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특례조항을 도입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개발을 무조건적으로 백안시하는 시각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심 이반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96년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탄광지역 개발 촉진 지구(191㎢) 중 백두대간 생태축 능선 이외의 지역은 백두대간법에서 제외하는 등 하루 속히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 한국일보 A25면 2004년 8월 9일 월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크게 축소, 해당지역 반발

산림청이 마련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이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발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6월말 산림청은 53만6000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기초 면적 계획을 수립했다.

강원과 전북 등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을 가로막고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산림지역이 많은 강원 평창, 양양, 삼척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골프장과 스키장, 댐건설 등이 금지되는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발이 거세자 산림청은 9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전병권 산림보호과장은 "지금 각 지자체에 나가 있는 안들은 이론적인 근거로 마련돼 있는 것이고, 지역의 마을, 도시화된 지역 등 현실적인 것들이 감안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또 보호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동서로 가르는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보호지역 지정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 서울경제신문 34면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진통'

주민·지자체등 반발… 일부지역 제외될듯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최종 지정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또 보호지역 지정도 관련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시안으로 발표된 보호구역에는 지역주민과 지역특상이 반영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며 "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시군에 배부된 보호지역 시안은 기초도면 성격으로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취락지구나 자연마을·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지역은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안으로 발표된 보호구역 53만5,918㏊ 가운데 일부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두대간에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강원 19곳, 경북 4곳, 충북·전북 각각 3곳, 경남 1곳 등 모두 30곳에 면적도 수만㏊에 이르고 있어 보호구역 제외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보호구역 내 32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보호구역 지정이 내년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며 "만약 협의가 지연될 경우 협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보상문제와 관련, "일부 주민들이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별도 보상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무진기자 chang@sed.co.kr

● 굿모닝 서울 4면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 축소될듯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 축소될듯

산림청 "배부 도면은 기초자료…공청회 거쳐 지정"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이 지난 6월 32개 시·군에 제시된 도면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9일 정부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부된 도면은 1차 기초도면 성격으로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게 아니다"며 "지역주민 공청회,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보호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지역 제외 기준은 자연마을, 취락지구 등 도시화된 지역과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구상 중인 개발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경우 등이며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곳은 강원 19곳, 경북 4곳, 충북 3곳, 전북 3곳, 경남 1곳 등 모두 30곳이다.

이와 관련, 조연환 청장은 "이미 실시계획 인가까지 끝난 지역은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실시계획 인가전 단계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도면에 포함된 보호구역 53만5918㏊(핵심구역 24만3000㏊, 완충구역 29만3000㏊)중 일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전매일 8면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 보호면적 면적 축소될듯

백두대간 보호면적 축소될 듯

산림청, 주민피해 최소화 방침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이 지난 6월 말 6개 도 32개 시·군에 제시된 기초도면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말 1차로 제시된 보호지역 기초도면이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합리적인 조정작업을 거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호지역 제외 기준은 자연마을, 취락지구 등 도시화된 지역과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구상 중인 개발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최미영 기자

● 매일경제 A2면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큰폭으로 줄어든다

녹지·관리·농림지역 안의 취락지구나 용도개발지역 등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제외돼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 신입·투자용도로개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53만5918㏊)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와 산림청은 9일 △녹지·관리·농림지역 안의 취락지구 △용도개발지역 △교육·의료·문화 등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화지역 △지역발전 사업예정지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지역 등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백두대간 지정작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수환·이근우기자

● 중도일보 6면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축소

개발 · 도시화 지역 제외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이 지난 6월 32개 시·군에 제시된 도면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림청은 최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정부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부된 도면은 1차 기초도면 성격으로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게 아니다"며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보호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지역 제외 대상은 도시화된 지역과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구상중인 개발계획중 타당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김재수 기자 kjs0338@

● 파이낸셜뉴스 4면 2004년 8월 10일 화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축소

산림청, 이달내 조정작업

【대전=김철준기자】 도시화가 진행됐거나 이미 개발계획이 선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백두대간 일대 산림보호 면적이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강원, 전북, 경북 등 6개 광역단체 32개 시·군에 걸쳐있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작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재 백두대간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재산권 규제가 예상되면서 해당지자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작업에는 취락지구와 자연마을 등 불합리하게 포함된 지역에 대한 보존지구 지정 제외가 검토된다. 또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개발계획을 구상중인 지역 등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인·허가 가능성, 생태계 훼손여부 등을 고려, 보호구역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 강원일보 1면 2004년 9월 13일 월요일

백두대간 과도규제 풀겠다

도출신 의원입법 추진…폐특법 연장등 도현안 공조 약속

강원도 도·정협의회 제 1차 워크숍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이 도출신 및 도연고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강원도 도·정협의회는 11, 12일 이틀간 춘천수협장에서 도출신 및 도연고 국회의원과 도지사, 도의장단, 시장·군수, 시·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워크숍을 갖고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최연희(동해-삼척) 의원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방향화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강원도에서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해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에 제출하면 도출신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진선지사와 심상기도의장 등 도의장단, 시장·군수, 시·군의장 등은 이날 수도권규제완화 폐광지역특별법 공공기관이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정책화 해 주도록 주문했다.

폐광지역개발특별법 시효문제의 경우 조만간 최연희,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20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신반리-철원대마리 수도권 고속전철도건설은 박세환(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과 홍천 연고인 이철우(경기 포천-연천)의원이 공동 노력해 2006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국회 산자위소속인 이광재의원이 "잘 될 것이다.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해 희망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업도시 유치문제는 국회가 관련법을 제정하면 강원도와 도출신 국회의원 등이 힘을 모아 진경련을 대상으로 적극 유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확보는 올해보다 5% 증가한 2조3,5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과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동해안 세라믹신소재 산업클러스터조성 등은 미흡한 만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헌재경제부총리는 강원도 개발방안에 대해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브랜드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상대로 벤치마킹에 나서야 한다"며 "강원도의 공간을 잘 활용해 주민 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도·정협의회는 지난 4월 제17대 총선직후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이 마련한 당선자 초청 토론회에서 처음 제안됐으며 도출신 국회의원과 도지사, 도의장단, 시장·군수, 시·군의장 등 도내 선출직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유일의 지역발전 협의체이다. <金鍾寬기자·kys@kwnews.co.kr>

● 강원일보 20면 2004년 9월 13일 월요일

백두대간보호법 철폐 촉구

7개 시·군 주민 1,000명 내일 대전 산림청 방문

"생존권 위협"… 대규모 항의집회·호소문 낭독

【江陵】속보=백두대간보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도내 7개 시·군 주민 1,000여명이 14일 대전 산림청을 방문,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갖는다.

강릉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조연환 산림청장과의 면담에서 백두대간 보호법 폐지 또는 전면 보완·수정을 요구한데 이어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산림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 지역별로 버스편으로 대전까지 이동, 이날 오후 1시 집결해 3시30분까지 현지에서 청와대, 국회, 산림청, 환경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백두대간보호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주민들은 백두대간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주민들 모두가 이해하지만 이미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백두대간보호법을 철폐하거나 사유지를 전면 제척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참여 정부가 명사자인 주민 참여없이 일방적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보호구역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과거 정부의 행태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高金順기자·dsgo@kwnews.co.kr>

● 문화일보 10면 2004년 9월 13일 월요일

강원 '백두대간 보호법' 시끌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사 신도회 200여명이 최근 강원도 강릉시청 광장에서 '백두대간보호법'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원 '백두대간 보호법' 시끌

정부 내년 시행방침에 주민·시민단체등 "지역개발 걸림돌"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법' 을 시행키로 하자 강원도가 뜨악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 불교계까지 나서 반대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두대간보호법이 관만대로 시행될 경우 백두대간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지역개발이 지해되는 것은 물론 재산권을 제한하는 '신그린벨트' 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 한반도에서부터 지리산 천왕봉까지 1430km에 남한 지역은 한로봉에서 천왕봉까지 654km이다.

수혜 백두대간보호법이 뭐기에=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공포된 백두대간보호법은 생태계의 보고(寶庫)이자 한라 등 5대강의 발원지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제한, 훼손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백두대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비무장지대(DMZ) 때라 지도에 그은 선)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호구역 지정 원칙을 마련했다.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물어 지정되는데 이달 중순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는 시안으로는 핵심구역 342,000ha, 완충구역 296,000ha 등 모두 538,918ha가 보호구역 지정될 양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건축 및 공작물 설치, 가공행위의 금속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수혜 반발한 나=백두대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32개 시·군중 12개 시·군이 강원도에 있으며 보호구역면적도 가장 클뿐만 48%를 차지한다. 따라서 강원도민은 시행되면 현재 강원도와 각 시·군이 추진하는 83개 사업 가운데 48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등 지역개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관광단 주민들은 최근 백두대간보호법 폐지와 불합리한부분위원회를 구성하고 백두대간보호법 전면 폐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태백시 주민들도 시내 곳곳에 플수막을 내건 채 백두대간보호법에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여회 의원들은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양군에 100여개 시민단체도 지난 6일 백두대간보호법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불교계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월사단 보현사 법광사 등 신도들과 지역주민 200여명은 지난달 30일 강릉시와 동부지방산림청을 각각 방문, 백두대간보호법 철폐를 요구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오대산 월정사도 지난 4월 교구종회를 열고 68개 말사 주지승려와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입장' 이란는 성명서를 발표, 보호구역과 완충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조계종단 소속 174개 사찰의 7200만여평의 임야와 200만여평의 토지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혜 불확실 =20년 전인 주민들의 이해와 지역실정에 맞는 보호면적조정이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보호구역 면적을 축소하고 사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선매수·추지정'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이종인 자연환경제관은 "백두대간의 상위인 핵심구역을 보호한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며 "폭넓게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범위를 재조정하고 지정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보전해야 할 지역은 반드시 넣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백두대간보전회 이이재 운영위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나 업자이 대규모개발은 어려워지겠지만 주민들에게 산림관리를 등인 산림노동 주는 방법을 다해야해 주면들에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이시영기자 sylsyl@munhwa.co.kr

강원도 태백시내 곳곳에 '백두대간보호법' 을 반대하는 플수막이 걸려 있다.

● 서울신문 6면 2004년 9월 15일 수요일

내년시행 백두대간보호법 강원 등 해당지역 주민 반발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백두대간보호법의 핵심인 보호지역 지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림청 역시 이같은 반발을 의식, 주민 생존권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유연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에서 보호지역 지정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도 시·군 백두대간투쟁위원회 회원 등 1000여명은 14일 경북대전청사에서 백두대간보호법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강릉·태백시와 평창·고성·정선·양양군 등 강원도내 6개 시·군 주민들은 백두대간보호법은 지역실정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시행에 앞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년인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5년으로 단축 ▲보호지역내 사유지의 국가 또는 지자체 매수 의무화 등을 담은 호소문을 산림청에 전달했다.

경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강원도 시·군 백두대간투쟁위원회 회원 등 1000여명이 14일 경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백두대간보호법'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역민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산림청에 전달했다. 경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 대전일보 6면 2004년 9월 15일 수요일

"백두대간보호법 폐지"

백두대간 보호면적 축소될 듯

산림청, 주민피해 최소화 방침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이 지난 8월 말 6개 도 32개 시·군에 제시된 기초도면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말 1차로 제시된 보호지역 기초도면이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합리적인 조정작업을 거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호지역 제외 기준은 자연마을, 취락지구 등 도시화된 지역과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구상 중인 개발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최태영 기자

● 대전매일 7면 2004년 9월 15일 수요일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을" 강원도민 대전청사서 농성

백두대간 인근 강원도 고성, 양양군 등 6개 시·군 지역 주민 1000여명이 14일 정부 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백두대간 보호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대홍 기자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을'

강원도민 대전청사서 농성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강원도 고성·양양군 등 6개 시·군 지역 주민 1000여명은 14일 오후 1시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원의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농성을 통해 현행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시킨 탁상공론적 법안으로서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10년인 기본계획 수립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할 것 ▲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 시설 증·보후주택과 관련된 시설의 증·개축 허용 ▲농어가주택 신축 허용 등을 요구하는 청원문을 산림청장에게 전달했다. /최재구 기자

● 중도일보 11면 2004년 9월 15일 수요일

"숲을 숲답게" 금수강산 수호천사

산림청 '산림보호과'

"숲을 숲답게, 21세기는 숲입니다"

산림청 산림보호과 직원들은 부서 이름처럼 숲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그동안 잘 가꾸고 지켜온 숲을 더욱 숲답게 보호하는 일이 이들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과는 산림보호계, 방제계, 산림환경계, 백두대간보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산불내의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 산림병해충 예방·구제 활동, 산림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하루해가 부족할 분야다.

최근에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우리 민족의 정기를 품고 있는 백두대간(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을 보전하기 위해 백두대간보전팀을 새로이 구성해 백두대간 보전지역 지정과 훼손지 복원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호지역 지정 축소와 지정 반대 여론이 있어 합리적인 보호지역지정을 위해 전방권 산림보호과장과 정림원이 합심하여 분발주야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은 과거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입재의 입목수량과 임산면료 사용 등으로 한반도의 산림이 대부분 황폐화 되었으나 지난 30년 동안 온국민이 합심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어 세계에서 유례없는 산림녹화국이 됐다. 그러나 매년 전국적으로 약 2000여건의 산림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산림보호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산림보호 대책 수립과 예방 및 단속을 하는 한편 지능화된 산림사범을 조기에 뿌리 뽑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1800명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다.

"벌레가 집승보다 더 무섭습니다." 산림보호과 직원 중 체격이 가장 좋은 김영환사무관의 이러한 위인 말이다. 숲을 망치는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나무 소나무를 재선충으로부터 구출하라는 특명이 내려졌다.

전체 나무의 약 27%를 차지하는 소나무에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박멸하기 위해 종합방제 체제를 구축하여 방제를 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에 자생하는 약 4158종의 식물종의 보존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과는 특정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면서 생물종다양성의 보전·증식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설치해 다양한 식물종의 관리 및 전시는 물론 이의 자원화와 아울러 학술적·산업적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생태숲조성으로 국민들에게 산림문화공간 미련은 물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산림보호과는 산림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역적 숲 복원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우리 꽃 등 자생식물 식재사업을 통하여 지역별 고유경관 회복 및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자생식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방권 산림보호과장은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산림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러분들께서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자랑스러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산림보호의 감시 감독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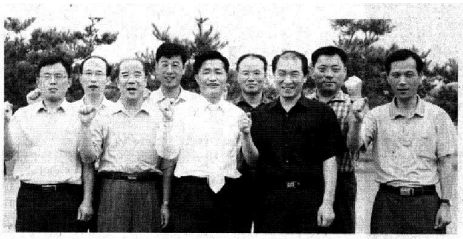

산림청 산림보호과 직원들이 "앞으로도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매년 2000건 피해…병해충·불법행위 단속
산림수목원 설치 등 '문화·휴식공간' 마련
"현재 인력 빠듯…국민도 보호활동 동참해야"

● 네이버뉴스 2004년 10월 12일 화요일

백두대간 대청소

산림청은 오는 20일까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백두대간내 쓰레기 수거, 아생동물 밀렵도구인 덫 · 올무 등을 제거하는 3회 백두대간 대청소를 설악산 등지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12일 설악산 설악동에서 시민 · 시민단체 · 공무원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소와 함께 시작된다.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백두대간 대청소는 산림청과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후원하며, 민간단체인 한국산지보전협회 · 백두대간 보전회 · 월간 사람과 산이 참여한다.

(심재흡기자 [jys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림청 백두대간 산상토론회 개최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동부지방산림관리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 4일 태백시와 함께 백두대간 산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백두대간 보전과 지역산림 육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는 이 번 산상 토론회는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산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들이 상화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협력운동 '푸른 산림가족 매듭잇기' 행 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백두대간 7부 능선에 위치한 태백시는 시 전체면적 3만여ha 가운데 89%인 2만7 천여ha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byh@yna.co.kr (끝)

● 연합뉴스 2004년 10월 12일 화요일

산림청 백두대간 산상토론회 개최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동부지방산림관리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4일 태백시와 함께 백두대간 산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백두대간 보전과 지역산림 육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산상 토론회는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산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들이 상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협력운동 '푸른 산림가족 매듭잇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백두대간 7부 능선에 위치한 태백시는 시 전체면적 3만여ha 가운데 89%인 2만7천여ha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byh@yna.co.kr
(끝)

● 동아일보 A27면 2004년 10월 13일 수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정부안의 11%로 축소를"

전북도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북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5061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환경부와 산림청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는 백두대간의 맥이 끊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장수군의 2014년 동계올림픽 시설 예정지와 경주마 목장 조성 사업지는 보호지역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작성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계획안 가운데 전북지역 해당면적은 남원시와 무주, 장수군 등 3개 시군에 4만7403ha에 이르며 이 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광오기자 kakim@donga.com

● 한겨레 22면 | 2004년 11월 2일 화요일

백두대간은 지켜야 한다

독자칼럼

내가 사는 마을도 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인지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농지전용 허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도 승인받을 수 없는 대규모의 첨세 서식지가 있는 장소에 지방 유지는 레미콘 공장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또 마을 공동 간이 상수도 위에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어 가축 분뇨통을 설치하고 펜션이 난립하여 많은 농가들이 수십년을 마셔오던 물도 먹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거기다가 수십년을 자생한 풍치림인 적송들을 부자들의 정원과 도시와 골프장에 팔아넘기고 풀도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듯 개발과 자본이 우선시되다 보니 환경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을 무시하는 개발은 아들과 두려운 우리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농지법 개정을 앞두고 무분별한 농지전용 개발허가로 요 몇년 동안 우리의 생활 주변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이자 민족문화의 근원지인 국토의 중추를 보호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법이 공포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탁상 보호법이며 백두대간보호법은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방 언론을 통하여 연일 성토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 환경청을 폐지하여 그 감시 기능마저 지자체에 달라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달라는 것이 아닌가?

서울 압구정동에 백로가 날아들게 하자면 서울을 다 팔아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기 나빠 물 나빠 먹거리 없는 한강을 보고 날아올 백로가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농부들이 얼굴에 가난의 흰꽃이 피어도 부자동네보다 맑은 물과 공기를 대물림할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후손에게 자랑스러울까.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서야 이른바 부자바람 가진자의 논리인 개발이 검토되어야 한다. 수도권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왜 굳이 강원도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걱정하는 도민이 의외로 적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의 사유림 70% 이상이 외지인의 소유로 있고, 개발은 결국 가진자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자본이 없는 다수의 농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점점 내몰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백두대간 보호법의 제척은 자본을 가진 자와 지방권력을 위하여 국민과 현지의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마저 잃는 재앙의 묻만 처지하게 할 것이다. 개발로부터 백두대간만은 보존되어야 하며, 이곳을 묵묵하게 지켜온 농부들에게는 환경 직불제 등 적절한 환경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환경과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 결합된 난개발이라는 인간의 지나친 탐욕이다. 이런 이유로 백두대간 보호법은 제척할 수 없다.

정설교/
강원 횡성군 횡성면

● 한겨레 26면 | 2004년 9월 24일 금요일

백두대간을 다녀와서

독자칼럼

10년 전 '백두대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산림공직자로서 가슴이 뛰었다. 우리의 산과 들을 모두 어우르고 있는 백두대간이야말로 산림행정의 가장 큰 영역이 아니겠는가? 1995년에는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자병산을 살려내기 위해 시멘트 채광을 일시 중단시켜 가면서까지 관계부처와의 어려운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채광은 다시 허용되었고 우리 땅에서 그 아름답던 자병산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어 백두대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백두대간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데 대해 6개 도, 32개 시·군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백두대간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 재산권의 보호나 지역주민의 보상 또는 지원책이 없는 보호지역 설정은 안 된다는 것이다.

18일에 산림청 간부들과 직장협의회, 여직원회 회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탐방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을 탐방하고 이어서 남원 노치마을을 찾았다. 노치마을은 백두대간 마루금이 마을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마을이다. 현지에 도착하니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느티나무 주변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백두대간을 지켜온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찾아와 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고, 온몸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모두 한 마을 주민이 된 듯했다. 백두대간 마루금이 마당 한복판을 지나는 집도 함께 둘러보았고, 마을 이장님께서 마당 한가운데서 어떻게 물길이 갈라지는가도 설명해 주셨다. 우리는 3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주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백두대간법 폐지하라'는 플래카드를 지나 우리는 마을을 떠나 왔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풀어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민과 거짓 없는 대화를 하는 일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 백두대간을 지켜온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백두대간에 터 잡고 살아가면서 대대손손 물려줄 자연자산으로 지켜줄 때만이 백두대간은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산림청의 현장탐방은 진실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조연환/산림청장

● 강원일보 2면 | 2004년 10월 9일 토요일

백두대간 주민 생존대책 요구

조일현의원 국감서 제기…보호구역 축소·사유재산권 보장등 요구

"지자체 참여없는 백두대간 보호 가능한가" 지적

【서울】백두대간보호법이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8일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가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조일현(홍천-횡성)의원은 "백두대간을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지역의 상당부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지연되는 지방에서는 이법 제정으로 낙후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대지 등 사유재산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보호구역을 축소해 줄 것 그리고 생존권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국립공원지역 군사보호시설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없는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이 더이상 생활터전과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적절한보상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김우남의원도 "산림청이 지난 6월25일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기초도면을 해당 자치단체에 보내 7월말까지 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9월말까지도 강원 전북 전남 충북 등 4개 지자체가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자체의 참여없이 백두대간을 보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지자체에 보낸 기초도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고 획일적으로 작성됐는데 이는 법 통과후 이행을 위한 준비가 소홀한 것이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맡기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최용안산림조합중앙회장은 "백두대간보호법에 대한 전반 입장을 묻는 조일현의원의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백두대간 보호법에 반대한다"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宋敏圭기자·jhsong@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2면 | 2004년 11월 2일 화요일

백두대간보호지 지원 거부

시·군 연대 반대투쟁委 "현행 보호법 인정 못해"

[강릉] 속보=산림청이 최근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시·군 연대 반대투쟁위원회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동조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 도내 반두위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 등에서 각 군당 마을의 소득 지원사업을 선정,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각 지자단체를 통해 대상 사업을 파악중이다.

도의 경우 총 2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12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2억2500만원을 투입해 주민 소득 및 숙원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계획이다.

그러나 도 연대 반두위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요구가 명분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수용할 경우 현행 보호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비쳐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강릉의 경우 모두 20개 리(里)가 보호지역에 포함돼 있어 리(里) 별로 나눈 경우 평균 776만원밖에 배정되지 않아 보호지역에 적은 면적이 지역 등과 협력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전체 예산에서 지방비, 부담이 30%에 달하는데다, 읍·면 등 일부가 시·군비 형편 등 건의에서 기득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대폭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제한요구에 대한 산림청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대표단을 구성, 정부와 [illegible]

● 조선일보 14면 | 2005년 1월 4일 화요일

백두대간 시무식

3일 대관령 마루금(정상)에서 열린 산림청 시무식에서 조연환청장(앞줄 가운데) 등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산림청제공

백두대간서 시무식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첫해를 맞아 3일 임업인들과 함께 백두대간 정상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백두대간 마루금(정상)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조연환 산림청장 등 산림청 직원, 임업인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대간 보호와 일류부처 도약을 위한 다짐문, 산림현장 낭독 등의 행사를 가졌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에서 시무식을 가짐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참여임정, 현장 임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신문 7면 | 2005년 1월 4일 화요일

강풍 · 눈보라속 "백두대간 보호" 합창

산림청직원·임업인 250여명 대관령정상서 시무식

"백두대간 보호 원년을 맞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귀중한 자연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할 것을 다짐합니다."

조연환 산림청장 등 산림 공무원과 임업인 등 250여명이 을유년 업무를 강풍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백두대간에서 힘차게 시작했다. '산사람들'은 3일 오후 3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대관령 정상(해발 950m)에서 현장 시무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원년을 맞아 백두대간 보전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청 이래 백두대간에서의 첫 시무식일 뿐 아니라 임업인과 산림경영인 등이 동참한 이례적 자리였다. 특히 이곳은 산림청이 지난 2002년 백두대간 생태복원을 위해 13ha에 전나무와 분비나무 등을 조림한 곳이기도 하다.

산림청 남성현 기획관리관은 "이번 행사는 백두대간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엄원과 현장 속에서의 산림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혁신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든 초속 16m의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백두대간 보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산림현장 낭독에 이어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백두대간 보호를 다짐했다.

조연환(앞줄 왼쪽 두 번째) 산림청장 등 산림 공무원과 임업인들이 3일 대관령 정상에서 시무식을 갖고 백두대간 보호에 일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조 청장은 신년사를 대신해 "우리를 맞는 마루금에서 바람은 거세고 기온은 차가우나 우리의 가슴은 불타고 기상은 드높다. 오라 산이여, 오라 숲이여, 오라, 나무들이여…."라는 내용의 자작시를 낭송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거센 바람과 눈보라를 통과 선자령(1157m)까지 4km에 달하는 등반에 나섰다.

조 청장은 행사가 끝난 뒤 "숲이, 특히 백두대간이 난개발과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부서이자 산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업후계자 김규석(44·전북 순창군)씨는 "올해는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는 원년이어서 오늘 행사는 매우 뜻깊다."면서 "우리의 외침이 백두대간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촉발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두대간 주요 봉우리

횡계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 충청투데이 11면 2005년 1월 4일 화요일

산림청, 백두대간서 시무식

산림청, 백두대간서 시무식 산림청은 대관령 백두대간 마루금(정상)에서 직원 및 임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산림청·임업인 합동 시무식을 개최했다.

● 중도일보 8면 2005년 1월 4일 화요일

산림청, 대관령 시무식

산림청, 대관령 시무식 산림청은 3일 오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원년을 맞아 대관령 백두대간 마루금 정상에서 직원 및 임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합동 시무식을 갖고 백두대간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강원일보 20면 2005년 1월 4일 화요일

산림청, 백두대간 정상서 합동 시무식

산림청, 백두대간 정상서 합동 시무식

[江陵]산림청이 새해를 맞아 백두대간 정상에서 임업인들과 함께 시무식을 갖고 임업을 일류산업으로 육성하고 양류 산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조연환 산림청장, 이경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등 산림청 직원들과 임업인 대표들은 3일 오후 대관령 백두대간 마루금인 횡창군 도암면 횡계리에서 합동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연환청장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을 수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청장은 특히 "여러게 확보한 백두대간보호구역 주민들의 소득 특화사업과 사유지 매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메서운 추위 속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으로 변화와 혁신을 일상화하고 일류를 지향하기로 결의했다. <[illegible]기자·dsgo@kwnews.co.kr>

● 중도일보 14면 2005년 6월 16일 목요일

백두대간 등산로 보호방안 마련

중부산림청 17일 토론회

중부지방산림관리청(청장 전범권)은 그동안 등산객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되고 있는 백두대간 등산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17일 오후 1시 관련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대간 묘적령' 현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악회 등과 함께 백두대간 등산로의 보호와 산림생태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등산객들의 잦은 왕래로 인하여 수목이 생육하기 힘들 정도로 노출된 뿌리와 벗겨져 움푹 파여진 등산로를 복구하는 방법, 등산객들을 위한 안전시설물과 각종 안내 표지판, 훼손된 자생식물 식재 방안 등이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올해 추진되는 등산로 보호·관리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산림청, 백두대간 정상서 시무식

백두대간 정상에서 시무식-산림청 / 산림청은 3일 2005년도 시무식을 눈보라가 휘몰아 치는 가운데 백두대간 마루금(정상)인 강원도 대관령 정....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첫해를 맞아 임 업인들과 함께 백두대간 정상에서 시무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백두대간 마루금(정상)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조연환 산림청장 등 산림청 직원, 임업인 대표 등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백두대간 보호와 일류부처 도약을 위한 다짐문, 산림현장 낭독 등의 행사도 가졌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관례적인 시무행사에서 벗어나 백두대간에서 시무식을 가짐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참여임정, 현장 임정을 실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있음)

seokyee@yna.co.kr
(끝)

〈사진-319〉 백두대간 정상에서 시무식 – 산림청

산림청은 3일 2005년도 시무식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백두대간 마루금(정상)인 강원도 대관령 정상에서 직원 및 임업인 등 250여명이 참가. 조연환 청장(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 등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형재/지방/ 2005.1.3
(강릉=연합뉴스)

〈사진-318〉 백두대간 정상에서 시무식 – 산림청

산림청은 3일 2005년도 시무식을 눈보라가 휘몰아 치는 가운데 백두대간 마루금(정상)인 강원도 대관령 정상에서 직원 및 임업인 등 250여명이 참가. 조연환 청장(앞줄 왼쪽에서 2번째) 등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형재/지방/ 2005.1.3
(강릉=연합뉴스)

● 한국일보 1면 2005년 1월 7일 금요일

100년 만에 엉터리 바로잡아 한반도 정확한 산맥지도 나왔다

■ 국토硏, 위성영상 등 이용 3차원 재현

위성영상 등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한 실측자료를 근거로 100년 만에 오류를 바로잡은 정확한 한반도 산맥지도가 나왔다. 정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6일 위성영상 처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분석기법과 각종 실측자료 등을 활용, 한반도 산악지형을 3차원으로 재현한 산맥지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1903년 일본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가 작성, 그동안 학계와 교육계 등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산맥지도와는 판이한 것이어서 앞으로 교과서 전면 수정 등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6-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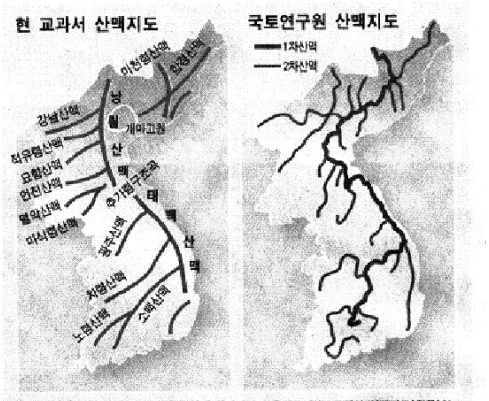

1903년 일본인 지질학자에 의해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산맥지도(왼쪽)와 국토연구원이 이번에 첨단실측 기법으로 완성한 새 산맥지도.
현행 교과서의 강남, 적유령, 묘향, 차령 등 여러 산맥들이 아예 실재하지 않거나 방향, 위치가 크게 잘못돼 있다. 특히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이 새 지도에는 두령이 한 줄기(1차 산맥)로 연결돼 있다.

14개 아닌 크고 작은 48개로 형성
교과서 전면수정 등 큰 파장 일 듯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 일본인 고토에 의해 정립된 현행 지리교과서나 사회과부도의 14개 산맥체계와는 달리 한반도에는 모두 48개의 크고 작은 산맥들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8개 산맥은 가장 고도가 높고 긴 주(主) 1차 산맥 1개와, 여기서 나뭇가지처럼 연결된 2차 산맥 20개, 3차 산맥 24개, 독립산맥 3개다. 또 낭림, 강남, 적유령, 묘향, 차령, 노령 등 상당수 산맥은 아예 실재하지 않거나 방향, 위치가 터무니 없이 잘못된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원은 특히 우리 국토의 '등뼈'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이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총 연장 1,494.3km에 걸쳐 전혀 끊김 없이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 현행 교과서는 백두대간 줄기에 해당되는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이 추가령구조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단절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완성된 3D 산맥지도는 조선 시대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산줄기 체계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대동여지도와 새 산맥지도는 구체적으로 백두대간 산줄기의 세세한 방향과 갈래는 물론, 개마고원 지역과 평안북도, 전라남북도 지역의 산줄기들이 자로 잰 듯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조만간 새 산맥도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rihs.re.kr)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 교과서의 수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리학계의 검토와 전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산맥 이름짓기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김영표 GIS연구센터장은 "새 지도는 오차범위 30m로 실제 한반도 산맥을 완벽하게 재구성한 것"이라며 "100년 이상 잘못 사용돼 온 산맥지도를 정부차원에서 처음 바로잡고, 일제에 의해 '창지개명(創地改名)'되다시피한 우리 산맥 이름을 되찾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정확한 산맥지도 나왔다 – 대동여지도는 정확했다

습자지 대고 그린 듯 새 지도와 일치

이번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1864)가 제작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정확성과 가치가 새삼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산맥의 방향이나 위치에 관한한 이번에 완성한 새 산맥지도와 대동여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마치 습자지를 대고 그린 듯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대동여지도상의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산줄기와 개마고원 지역, 평안북도 지역의 산줄기가 3차원 산맥지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의 산줄기도 동일했고, 전라남북도, 특히 지리산 주변 고흥 지역의 산줄기는 자로 잰 듯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연구원은 '북한이 1996년에 재정립해 내놓은 산맥체계나 산경표의 백두대간체계,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산맥체계 등과 달리 대동여지도의 산줄기체계는 연구결과와 매우 흡사했다'며 "남북한의 서쪽에 흩어져 있는 작은 산줄기들까지 산맥방향이 일치해 현대과학으로 볼 때도 (대동여지도의) 자료적 가치는 대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과학기법이나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지면 도무지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정호가 30여 년에 걸친 현장답사와 문헌조사 등을 통해 1861년(철종 12) 완성한 대동여지도에는 산맥뿐 아니라 하천과 바다, 섬을 비롯해 역참, 창고, 관아, 봉수, 목장, 진보(鎭堡), 성지(城址), 온천, 도로 등이 상세히 담겨져 있고 도로에는 10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표시했다. 20세기 초 일본 해군이 보유한 근대식 지도보다 더 정밀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인데 이번에 현대과학에 의해 다시 한번 그 과학성과 정교함을 인정받게 된 셈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한반도 산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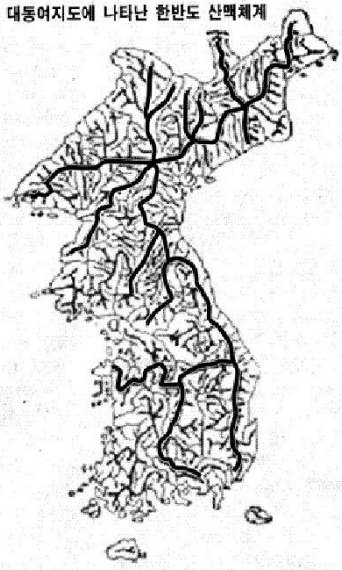

"있지도 않은 산맥 달달 외워온거죠"

■ 김영표 GIS연구센터장

"실제 산맥 교과서와 다르다" 주위 얘기듣고 연구 착수 매달 1~2회 산에 올라

"국토의 66%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산맥은 국토를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코흘리개 때부터 시작하는 게 산맥 이름 외우기 아닙니까? 그런데 100년 동안 있지도 않은 산맥을 달달 외워온 거지요."

이번 연구 책임자인 김영표(53) 국토연구원 GIS(지리정보시스템)연구센터장은 막상 3D 산맥지도가 완성되자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 역시 학창시절에 배우고 익힌 한반도 산맥체계가 이 정도로 오류투성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응용수학과 출신으로 국토연구원 공채1기인 김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GIS 분야의 1인자. 1980년대 말 GIS 기술을 처음 국내에 소개했고 95년부터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GIS구축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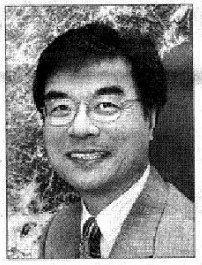

그는 산을 좋아하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자주 "실제 산맥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다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광대한 지형과 지질현황까지 정교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GIS 기법을 접목하면 이런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틈틈이 연구를 해오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산맥연구를 공식 연구과제로 선정한 뒤부터는 이 일에만 매달렸다.

고지도 등 관련문헌 조사부터 5,100개가 넘는 남북한 산지의 수치표고자료(DEM) 입력과 지형모델링 만들기, 위성영상 재구성 등 잔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도맡았고, GIS 재현만으로는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매월 1~2회 지리교사나 산악인들과 함께 직접 현장답사를 했다. '우리 산맥 바로세우기 포럼'이라는 별도의 연구단체까지 만들어 학술적 논의도 병행했다.

"지난해 말 연구의 개략적 윤곽이 나오면서부터는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져 휴일도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는 그는 이번 연구결과에 자부심을 보이면서도 기존 학계나 교육계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했다. "워낙 기존의 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라…. 하지만 정밀한 과학적 결과인 만큼 선뜻 수용하리라 믿습니다. 새 산맥이름만큼은 우리 정서에 맞게 아름답게 지어지면 좋겠네요."

변형섭기자

정확한 산맥지도 나왔다 – 백두~지리산 잇는 '등뼈' 백두대간 실제로 확인

위성영상처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의 첨단기술로 구현된 이번 3차원 산맥지도로 인해 남북, 적유령, 강남, 포평, 지령 등 우리 국민들이 학창시절 즐겨 외웠던 산맥들이 실제지도 위에 생생하게 살아나 드러났다. 1903년 일본인 지질학자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郎)의 낡은 이론을 아무런 과학적 검증도 없이 맹종해 온 국내 학계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국민 학교의 교과서 수정 및 개편 등 상당한 후 폭풍이 예상된다.

교과서 항목은 산맥은 '오류투성이' 이번 3차원 산맥지도는 무엇보다 우리 국토의 '등뼈'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이 일본의 식제품을 보여준다. 남북한의 주요 지형을 입체영상으로 재현한 결과 백두산에서 두류산, 금강산, 설악산, 속리산,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총 연장 1,494.3km의 거대한 산줄기가 한 산맥가 아무런 끊김 없이 뚜렷하게 형성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일본 교과서 산맥체계에는 등뼈에 해당되는 남북산맥과 태백산맥이 한반도 중·북부를 가로지르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 교과서에는 전혀 누락돼 있다.

"중간서 단절" 교과서 내용은 잘못

강남·적유령 산맥은 이제 존재 안해

100년전 日학자 創地改名 맹종한 셈

실제에 근접한 산경표의 백두대간 체계

부의 후기생구조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단절돼 있는 것으로 돼 있다. 18세기 말에 편찬된 지리서 산경표(山經表) 이래 우리 민족의 국토 인식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이 고의든, 아니든 간에 일제에 의해 절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구나 현행 교과서 지도에 북한의 지경도 백두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강남산맥이나 평안북도의 적유령산맥은 실제로는 아무런 산줄기조차 없는 지역이었고, 평안남북도에 걸쳐 있는 포평산맥 역시 지도화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산줄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릉산맥과 태백산맥에서부터 서해안 방향으로 뻗은 것으로 돼 있는 연천, 평강, 치령, 노령산맥 등은 이번 조사결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맥은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지질조사소가 1914년 산맥체계를 그리면 제작고 있다. 그 동안 산악 지형에 있은 산지인들 사이에서 교과서 산맥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이 지주 제기됐지만 그동안 지리학자들은 고토분지로가 그린 산맥을 한 말의 지질 및 인총구조를 근거로 한 대문에 실제 외형적인 지형과는 다를 수 있지는 논리로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결은 반박논리 역시 타파시켰는 남북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재현된 산맥 가운데 한반도에서 가장 고도가 높고 주(主)산맥을 1차 산맥으로, 다시 1차 산맥의 나뭇가지처럼 서로 연결된 산맥들을 규모에 따라 2차(20개)와 3차(24개) 산맥으로 구분했다. 도 1, 2, 3차 산맥의 는 연결도에 있어 암기만 잘했 주요 이상의 연속된 산맥이 형성돼 있는 곳을 '특별산맥'으로 표시했다.

주산맥은 가장 높은 고도의 백두산에서부터 발원해 두류산 금강산 태백산을 지나 남쪽의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총 연장 1,494.3km의 연속된 산지로 이뤄져 있다. 수직 절벽에 정상부분의 심하게 가파른 것은 이른 산맥에는 고유이름 대신 번호를 매겼다. 2차 산맥은 20개 북쪽에서부터 주산맥에 연결된 순서대로 1번(MR2-1)에서 20번(MR2-20)까지, 2차 산맥과 연결된 3차산맥도 1번(MR3-1)에서 24번(MR3-24)까지의 번호를 부여했다. 특별산맥은 함경도 무릉산 주변,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걸친 삼각산(북한산) 주변, 남해안에 걸쳐 있는 산맥 등 3곳에 형성돼 있다.

새 산맥이름 논의 거쳐 짓기로

정작 변모로 바뀌진 산지들은 없으로 학술적 논의와 지명인 공공수렴 등을 거쳐 국민 등 사이에 통용되는 것 이름 등 정해 진다.

국토연구원이 정한 과학기법을 통해 완성한 한반도 산맥지도는 현행 산맥체계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를 보여준다. 발하자면 우리 스스로 우리 국토의 모습을 100년이 넘도록 '오해'해 왔다는 셈이다.

국토연구원 새 산맥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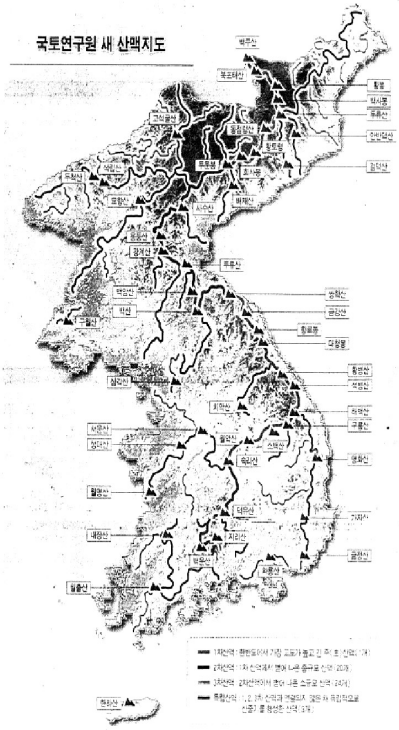

새 산맥지도 어떻게 만들었나

각종 데이터를 GIS로 재현 지도상 오차 30m에 불과

국토연구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맥의 기준(산상(稜線)이나 산상(稜線))으로 잘게 연속되어 있는 지형을 근거로 산맥을 분류했다. 예컨대 산봉우리가 잘게 연속된 지형 가운데 어느 정도 뚜렷가 있는 산줄기만을 산맥으로 분명하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현행 교과서 산맥체계 14개 산맥보다 3배 이상이나 많은 48개의 산맥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맥들은 컴퓨터 평면의 상기에 대한 수치표고모델(DEM)과 지질현황도, 위성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뒤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공간분석기법을 통해 재현했다. 지도상 오차가 30m 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산맥지형을 그대로 축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변형설기자 hspeed@hk.co.kr

● 동아일보 31면 | 2005년 1월 11일 화요일

다시 찾은 백두대간 산맥지도

문화칼럼

다시 찾은 백두대간 산맥지도

양 보 경
성신여대 교수·지리학

학문과 이론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세계관, 사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대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각, 방법, 절차 등도 변한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위성 영상을 이용한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는 수치표고 모델(DEM), 인공위성 영상자료, 지리정보체계(GIS) 등 새로운 도구와 방법이 학문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준 좋은 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의 활용에는 사고의 전환이 먼저 있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우리나라 산맥체계에 대해서는 1980년대부터 재야에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전통적 산맥체계의 중심이었던 '백두대간'의 개념이 생태, 환경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백두대간보호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1903년 일본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의 이론을 근간으로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해 온 현행 교과서의 산맥체계와 다른 체계를 제기하였다. 새로운 산맥의 내용은 오히려 전통 고지도에 보이는 산맥체계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많은 사람이 조상의 지혜에 감탄하며, 현행 산맥체계의 이름을 하루빨리 바꾸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산맥 이름을 바꾸기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산맥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고토는 밤이지를 끌고 14개월을 조사해 현 산맥체계의 바탕을 만들었다.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본인이 답사한 지역의 지질구조를 바탕으로 정리한 산맥체계는 정확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부정확했던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번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몇 명의 인력이 1년 동안 작업을 한 것이다. 첨단 자료와 기법을 이용했으나 현지조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지형 연구는 현장답사가 생명이다. 산맥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갈라지는지 파악하는 것은 지형도나 영상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정밀하고 정확한 한반도 산맥체계를 정립하려면 남북한 지리학계 등과의 광범위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우리의 전통 산맥체계에 관한 연구도 더 정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 전통 산맥체계 연구에서 교과서가 되는 책이 '산경표(山經表)'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지도에 표현된 내용과 '산경표'의 내용도 완전히 같지 않다. 현행 산맥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전통 산맥체계의 이름도 분명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맥체계에 대한 이름의 정립에 학계는 물론 일반의 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는 기간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에 관한 학생 교사 등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름 바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맥이 지니는 의미들 되새겨 국토의 훼와도 같은 산지를 황폐화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계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일반인의 환경인식과 국토사랑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산경표'는 1800년경, 즉 19세기 초에 쓰였으며 고토의 '조선산악론'은 20세기 초에 발표됐다. 다시 100년 뒤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한반도 산맥체계를 발표했다. 이제 21세기의 산맥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일에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 조선일보 15면 | 2005년 1월 25일 화요일

자연의 보고, 백두대간이 울고있다

'환경스페셜' 백두대간 실태 조명

지난 1일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백두대간의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설악·태백·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1625㎞ 길이의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줄기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 삵·담비·수달 등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15종으로 대부분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대상종이다.

시행된 법률대로 백두대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KBS 1TV가 오는 26일 밤 10시부터 방송되는 '환경스페셜-2005 백두대간을 가다'를 통해 그 실태를 살핀다.

'환경스페셜' 제작진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백두대간의 200여㎞ 구간을 종단했다. 이들의 카메라에 잡힌 백두대간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제작진이 찾아간 강원도 인제군 진동계곡은 최고의 자연 생태계를 간직한 곳이다. 하지만 진동계곡에는 조만간 양수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 댐 건설 공사 때문에 상류로부터 오염된 물이 하류로 흘러들어가는 인근 지역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산천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임도(林道)를 통해 불법 벌목과 밀렵이 횡행하는 모습도 '환경스페셜'팀은 고발했다. 임도는 목재·목피·버섯 등 각종 임산물(林産物)을 운반하기 위해 만든 도로. 이곳에서 200~300년 가량된 적송(赤松)을 불법 벌목하는 한편, 전문 밀렵꾼들이 임도를 통해 곳곳에 올무를 설치한 모습들이 포착됐다. 올무에 걸려 신음하는 멧돼지와 노랑목도리 담비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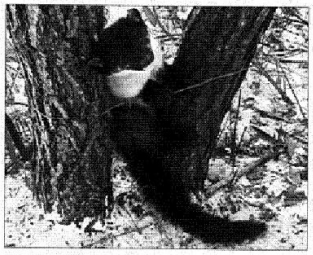

올무에 걸린 노랑목도리 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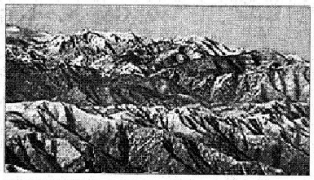

백두대간을 이루는 금강산의 설경.

이 외에도 제작진은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설치한 구룡령 생태 터널이 등산객들의 이동 통로로 전락한 모습, 마구잡이식 석회암 채굴 작업으로 산 전체가 60m나 깎여나간 자병산의 실태 등도 함께 보여준다.

'환경스페셜' 배성호 PD는 "자병산 복원 작업이 최근 시작됐지만,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것이 많다"며 "단계적인 복원절차와 지속적인 관리 등 보존을 위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블로그)danpa.chosun.com

● 전북중앙일보 2면 | 2005년 3월 7일 월요일

백두대간 여론수렴 돌입

산림청, '토요현장 토론의 날' 운영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일 년을 맞아 산림청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론 수렴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은 백두대간법이 올해 1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되기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토요 현장토론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요 현장토론의 날'은 오는 3월 5일 토요일 남원시 주천면 일대를 시작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마무리되는 6월 19일 강원도 고성까지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방문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지역주민들과의 토론을 통한 지원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인근 백두대간지역의 마을, 도로, 농경지, 훼손지 및 역사·문화·자연생태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된 자료는 백두대간보호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토요 현장토론의 날"이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그 첫번째 시도로 5일 오전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일대를 방문, 남원시청 산림과 관계자와 지역 시의원·도의원, 백두대간보호법 반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요 현장토론의 날'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산림청 관계자들은 지난해 7월 전북에서 제출한 자료를 수정한 2차 시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남원시측과 수정안에 나온 조율작업을 방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지자체 등과의 의견을 제수렴, 협의를 거쳐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백두대간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증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및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1개 시·군당 2억2천500만원씩 총 72억원을 산림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적극 매수할 계획이다.

/김민규기자 blog.naver.com/cc_c

● 전북일보 9면 | 2005년 3월 7일 월요일

"지역민 소득·복지증진반영"

산림청, 남원서 백두대간 보호지정 주민의견 수렴

산림청이 지난해말 통과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남원을 비롯해 전국 해당 지역을 돌며 지원사업 등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서부지방산림관리청 관계자들은 6일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보호지역을 찾아 운봉읍 이장단과 주민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요현장 토론의 날 행사를 갖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정작업중인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기초(안)을 비롯해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형, 지질, 생태, 훼손지 등 조사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부지방산림관리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경제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2개 시군에 총 72억원을 산림소득 특별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다른 곳과 비교해 낙후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방 산림관리청은 이를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증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및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1개 시군당 2억2,500만원씩 총 72억원을 산림소득 사업비로 지원키로 했다.

또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적극 매수하며 산간오지에 있는 사유림은 물론 불가피하게 현업 농경지 등도 매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운동권 일대 주민들은 운봉읍 매요리와 장교리 마을을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등산로 입대 화장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과장은 "앞으로 의견조율을 거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남원시 주천면 일대를 시작으로 오는 3월19일까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돌며 현장토론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남원=김수현기자 · kob5351@

● 강원일보 21면 | 2005년 3월 3일 목요일

백두대간 탐방로 보호대책 시급

종주자 年 1만여명 산림훼손 심각
종주노선 결정…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東海】국내 최장, 최고의 등산로로 꼽히는 백두대간 종주 등산로 전 구간의 지정탐방화와 시설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시민단체인 백두대간보전회는 최근 발간한 '백두대간 환경대탐사 보고서'에서 백두대간 등산로를 이용하는 종주자들이 연간 1만여명을 넘어서면서 비지정 탐방로와 자연생태보전지역, 자연휴식년제 시행으로 출입이 금지된 구간도 무리하게 통과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백두대간 종주자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기보다는 백두대간 종주자들이 통과하는 동선을 파악해 종주노선을 결정하고 전 구간을 지정탐방로로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훼손된 백두대간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형복원및 지반안정화를 시행한 후 주변 훼손지 식물생육기반 조성과 생태숲 식생복원 등 주변 훼손지에 대한 자연생태복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이재 백두대간보전회운영위원장은 "백두대간 종주자들이 연간 1만명을 넘고 있는 현실에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의 정비는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여러과제 가운데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며 "등산로는 시설보다는 평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백두대간 주민들에게 등산로 관리책임과 소요예산을 뒷받침해주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朴永昌기자·chang@kwnews.co.kr>

● 연합뉴스 2005년 8월 30일 화요일

강원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13만3천여ha 확정

이총리.백두대간 보호위원회 회의 주재 / 이해찬 총리가 3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백두대간 보호위원회에 앞서 조연환 산림청장으로부터 ....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12개 시.군의 40개 읍.면.동에 걸쳐 지정 예정인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당초 산림청의 시안보다 37% 감소한 13만3천908ha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보호지역 지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당초 산림청 시안 21만4천240ha보다 8만332ha가 감소했다.

그러나 도내 지정 면적은 전국 6개 도, 12개 시.군의 103개 읍.면.동이 포함된 지정면적 26만3천427ha의 51%로 가장 많은 면적이다.

최종 지정면적 중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에 인접해 보전가치가 요구되는 핵심구역은 9만4천143ha, 개발행위 허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완충구역은 3만9천765ha이다.

소유별로는 국유지 12만1천668ha(91%), 사유지 1만1천407ha(8%), 공유지 833ha(1%)로 법인소유 등을 제외한 개인소유 사유지는 0.6%이며 지목별로는 임야 13만31천32ha(99.4%), 전.답 117ha(0.1%), 기타 659ha(0.5%) 등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면적이 산림청 시안보다 대폭 줄면서 당초 보호지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됐던 83개 사업 중 74개 사업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으며 9개 사업만이 보호지역에 편입됐다.

도 관계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주민 생활안정 및 균형발전을 위해 백두대간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6면 2005년 8월 31일 수요일

백두대간 보호구역 설정

백두대간 보호구역 설정

이해찬(왼쪽)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개최에 앞서 조연환 산림청장으로부터 백두대간 보호구역 설정 범위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

● 한국일보 8면 2005년 8월 31일 수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8억坪 확정

백두대간 보호지역 8억坪 확정

국토 2.6%… 개발 엄격제한

정부는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백두대간 보호위원회를 열어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을 중심으로 총 26만3,427ha(약 8억평, 여의도의 1,000배)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강원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 6개도 32개 시·군에 걸쳐 연속성을 가진 산 마루금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됐다.

보호지역은 국토의 2.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역별로는 강원이 13만3,908ha로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경북(4만7,841ha), 충북(3만5,616ha), 경남(2만2,952ha), 전북(1만7,887ha), 전남(5,223ha) 순이다. 보호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국유지가 20만8,984ha(79%), 공유지 1만9,905ha(8%), 사유지가 3만4,538ha(13%)이며 핵심구역(16만9,950ha)과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9만3,477ha)으로 구분해서 지정됐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올 1월 발효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훼손됐거나 단절된 백두대간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유지 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현황

● 한국경제신문 11면 2005년 8월 31일 수요일

강원도 향로봉 ~ 지리산 천왕봉 백두대간 보호지역

강원도 향로봉·지리산 천왕봉

백두대간 보호지역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백두대간 보호위원회를 열어 26만ha에 이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하나인 백두대간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 즉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 시작해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산 능선 및 주변 지역에 지정됐다. 보호지역은 핵심구역(16만9950ha)과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9만3477ha)으로 구분해 지정됐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 중앙일보 8면 2005년 8월 31일 수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8억평 확정

여의도의 1000배에 이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백두대간 보호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확정했다. 6개 도, 32개 시·군을 통과하는 보호지역은 모두 26만3000ha(8억 평)로 국토의 2.6%에 이른다. 정부는 보호지역에서 군사시설·도로·하천·철도 등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 외에는 건축을 금지하고,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 강원도민일보 2면 2005년 8월 31일 수요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최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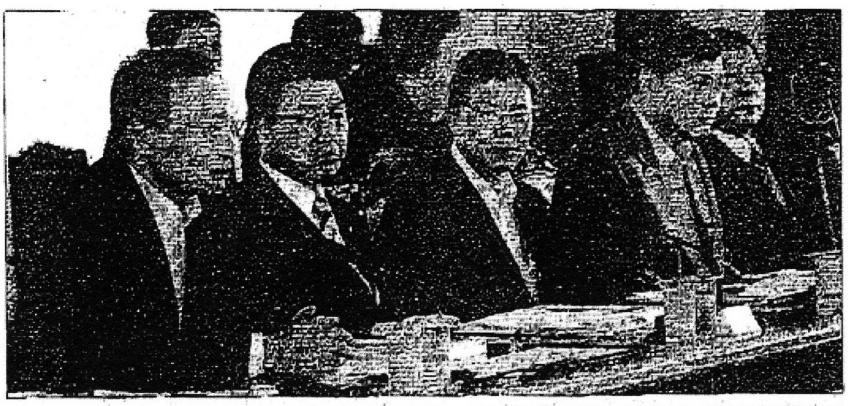

백두대간보호위원회가 이해찬 국무총리(왼쪽) 주재로 30일 정부종합청사 9층 국무조정실에서 김진선 도지사(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련지역 도지사 및 부지사와 백두대간보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심의 확정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은 전국적으로 6개도의 32개시·군 26만3427ha이며 도내에는 12개시·군에 13만3908ha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최종 확정

내달 중 지정·고시…관련법 12월 시행

속보=정부는 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김진선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12개 시·군 13만3908ha를 포함한 전국 6개 도 32개 시·군 26만3427ha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면적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 중에 이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정된 도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면적은 당초 산림청 시안 21만4240ha에 비해 37%가 감소한 것이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지역 안에서 농가주택·농림축산시설, 교육·홍보시설, 묘지·납골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호 leeho@kado.net

● 강원도민일보 1면 2005년 8월 30일 화요일

道 백두대간 보호지 13만3908ha

전국 지정면적 26만3427ha중 51% 해당…당초안보다 37% 줄어

오늘 정부 최종 확정

도내 12개 시·군의 40개 읍·면·동에 걸쳐 지정예정인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당초 산림청의 시안보다 37% 감소한 13만3908ha로 확정됐다.

그러나 도내 지정면적은 전국 6개도, 32개 시·군의 103개 읍·면·동이 포함된 지정면적 26만3427ha의 51%로 가장 많은 면적이 포함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면적 조정 결과, 도의 경우 당초 산림청 시안 21만4240ha에서 13만3908ha로 8만332ha가 감소했다.

특히 전체 지정면적 기준에 기존에 공원구역, 산지전용제한구역 등 다른 법률로 제한받고 있는 법정보호구역이 9만5487ha이어서 순수한 백두대간보호구역 적용면적은 4만9695ha로 줄었다.

도는 조정안으로 13만3817ha를 제시했으나 향장 한일목장 국유림 내부지역 초지조성지 91ha를 추가 반영시키는 것으로 최종 면적을 확정했다.

최종 지정면적 13만3908ha 가운데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에 연접해 보전가치가 요구되는 핵심구역은 9만4143ha, 개발행위 허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완충구역은 3만9765ha이다.

소유별로는 국유지 12만1668ha(91%), 사유지 1만1407ha(8%), 공유지 833ha(1%)이며 지목별로는 일야 13만3132ha(99.4%), 전·답 117ha(0.1%), 기타 659ha(0.5%) 등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면적이 산림청 시안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당초 보호지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됐던 83개 사업 중 74개 사업이 보호지역에서 제척됐으며 9개 사업만이 보호지역에 편입됐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최종 지정 면적은 3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김진선 지사 등이 참석해 열리는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포함되는 만큼 주민 소득지원과 훼손지 복원·복구사업의 정부차원 전폭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호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시·군별 편입면적 단위:ha

시·군	산림청 시안	백두대간보호지역(안)면적			증△감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계	214,240	133,908	94,143	39,765	△80,332
정선시	37,718	29,383	17,996	11,387	△8,335
동해시	5,971	4,156	2,088	2,068	△1,815
태백시	17,095	5,116	3,813	1,303	△11,979
속초시	5,140	4,099	4,099	-	△1,041
삼척시	12,979	9,331	5,133	4,198	△10,648
강원군	10,455	6,909	3,811	5,098	△1,570
양월군	7,549	4,210	3,260	930	△3,339
평창군	17,394	11,332	8,091	5,241	△6,062
정선군	11,544	6,047	3,855	2,192	△5,497
인제군	43,857	27,631	23,874	3,757	△16,226
고성군	16,591	9,476	8,398	1,078	△7,105
양양군	20,927	14,218	11,705	2,513	△6,709

● 강원일보 2면 2005년 9월 10일 토요일

백두대간 지정 지역 최종 결정

道, 지역경기 위축 대비 소득지원사업 확대키로

28일까지 토지조서·도면 일반인 공개

강원도내 백두대간 지정 지역이 전국 26만3,427ha중 절반이 넘는 12개 시·군 13만3,908ha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9일 백두대간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했으며 앞으로 20일 동안 해당 시·군에서 토지조서 및 도면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백두대간 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개발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 훼손지 복원·복구, 사유토지 매수, 주민소득 증대 등을 추진해 백두대간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로 했다.

또 백두대간지역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백두대간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소득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申炯澈기자 · chjwoo1000@kwnews.co.kr>

자연(自然)과 법(法)

월정사 사회국장/ 삼척 신흥사 주지 관행 스님

오대산의 여름은 인류가 만든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우리 한글로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다. 어느 시인은 푸름이 가득한 오대산의 여름을 '초록의 바다' 라고 노래하기도 했지만 어딘가 부족하다. 산에 깃들어 사는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활동이 만들어 내는 무수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탓이다.

산은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메마른 가지로 앙상했던 나무에 갓 태어난 아가의 꼭 쥔 손 같은 초록이 움트는가 싶으면 어느새 초록이 우거지고 이내 다음 해의 생명을 준비하기 위한 온갖 색의 가을이 찾아온다.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 가는 것이 요즈음 사람들이 갈망하는 웰빙의 본체가 아닌가 싶다.

환경이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주요한 말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다. 내가 살고 있는 오대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이미 30여년 지났다. 골짜기 산간마을은 모두 철거됐고 옛 마을 입구에 들어 선 출입금지 팻말을 단 철책이 녹이슬 정도로 오래돼 오히려

익숙한 풍경이 돼버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모습이 옳은 것인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인간의 오만이 전제가 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설정될 때 나는 승복에 어울리지 않는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때로는 운동권이 되어 구호를 외치고 시정잡배와 다름없이 멱살다짐도 서슴지 않았었다. 그러면서도 머리 속에는 늘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인 '모든 것은 변화한다. 찰나에도 정진하라' 라는 말과 자연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내 주변을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산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산에서 살아가는 이름 갖지 못한 들풀과 똑 같은 하나의 생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자연(自然)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말뜻 그대로 풀이 해 본다면 '스스로 그렇다' 정도가 아닐까? 산중에서 계절을 넘겨 살아 본 이들은 이 말에 쉽게 공감하리라 믿는다.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여름의 오대산 풍경. 누가 아무리 큰 공역을 낸다고 해도 여름 산의 변화를 꾸밀 수 없다. 다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갈 뿐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나는 반대의 편에 서 있다가 긍정의 편으로 돌아섰다. 자연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무수한 법들의 오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산림청 담당자들의 노력과 설명에 설득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백두대간보호법은 입법화 되었지만 우려와 기대는 여전히 혼재된 채로 남아 있다. 법(法)이란 글도 파자해보면 '물(氵)이 가는 길(去)' 이 된다. 자연과 다름이 없는 말이다.

고민이 될 때면 언제든지 산중으로 오라. 메마른 가지에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스스로 그렇게 변화해가는 초록의 위대함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람조차도 산이 보여주는 변화의 일원임을 자각한다면 백두대간보호법은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회고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헌(환경과학박사)

점적인 소단위의 생태계가 모여 면을 이루고 면적 단위의 생태계가 모여 하나의 축이 형성되는데 우리나라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백두대간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귀중한 생태자원축이 지금까지 올바른 가치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이 제정되면서 최소한의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구분되어 백두대간 생태자원축으로 보전되게 되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규제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거센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쳤고, 제가 속해있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여 강원지역에 또 다른 규제지역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항변이었다. 태백, 삼척, 강릉, 정선, 고성 등 어느 곳을 가나 빗발치는 항의뿐이었다.

다행히도 저는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연구' 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어 산림청 관계자들보다 심적 고충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하였다. 또한 저는 강원도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에 관하여 고민하면 되었지만 산림청 관계자들은 타시도에서 똑같은 항의에 심적 고충은 엄청났을 것이다.

지역주민대표들과 군관계자, 각 사업주체들, 불교계의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의 입장들을 들어보고는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고충 또한 이해하게 되어 백두대간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특히 월정사 정념스님과 차 한잔을 놓고 불법(佛法)에 대한 이야기도 듣으면서 또 다른 종교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는 계기도 되었고,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는 백두대간을 지키고 보존해 오는 사람들은 지역주민이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다.

백두대간의 문제가 한창 불거졌을 때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어느 교육기관의 부탁을 받고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대대로 백두대간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백두대간을 지키고 보호하여 왔는데 규제에 앞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한분이 손을 들어 질문하기를 '백두대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보호를 해왔느냐? 그곳에서 살고 싶어서 살았겠느냐? 도시로 나올 능력이 없어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너무도 소름끼치게 무서웠던 앙몽도 떠오른다. 제가 그렇게까지 흥분을 한 이유는 그분이 단순히 시민의 한사람이라고 하면 웃어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모시의 국장급 요원이었기에 때문에 그 충격은 너무도 컸다.

강원도는 천혜의 땅이고 미래의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역주민이 없으면 미래도 천혜의 땅아 될 수 없다. 앞으로 백두대간이 잘 보전되어 귀중한 생태자원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지역주민의 동참은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의 보전에 대한 인센티브 요구가 터무니 없다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분들의 생활과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백두대간이 잘 보전되면 지역의 가치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여 결실을 맺은 산림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희망과 믿음을 주는 행정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했다

강원도 산림정책과 심 진 규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축으로 하여 동쪽과 서쪽으로 자연스럽게 생활권이 형성된 전형적인 산촌지역으로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후덕한 곳으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전국대비 21%이고 도 전체면적 1,687천ha의 81%을 점유하는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만큼 규제 또한 이에 비례하고 있다.

수도권 상류지역으로서의 상수원보호구역, 소양댐 등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접경지역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악산 · 오대산 · 치악산국립공원 등 각종 토지이용의 규제가 도 전체면적의 1.66배인 2,793천ha에 해당하고 있다.

강원도의 미래와 비젼은 과연 있는가? 일부 도민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 강원도가 개발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과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발에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인자인 토지의 이용규제"라고 말이다. 규제가 얼마나 심하면 이런 말들을 하겠는가?

이런 와중에 규제에 가장 민감한 강원도민을 자극하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2004년도에 있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골격을 이루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남북으로 곧게 뻗은 약1,400km에 달하는 백두대간을 무분별한 훼손으로 부터 방지하고 미래의 자연유산으로 존속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정예정지의 지역주민, 시 · 도, 시 · 군, 지방산림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고성, 속초, 양양군에서부터 태백, 영월군까지 12개 시 · 군 해당 주민들은 즉각적으로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을뜻한 기세였다.

특히, 백두대간에 편입되는 12개시 · 군중 유일하게 태백시는 도시전체가 지정된다

며 태백지역 현안 대책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성명서의 발표는 물론이고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조직적인 투쟁으로 단계별로 수위를 높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철회 시키다는 강력한 의지는 이루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 무기한 연기와 폐광지역진흥지구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제외 등 총 9건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는데 시민 모두가 합의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태백시를 제외한 11개시군 에서도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백두대간지정 반대운동이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지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리도에서는 산림청 지정계획의 51%가 강원도가 점유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총 37회 걸친 주민 설명회와 백두대간으로 인하여 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하는 등 2개의 목적을 동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의 일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들과의 대화를 추진한 결과 오늘의 백두대간보호지역 12개시군 75개 마을 133,908ha를 지정 · 관리하게 이르렀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양극화 갈등화로 분열되고 무엇이든 집단행동만 한다면 관철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전반에 이반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밀어 붙이기식 행정이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의 노력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강력한 반대는 강력한 대처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이번 백두대간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였다.

앞으로의 모든 행정은 고객위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협력하고 신뢰와 믿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규제받는 지역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창출과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다면 정부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닌 협력자 관계 로 인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에 대한 단상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윤기수 이사

건설의 기초 소재인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간산업체인 시멘트회사에 있어 석회석광산의 개발은 원료의 조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동업계에서 후발업체인 한라시멘트는 당시로는 가장 최신 제조설비를 갖추었어나, 광산개발 여건은 열악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상대적으로 좁은 부존 광맥과 산정상 부위가 시멘트원료로 부적합한 암석층이 덮혀 있어 산허리로부터 개발에 들어감으로써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는 광산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개발 주도적인 사회 분위기는 옥계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지역에서도 시멘트회사의 가동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하였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산업 시찰단의 주요 견학지로 국가건설산업 기초소재 공급의 최 첨병임을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으며, 방문객들의 격려를 받았으나, 급격하게 대두된 환경오염 및 훼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석회석광산과 같은 대규모 훼손을 유발하는 산업체는 환경파괴의 원흉이라 할 정도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1994년 동해시에서 결성된 백두대간보전회가 우리 광산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게 됨에 따라 산맥의 개념으로 일반화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지형개념을 백두대간과 여러 정간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생태 축으로서의 역할과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 등줄기로서 백두대간이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로 백두대간 마루금에 가장 인접한 우리 광산은 환경훼손의 대표적 현장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시멘트산업이 가진 국가경제적 기여나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등으로 기여하는 환경적 기여 모두가 묻혀버리고 오직 부정적 모습에 대한 공격의 과녁이 되었다.

이제는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계획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수용 되지 않는다.

환경훼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꼭지점에 서게 된 우리 회사는 2000년 세계적 건축자재생산 전문기업인 프랑스의 라파즈 그룹과 합병하게 되었고,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항이 환경에 대한 문제였고 특히 광산의 복구 문제였다.

시멘트회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 중 분진, 소음의 발생 등 기술적인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시멘트의 기초 원료의 조달을 위한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일은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기 위하여는 지형의 안정적 조성과 토양기반을 갖추고 지역 특성에 조화되는 초본과 목본을 식재하고 가꾸는 작업으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지역이 백두대간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므로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전문기업의 복구기본설계 작업과 지속적 컨설팅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훼손지 복구가 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시행 할 것이다.

시멘트 산업은 대체 소재가 개발되지 않는 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우리의 광산도 장기간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구하여 회복되는 자연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사회적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의 영속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물려줄 새로운 자연환경은 후세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가꾸어서 물려주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우리 광산개발 현장의 갈등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하겠다. 이로 인해 백두대간이 재조명되고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일대 전환을 하게 된 긍정적 기여는 우리가 바랐던 바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수준을 진일보하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제 백두대간은 국가가 제정한 법에 따라 산림행정의 주요 부문으로 관리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헐벗은 국토를 녹화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지만 우리는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국민이지 않는가. 이를 이끌어온 산림부문 종사자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며, 더 한층 발전된 산림 가꾸기와 백두대간의 환경생태적 건강성이 영원히 보전되기를 기원한다.

백두대간 T/F팀 일원으로서

산림청 산림자원팀 이영선

2004. 9월 산림과학원 임업연수부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 대원과 산불 예방 · 진화에 대한 강의와 실습교육으로 포천 산불훈련장을 오가며 재미있고 보람찬 임업연수부 시절이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매일 매스컴에서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주민들이 대전청사에까지 몰려와 항의집회와 대전청사 진입을 시도하다는 뉴스를 접하던 시기에 백두대간 T/F팀으로 지원근무명령이 났다.

그날이 2004. 9. 15로 기억된다.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과 관련 매스컴에서 연일..... 지역주민 반발! 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는 상황에서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가족들이 대전에 있으니 가야겠다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백두대간 T/F팀 지원 근무자는 5명으로 조병철, 박현재, 이영록, 윤석범씨와 5명이 지원근무...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업무를 맡게 되었다. 내가 맡은 지역은 전남 · 북과 경남지역 3개도 8개 시군 지역이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도면을 지자체에 배부한 상태로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학술적개념의 3차수계까지 포함한 기초도면을 지자체에 배부하여 조정중에 있었다.

기초도면상의 농경지 뿐 만 아니라 마을 취락지역까지 전부 포함되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지정팀의 숙제였다.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백두대간을 영원히 보전할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어떻게 지정을 추진할까 하는 생각으로 해당 도와 시 · 군에 지정담당자에게 지자체 조정의견에 대한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시 · 군에서도 지역주민의 반발.. 지정반대특위 사람이 대부분 군의원으로 시군의회 의원들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자체 의견을 산림청에서 원하는 수준의 보호구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마루금에서 일률적으로 500m(전북 남원)를 도상으로 표시하여 지자체 조정의견으로 들어왔다.

기초도면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이 군의원, 지역주민의 반발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 고민중에 현지를 출장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생각으로 강원도 팀을 제외한 충남 · 북, 경남 · 북, 전남 · 북팀은 한팀으로 경남북 담당 이영록씨, 충남북담당 윤석범씨와 백두대간 보전팀의 김명관(기관원으로 표현)와 4인1조로 강원도 태백산 지역인 경북봉화를 출발하여 소백산 → 월악산 → 속리산 → 추풍령 → 민주지산 →덕유산 →지리산까지 개발계획이 있던 곳을 시 · 군 담당자와 현지조사를 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으며, 백두대간 T/F팀 근무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출장이었다.

전북 남원 운봉지역은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이 대부분 농경지 등 지역주민 생활 근거지로 보호구역지정의 반대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마루금을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역주민, 시 · 군공무원과 현지토론을 거치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원 운봉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반대특위위원장인 정준상 군의원과 전북 무주~경남 거창 경계지역의 고랭지채소밭, 무주의 염소목장을 운영하는 안찬수, 경남 함양 육십령 채석장 지역의 원할한 조정으로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다.

백두대간 T/F팀 일원으로서 가장 기억이 남은 이야기는 무주리조트에서 열외 1명(조모씨)사건이다... 이 기억은 아마 백두대간 T/F팀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며, 그 당시 고생하셨던 전범권 과장님, 원상호팀장님 그리고 백두대간 T/F팀(기간원+지원팀 10명), 고한나..양은영님 모두 고생하셨으며 정말 보람있는 일 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백두대간과 함께한 4년을 회고하면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이학만

벌써 백두대간보전과를 떠난 지도 1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산림공무원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백두대간과 함께한 4년을 회고하면서 뇌리를 스치는 몇가지 일들을 백두대간 백서에 적어 보려고 한다.

〈백두대간과의 첫 만남(2001.7.4~2001.12.31)〉

2001년 7월 4일자로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보호과로 인사발령을 받아 나에게 주어진 사무분장을 보니, "산지정화 및 등산객의 질서 계도, 산림내 오염방지대책, 청원산림보호직원,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백두대간보전, 산하단체 지도 · 감독, 과내 서무 등" 이러한 순서로 적혀 있었다. 산지정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 듣는 업무였고, 백두대간보전은 업무비중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 하나씩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나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2001년 8월) "백두대간보전 · 관리"라는 신규사업이 문제사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로 설명을 가야 된다고 하여 백두대간이 뭐지? 생각하면서 맥주 광고, 등산전문지 등에서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본 기억이 나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과 같이 하나의 산 이름 이겠구나 하고, 자료를 보니 이건 우리나라의 전체 산줄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아무리 지리학에 관심이 없었어도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이러한 의문이 들면서 공부를 해보니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태백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 등 이러한 산맥체계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때 일본인에 의해 도입된 산줄기 체계였으며, 20세기 초까지 천년간 우리가 사용한 산줄기 체계는 백두대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임학과를 졸업하였지만 정말 처음 보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왠지 백두대간 이 단어에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였던 것은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예고하는 것이었을까?

다행히 백두대간보전 · 관리의 신규사업은 우리청이 끈질기게 기획예산처에 설명하여 백두대간보전 · 관리 사업을 정부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주요 사업으로 확정하였다.

그 당시 나는 백두대간을 신규사업으로 확정한 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는데 이후 전개될 환경부와 백두대간에 대한 주관부처의 논의에서 산림청에서 백두대간보전?관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2002.1.1~2003.12.1)〉

본격적으로 백두대간에 대해 업무파악을 하고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하여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정일의원 대표발의(2001.12.21)로 백두대간보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문제는 백두대간에 대한 주관부처를 환경부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1995년 백두대간을 처음으로 산림청의 업무영역으로 도입시킨 당시 산림보호국장이시던 조연환 전산림청장의 노력으로 환경부가 주관부처인 법안은 철회되고, 산림청을 주관부처로 하는 백두대간보전 · 관리법안이 이정일의원 대표발의(2002.7.22)로 국회에 제출되어 2년의 기간동안 국회, 정부, NGO 등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법률 제정과 주관부처 선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정말 험난한 과정을 지나온 것 같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정말 재미있었고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중요한 몇가지 일만 여기에 적어 본다.

환경부를 주관부처로 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 갑자기 2002년 5월부터 7월까지 백두대간 보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 감사의 목적은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백두대간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감사부서가 우리청 담당이 아닌 환경부 담당(감사원 제4국제4과)이라서 우리청의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노력을 자세하게 확실히 설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백두대간보전을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우리청의 실적을 발굴하여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청 전체의 적극적인 대처로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노력한 결과, 최종 감사보고서에 산림청과 환경부가 협조하여 백두대간 보전 · 관리

를 추진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법률안도 이정일의원에게 백두대간의 관리는 산지를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으로 환경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법률안은 철회하고 우리청을 주관부처로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우리청을 주관부처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이제 환경부에서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이정일의원 주재로 실무국장회의(2002.9.26)를 거쳐 10월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산림청장, 환경부장관이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다. 그 당시 "이제 드디어 환경부와 합의가 되어 법률이 만들어 지는 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 합의 이후에도 3번의 환경부와 공식적인 합의, 2차례의 국무회의 보고가 더 이루어진 후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니 앞으로 다가올 법제정의 험난한 과정을 과연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겠는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정법이고 환경부와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번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 1번의 공청회, 대한지리학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03년 4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법률 제정의 초유의 사건의 발생하였다. 이미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용과 동일한 법률이 주관부처만 달리하여 의원입법(박인상의원 대표발의)으로 국회에 제출(2003.4.4)되었던 것이다. 이 법률안은 환경부를 주관부처로 하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주관부처만 달리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따로 제출되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림청과 환경부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2003년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법률의 소관은 공동소관으로 하고, 법률의 주요내용은 원칙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관리는 산림청장이 하도록 하였다. 이때 나는 이제 완전히 합의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국무회의 보고 이후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국장, 차관회의를 거쳐 법률명, 조문의 띄어쓰기, 조사 등을 포함한 법률의 모든 내용과 정부단일안 처리를 위한 사항 등 최종 합의는 2003년 11월 8일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개의 위원회에서 동일 내용의 법률안이 접수되어 처리하지 못하고 4번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각각 양 위원회로 반려

(2003.11.19)하기로 결정되었다.

아, 이렇게 또 다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구나 생각할 때 양 위원회 위원장간의 전화 통화로 정부단일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번안동의로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 왔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2년 가까이 백두대간의 주관부처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법률안을 처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부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회고해보면 2년의 기간동안 정말 휴일과 밤을 반납하고 일을 했지만 이러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산림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과 주춧돌이 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004.1.1~2005.6.12)〉

법률이 공포된 이후 이제 남은 것은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예산 · 제도적 기반 마련, 조직 보강 등 당면 업무가 산적하게 쌓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4년 6월 4일자로 산림보호과 산림보호담당 밑에 백두대간보전팀(5명)이 발족되었다. 그리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작업을 위해 5명의 인력을 더 보강하여 2005년 9월 15일 백두대간TF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2005년 1월 1일자로 백두대간보전과(10명)가 발족되어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위법령 제정, 보호지역 지정 기반 마련, 백두대간 전담부서 신설, 지자체의 조직보강, 신규 기본사업비 확보, 법률 개정, 보호지역 재산세 비과세 등 많은 일들이 생각난다.

이제 글을 마칠려고 하니 그동안 백두대간업무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격려해 주신 같이 근무한 백두대간 TF팀, 계장님들, 과장님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나의 머릿속에 한분씩 떠오른다. 백두대간이여! 다시 만날 때 까지 영원하여라!

백두대간 만만세!!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이현복

백두대간은 우리 조상들의 자연관이나 산지인식 체계의 근간 혹은 지형적 관점이나 경관생태적 관점 등 역사문화, 인문지리, 생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백두대간은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山自分水嶺)는 개념과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국토의 골간을 이루면서 단절없이 이어 진다"는 백두대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뭇 "가름"과 "이음"이 상반돼 보이지만 음양이 하나로 조화되듯 가름과 이음 또한 조화를 이루면서 백두대간의 의미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을 잃어버린 지 꼭 100년! 그 공백을 단숨에 채우려는 듯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등이 마무리되었다.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개발과 보전,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림청과 환경부 등 난무하였던 온갖 반목과 갈등도 봉합되고 치유되었다. 이 백서는 그간의 과정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제부터 백두대간 본래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음이 끊어진 곳을 잇고, 가름이 뒤틀린 곳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대열에 너와 내가 따로 일 수 없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힘껏 외쳐보자. 백두산이여 민족의 성산, 국토의 뿌리로서의 기능을 다하라! 자병산아 다시 살아나라! 백두대간 만만세!!

함께 꾸는 꿈 – 오래된 미래, 백두대간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팀장 정용미

2005년, 드디어 민간단체 주도로 성장해 온 백두대간 보전운동이 보호법 제정과 시행이라는 굵직한 결실을 맺었다. 산악인과 시민단체에서 시작된 백두대간 보전에 관한 논의가 시민사회에 공감대를 얻은 것이다.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은 백두대간 개념을 사회에 알리고, 국회를 통해 제도화하여 정부의 정책으로 확대시킨 뜻 깊은 결과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산악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백두대간의 철학이 뿌리 내리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녹색연합은 95년부터 백두대간의 기치를 내걸고 보전 운동에 동참했다. 96년부터 백두대간 전면 조사를 시작으로, 97년 백두대간환경대탐사로 동식물의 실태, 개발 바람에 상처 난 백두대간을 탐사해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언론이 백두대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축이라는 공감대가 높아져 갔다. 98년 5월부터는 두 번째 백두대간환경탐사에 나섰다. 이미 백두대간은 97년 이후 불어 닥친 개발 광풍으로 곳곳에 상채기가 나고 있었지만 정부는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전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백두대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두 번째 탐사에 나섰다. 2년에 걸쳐 백두대간 670km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로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식물생태계의 보고임을 확인했고, 도로, 댐, 광산, 스키장, 골프장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생생히 알려냈다. 이 조사가 계기가 되어 백두대간보전법이 99년 처음으로 국회에 제안되었다. 국회에서 보전법 제정의 신호탄이 울렸지만, 개발 세력의 입김에 밀려 법안은 좌초되었다.

보전법 제정은 무산되었지만,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개념을 알리고 널리 퍼뜨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백두대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1년에 수 백 개 팀들의 종주 산행이 이어졌다. 90년대 초반에는 백두대간을 종

주하려면 지도 읽기와 나침반 사용이 뛰어나야 했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간단한 안내 지도만 있어도 종주가 가능할 정도로 백두대간 등산로는 넓어졌다. 그래서 녹색연합은 과도한 등산객으로 나날이 훼손되어 가는 백두대간의 마루금 등산로 670km를 조사하였다. 훼손되어 가는 등산로 현장을 알려내고 정부의 관리 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의 곳곳을 누비며 그곳의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했다. 조사결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고 감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또한 백두대간에만 머물지 않고 정맥으로 백두대간 개념을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 서 왔다. 백두대간은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이어진 산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두대간에서 가지 친 14개의 산줄기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정맥처럼 큰 산줄기가 백두대간과 다름없이 국가의 중요 생태축임을 알리고 보전대책을 촉구해 왔다. 99년 낙동정맥 탐사를 시작으로 백두대간과 이어지는 14개 정맥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2년 한강정맥, 2003년 낙남정맥, 2004년-2005년 호남정맥과 한북정맥, 2006년 금남정맥 환경탐사를 진행 했다. 탐사의 내용은 결과보고서로 제작하여 백두대간 개념을 확산시키고 정맥으로 인식 확장을 꾀하고 있다. 정부의 보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백두대간은 산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강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산줄기들을 비롯한 물줄기 지키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었다. 2002년 남한강과 북한강의 분수계이자 젖줄이 되는 한강정맥을 조사하였다. 수도권 2천만의 젖줄인 한강정맥의 훼손 실태를 알려내었다. 2003년 백두대간 산간계곡에 서식하는 환경지표종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식태와 생태를 조사하여 결과물을 만들었다. 백두대간과 정맥을 보전 하는 일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을 지키는 일임을 시민사회에 설득해 온 것이다.

이처럼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곳곳을 누비며 그곳의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백두대간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활동하고 원인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생태복원을 위해 활동해왔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력은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2000, 2001년에도 개발논리에 밀려 법의 제정은 수월치 않았다. 우여곡절 거친 끝에 제정된 법은 백두대간 보전 운동을 펼쳐왔던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를 안겨주었다. 물론, 보호법 제정 이후 보호지역을 정하면서 땅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셌다. 개발세력들이 보호지역 지정 반대 여론몰이에 앞장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이 53만ha에서 26만ha로 축소되어 지정되는 뼈아픈 경험도 거쳐야 했다. 그 결과 보호지역에서 진부령-마산봉 일대가 알프스리조트로 끊어지고, 추풍령 일대와 수정봉-고리봉 일대는 이미 마을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보호법의 계기가 된 자병산은 핵심구역으로 지정하려다 석회석광산 추가개발을 허가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바꿔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백두대간 위의 모든 사유지, 산정상부의 대규모 고랭지채소밭, 스키장, 골프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80여개 개발사업이 빠졌으니, 말뿐인 보호구역이지 온전한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지금도 백두대간과 주변부는 개발 욕구와 이용 압력이 왕성한 상태다.

보호구역이 절반으로 잘려나갔듯이 백두대간보호법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 그러나 개발의 광풍 앞에 놓인 백두대간을 지켜낼 한 가닥 희망을 제도화와 개념복원을 통해 키워가야 한다. 백두대간 개념을 알리는데 걸렸던 10년, 보호지역 지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개발주의에 압도당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이자 과제이다. 백두대간이 온전히 보전되고 관리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길이 그 만큼 멀고 험하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노력이 작은 열매를 맺어 백두대간 보호법 제도화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제는 그 열매를 바탕으로 좋은 땅을 골라 씨앗을 심고 무성한 숲을 가꿀 필요가 있다.

그 시작은 바로 백두대간을 개념을 올바로 세우는 일일 수 있다. 그동안의 백두대간 보전 운동의 성과로 법이 제정되기 이르렀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산맥체계를 가르치고 표기하고 있다. 일제가 만든 산맥개념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100년 동안 뚜렷한 검증이나 절차 없이 써왔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제잔재인 산맥개념을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해 온 것이다. 고토분지로의 산맥체계는 땅밑의 지질구조를 중심으로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산맥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다. 또 지질학적으로 봐서도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 역시 이런 논의에 대해 실제 연구는 미흡했고 제대로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일제 시대의 잘못된 산맥체계를 바로잡고 우리 땅의 올바른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이는 이 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 스스로와 우리 삶터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잘못된 산맥개념을 바로잡고, 아이들에게 백두대간 개념을 충분히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온전한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확대가 절실하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최종안을 살펴보면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소 폭으로 여겨졌던 핵심구역마저 여지없이 무너트리고 있다. 백두대간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원칙의 핵심이다. 그러나 산림청에서 내놓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최종안을 살펴보면, 진부령-마산봉일대, 추풍령일대, 수정봉-고리봉일대가 보호구역 설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백두대간 생태축을 단절시키고 있다. 나아가 닭목재, 소백산 관광농장, 늘재, 고제면 같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마루금 주변의 10-30m폭만으로 연결한 것은 백두대간의 생태적 연결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 원칙인 생태적 연결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 현재 조정된 보호구역은 개발사업의 타당성 없어 10년 동안 계획만 서 있던 알프스 리조트개발계획, 산 정상부에 들어서 농약과 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4대강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대규모 고랭지 채소밭, 백두대간 훼손의 제일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자병산 석회석광산 같은 80여 개의 개발사업이 핵심구역이나 완충구역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결국 보호구역 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조차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산림청은 보호지역을 조정하면서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핵심구역을 감싸고 있는 대부분의 완충구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켰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최종안을 보면 말 그대로 자연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할 핵심구역이 언제든지 개발이나 이용이 가능한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고 많은 부분이 핵심구역만 덩그라니 남아 있다. 보호구

역을 대폭 축소하면서 주변의 개발압력으로부터 핵심구역을 보호해야 할 완충구역이 대부분 빠져 버렸기 때문이다. 핵심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백두대간을 개발과 이용 압력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던 기본 원칙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원칙인 생태적 연결성을 무시하는 백두대간 보호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 원칙과 기준(3차 계류 유역 + 물리적여건, 생물적여건, 관리적여건)에 따라 설정된 53만ha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적 연결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조정이라면 백두대간과 정맥이 맞닿는 부분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생태연결과 지속성은 몸통을 구성하는 주변의 작은 곁가지들이 건강해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제대로 관리하는 문제이다. 하나는 이미 잘 보전된 곳은 잘 지키는 것이며, 둘째는 이미 훼손된 곳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모두 구체성 있는 계획과 실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울 때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는 72개로, 생태축은 평균 7.88㎞마다 단절되어 생태연결고리로서의 백두대간의 생태적 기능은 상실되고 있고 자병산과 같은 광산개발이 대규모 산림벌채와 지형훼손으로 이어져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개설, 광산개발, 고랭지채소밭 경작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제8조와 9조를 살펴보면, 백두대간의 훼손과 파괴의 주범인 도로, 군사시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핵심구역부터 허용하거나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 훼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산개발과 고랭지채소밭 경작, 전력공급시설, 삭도와 궤도,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백두대간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라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주원인인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백두대간 보전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서는 법률에 반드시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의 추가건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광산개발과 고랭지채소밭 경작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한해야 한다.

나아가 이미 훼손된 백두대간을 시급히 생태 복원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치산녹화사업을 벌여 30여 년 동안 공을 들여왔지만 우리 숲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76년부터 2003년까지 206,823ha가 줄어들었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난개발까지 겹쳐 해마다 11,000ha나 되는 숲이 사라졌다. 더구나 개발과 이용 뒤에는 복원 없이 그대로 방치해 버렸다. 그동안 자연자원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은 상당했으나, 그에 따른 훼손 지역의 방치와 부실한 복원은, 재훼손으로 인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케 했을 뿐이다. 산림생태 가치와 주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산림녹화는 훼손지를 복구하기는커녕, 외래종 나무 이식 등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산사태를 야기 시켜 왔다. 따라서 훼손된 숲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생태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국토의 중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훼손지가 우선 복원 대상이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산림환경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백두대간의 숲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숲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생물종다양성이 뛰어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훼손지 생태복원에 힘써야 한다. 최근 청계천과 도시 곳곳에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시급히 백두대간 훼손지를 복원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복원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백두대간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백두대간이 품고 있는 생태가치와 문화, 역사 가치를 조사하고 정리해야 한다. 무궁한 가치를 지닌 자연, 문화, 역사 유산이 서려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어서 소중한 유산들이 시퍼렇게 날선 개발 바람에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다. 빨리 기초 자료를 모으고 현장조사를 해서 이들을 정리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자랑스런 생태, 문화, 역사 유산을 세계에 알려내야 한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일 뿐 아니라 세계의 중요한 자연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넷째, 백두대간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함께 고민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백두대간 주변부가 갈수록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 농경사회를 이루어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왔던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농사를 지으며 만들어 온 공동체가 꽃피워온 문화가 사라지고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꽃피울 수 있도록 생태마을 만들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유기농업, 청정농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마을로 도시로 만들어져야 역사가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는 깊이 있는 접근과 폭넓은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백두대간에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의 환경위기가 우리 시대의 지속가능성의 열쇠를 발견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수 억 년 동안 무장한 세월을 살아왔다. 씨앗이 날아와 뿌리를 내리고 무성한 숲을 만들었으며, 산은 물을 낳았다. 그 물줄기를 따라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며, 역사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꽃피었다. 우리 조상들은 슬기롭게 백두대간과 어우러져 살아왔다. 백두대간이라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철학으로 세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뒤늦게나마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호법을 제정하고 더불어 살 길을 찾고 있다. 조상들의 지혜로운 철학에 다가서는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백두대간을 깊숙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깊숙이 발 딛는 일, 백두대간과의 공존은 시민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도나 정책이 현실과 괴리를 깰 수 있다. 나아가 21세기 환경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백두대간과 더불어 잘 사는 무한한 시간이 흘러가, 백두대간 골짜기마다 숲이 무성해지고 그 속에 다양한 삶의 문화와 역사가 피어나고, 야생동물의 보금자리가 아늑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 그 다음 다음, 또 그 이후 세대가 백두대간에서 '오래된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

2006

백두대간 백서

Baekdu Daegan Mt. White Paper

발 행 인	서승진 산림청장
편 집 인	이수화 산림청 차장
집필총괄	이장호 산지보전단장
집 필 진	이문원 백두대간보전팀장 이현복 서기관, 길점식 사무관 김기현 사무관, 조준규 담당 김만제 담당, 한창술 담당 김봉수 담당, 조해경 담당 최대순 전 백두대간보전과장
발 행 일	2006년 8월
연 락 처	우)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TEL : 042) 481-4292~4297
인 쇄 처	금강인쇄사 042) 484-7403~4

〈비매품〉